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가기술표준원)

2014. 12.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국	경	국
가	제	가
기	자	기
술	유	술
표	구	표
준	역	준
원	기	원
	획	
	단	

2014.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무역위원회	1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4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	15
<일반회계>	
(1) 울춘자유무역지역조성	18
(2)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2
(3)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6
(4)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32
(5) 자유무역지역관리	38
(6)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43
<지특회계>	
(7)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48
(8)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55
(9) 구역청투자유치지원	60
(10) 석동-소사간도로	65
(11) 기타기반시설지원	69
(12) 수성의료지구간선도로	75
(13) 잠진도-무의도간연도교(신규)	79
(14) 경산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신규)	83
2. 국가기술표준원	87
I. 세입(혁특회계)	89
(1) 건물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2
(2) 토지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3

II. 세출	95
--------------	----

〈일반회계〉

(1) 국가표준활성화	98
(2) 국제표준활동지원	110
(3) 표준교육및이행확산	121
(4)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R&D)	126
(5)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152
(6) 기술표준정책	159
(7) 안전제도기반조성	164
(8)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174
(9)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신규)	184
(10) 제품안전정책	191
(11)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96
(12)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211
(13) 신기술제품인증	221
(14)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229
(15) 적합성정책	240
(16)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245
(17)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신규)	260
(18)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267
(19)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277
(20) 기술규제대응	290
(21)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294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086	1,470	1,397	△73	△5
○무역구제지원사업	1,086	1,470	1,397	△73	△5

무역구제지원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무역구제지원사업	1,086	1,470	1,397	△73	△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3 - 1200 - 1233

* 담당자 : 무역조사실장(박진규), 무역구제정책팀장(서덕호, 044-203-5850), 사무관(이승준, 58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2. 사업목적

- FTA 확대와 같은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환경 속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무역구제제도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무역구제진흥 : 400백만원

- 중소기업 등의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미래 무역구제 인력양성을 위한 경연대회·논문대회 개최 등

* 무역구제지발간 및 세미나(80백만원), 홍보(80백만원), 경연대회 및 논문대회(80백만원), 인쇄비(50백만원), 행사비 및 통역비 등 기타 경비(110백만원)

②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250백만원

- FTA확대 등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내 산업 보호
- * 감시·발굴 등 조사활동 및 전문가 자문료, 불공정무역신고센터 등(210백만원), 무역조정지원 피해진단 비용(40백만원)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 400백만원

- 산업피해·덤핑·불공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외 조사제도 연구, 조사 사례별 이슈 및 시사점 분석 등 무역구제제도 연구
- * 산업경쟁력조사 (150백만원), 실태조사(40백만원), 무역구제제도연구(210백만원)

④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347백만원

- 양자간·다자간 무역구제 협력회의 개최,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등 국제협력행사 개최
- * 국제포럼 등 국제협력행사 개최(190백만원),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및 회의 참석 등 (107백만원), 무역구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FTA 확대와 같은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무역량(수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 불공정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는 무역구제 지원사업의 예산지원이 필요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 특히, 사업적 기반이 열악하고 법률적 대응 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덤핑 등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무역구제제도의 확산 및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국제행사, 산업피해 진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무역구제관련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
 - FTA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대응하여 조사·심의 예산 확보 필요
 - 국내·외 기업 간 특허권 분쟁 등과 같은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의 증가가 우려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위한 현지조사,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 설명회 등 소요예산의 지원 필요
 - 불공정무역신고센터*를 통한 업종별 실태조사와 상담·자문기능 강화
- *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광학공업협동조합, 산업용재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안경산업지원센터, 판유리산업협회,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완구공업협동조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무역구제지원사업	1,085.8	1,470	1,397	△73	△5
▪ 무역구제진흥	311.4	430	400	△30	△7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192.5	220	250	30	13.6
▪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370.5	500	400	△100	△20
▪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211.4	320	347	27	8.4
☐ 비목	1,085.8	1,470	1,397	△73	△5
▪ 일반수용비(210-01)	497.4	764	761	△3	△0.4
▪ 국내여비(220-01)	8.1	10	10	-	-
▪ 국외업무여비(220-02)	17.9	98	98	-	-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 연구개발비(260-00)	464.4	500	400	△100	△20
▪ 민간경상보조(320-01)	90	90	120	30	33.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소기업 이용활성화)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을 높이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 간소화, 상담 등 지원서비스 개선
- (전문성 강화)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기법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 (사전 분석기능 확대) 단계적 관세철폐 등 개방에 따른 품목별·업종별 영향을 점검하도록 산업경쟁력조사의 재설계
- (조사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내 산업피해구제 수준의 합리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4.7	▪ 무역구제진흥(4.3),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2.2),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5), 국제협력(3.2)
'15	13.97	▪ 무역구제진흥(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2.5),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연구(4), 국제협력(3.47)
'16	12.29	▪ 무역구제지원사업 12.29억원
'17	13.27	▪ 무역구제지원사업 13.27억원
'18	11.28	▪ 무역구제지원사업 11.28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직권조사), 제9조(판정 및 통지), 제14조의 3(포상금의 지급), 제25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업무), 동법시행령 제27조(무역구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 추진경위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미관세법332조)를 벤치마킹하여 '02년 산업경쟁력조사 예산확보(3억원)하여 자동차변속기 등 4개과제 조사
- '06년 2월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4월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방안 보고
- '07년 6월 무역위 20주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07년 9월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보고
- '08년 5월 지재권 침해 조사 활성화 방안 발표
- '09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
- '10년 11월 EU의 아국산 폴리에스터강력사 반덤핑조치 무혐의 판정
- '12년 10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작업
- '13년 11월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무역구제경연대회 개최
- '14년 6월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WTO와 공동주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무역구제지원사업	11.5	11.5	12	14.7	13.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한미 FTA발효 지연으로 FTA피해 관련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46백만원 불용 및 무역구제 관련 계약체결 지연으로 39백만원 이월

○ 2012년

- 일반수용비 1백만원 및 연구개발비 정산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8백만원이 절감되어 총 9백만원 불용

○ 2013년

- 무역구제연구 계약 체결 지연으로 15백만원 이월, 경상경비적 사업비로 분류되어 정부전체의 예산 절감(10%) 차원에서 99백만원(8.3%)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1.5	-	-	11.5	10.65	0.39	0.46
	()	()	()	()	()	()	()
'12년	11.5	0.39	-	11.89	11.80	-	0.09
	()	()	()	()	()	()	()
'13년	12	-	-	12	10.85	0.15	99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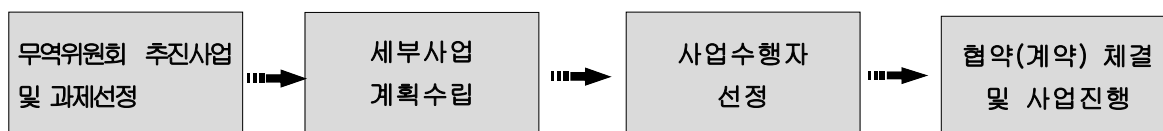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사업 과제는 정보화 사업의 성격으로 정책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것은 부적절 ('12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실적이 부진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지원을 재고하고 불공정 조사 등에 재정 확대 필요 ('13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무역구제진흥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참고>

관련 법령

법령명	조항	비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판정 및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p>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p> <p>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p> <p>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p>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p> <p>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p> <p>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p> <p>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p> <p>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p> <p>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p> <p>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p> <p>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p> <p>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p> <p>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p> <p>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p> <p>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p> <p>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p>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p> <p>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p> <p>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p> <p>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p> <p>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p>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p>③ 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대외무역법	<p>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p>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p>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에 관한 법률</p>	<p>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p> <p>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p> <p>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을 한 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세출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일반회계 >	69,705	48,605	53,871	5,266	10.8
○ 동해자유무역지역조성	10,574	-	-	-	-
○ 울춘자유무역지역조성	5,313	10,648	7,068	△3,580	△33.6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4,731	86.3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0,052	11,814	15,645	3,831	32.4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6,060	16,871	16,678	△193	△1.1
○ 자유무역지역관리	2,306	3,208	3,628	420	13.1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 유지관리	529	582	639	57	9.8
< 지역발전특별회계 >	123,965.5	99,533	77,142	△22,391	△22.5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5,042.5	12,450	7,690	△4,760	△38.2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926	1,128	970	△158	△14.0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830	4,950	5,050	100	2.0
○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6,688	-	-	-	-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40,000	3,320	-	△3,320	순감
○ 소사~녹산간 도로	3,066	-	-	-	-
○ 석동~소사간 도로	9,910	11,000	11,000	0	0
○ 기타 기반시설 지원	48,196	49,098	44,122	△4,976	△10.1
○ 송도5-7공구 진입도로	1,307	-	-	-	-
○ 명지지구 간선도로	4,000	3,687	-	△3,687	순감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13,900	3,760	△10,140	△72.9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	-	3,550	3,550	순증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	1,000	1,000	순증
【 합 계 】	193,670.5	148,138	131,013	△17,125	△11.6

울촌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울촌자유무역지역조성	5,313	10,648	7,068	△3,580	△33.6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04

* 담 당 자 :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윤우열, 061-727-9790), 주무관(서도원, 061-727-97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6~'15 (부지조성 : '06~'15, 기반시설확충 : '12~'14)
총사업비	○ 762억원 - 울촌자유무역지역개발 : 571억원(전액 국비) - 울촌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191억원(국비 124, 지방비 67)
사업규모	○ 지역개발 : 부지(343천㎡), 청사(1동), 경비초소(2동) 조성 ○ 기반시설확충 : 연면적 12,662㎡ 규모 표준형공장 1동 건립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역개발 : 전액국비 - 기반시설확충 : 지방비 매칭, 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울촌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울춘자유무역지역개발)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 7,068백만원
 - 조성원가 118,400원/㎡ x 금차 지급면적 59,696㎡(총 조성면적 343,623㎡)

☐ 지원 필요성

- 울춘자유무역지역('10. 6월 준공)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15년까지 완납하기로 협의

< 세부 내역 >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백만원)
					%
☐ 울춘자유무역지역조성	5,313	10,648	7,068	△ 3,580	△ 33.6
▪ 울춘자유무역지역개발	4,500	4,711	7,068	2,357	50.0
▪ 울춘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813	5,937	-	△ 5,937	순감
☐ 비목(합계)	5,313	10,648	7,068	△ 3,580	△ 33.6
▪ 토지매입비(410-00)	4,500	4,711	7,068	2,357	50.0
▪ 실시설계비(420-02)	328	-	-	-	-
▪ 시설비(420-03)	485	5,937	-	△ 5,937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개발) '15년까지 토지비 지급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외투기업 및 수출중심 중소기업의 입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 (기반시설확충)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연차별 적기 투입으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06	○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47억원 ○기반시설확충 - 공정율 100%에 따른 시설비 59억원
'15	71	○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71억원
'16	-	-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9조

○ 추진경위

1) 울춘자유무역지역개발

- 2005. 03. :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타당성 검토 완료(산자부, KDI)
- 2005. 12. : 울춘자유무역지역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8호)
- 2006. 12. : 울춘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 2007. 03. : 울춘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0. 06. : 울춘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완공
- 2015. 12. : 총사업비 완료(토지매입비 완료)

2) 울춘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2012. 01. :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신규사업 확정
- 2012. 08 : 설계용역 착수
- 2013. 04 : 설계용역 완료
- 2013. 06 : 표준공장 착공
- 2014. 12 : 표준공장 완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울춘자유무역 지역조성	54	118	104	106	71
- 개발	54	112	45	47	71
- 기반시설확충	-	6	59	59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울춘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12년 : 설계비 낙찰차액 23백만원 불용, 연약지반처리 공사비 산정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설계비 328백만원 차년도 이월
- '13년 :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계약 지연('13.8월 계약)으로 시설비 5,452백만원 차년도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 (-)
'12년	5 (-)	- (-)	- (-)	5 (-)	2 (-)	3 (-)	- (-)
'13년	59 (-)	3 (-)	- (-)	62 (-)	8 (-)	54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개발) 자유무역지역 지정 → 토지매매계약 체결 → 대행자(조달청장)를 통한 공사계약 → 토지매입비 지급
- (기반시설확충) 조달청 설계용역 발주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4,731	86.3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09

* 담 당 자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오재순, 052-240-6001), 수출산업과장(이해광, 052-240-6031),
주무관(김지연, 052-240-603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9~'15
총사업비	○ 2,433억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37,502m ² ○ 공사내역(연면적) - 건축공사 44,640m ² * 표준공장 3개동 36,227m ² , 청사동 7,699m ² , 설비동 453m ² 초소 및 경비동 261m ²
지원조건	○ 직접수행, 국고 70%,(1,703억원) 지방비 30%(730억원)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완료를 위한 마지막 연차사업비 10,213백만원

▪ 울산조성사업 총사업비는 협의조정을 통해 공공용지 보상비 및 선투자이자비 등 14,590백만원 증액

* 기존 228,665백만원 → 변경 243,255백만원 (14,590백만원 증)

▪ 이중 국비-지방비(70:30) 매칭 및 토지비와 건축비 상계조항에 따라 '15년도 표준공장 건축공사비 국비액 10,21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09~'15년)의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잔여 사업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3,831	32.4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3,831	32.4
□ 비목(합계)	24,871	5,482	10,213	3,831	32.4
○ 토지매입비(410)	61,100	-	-	-	-
○ 시설비(420-03)	1,539	4,750	10,213	5,463	115.0
○ 감리비(420-04)	-	639	-	△639	순감
○ 시설부대비(420-05)	41	93	-	△93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종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55	○시설비 48, 감리비 6, 시설부대비 1
'15	102	○시설비 102(공정율 100%)
'16	-	-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추진경위
 - 2007. 12~2008. 9. 예비타당성조사(KDI) 완료
 - 2008.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 2011.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설계완료
 - 2012. 04~06.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감리 계약완료
 - 2012. 06.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지경부 고시 제2012-121호)
 - 2012. 07. 건축공사 착공
 - 2013. 07. 부지조성 준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울산자유무역 지역조성	270	810	232	55	10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부지조성공사 지연 및 청사부지 이전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시설비·감리비 18,320백만원 이월
- '13년 울산지역 건설기계노조파업('13.4~6월)에 따른 건설장비 수급불가로 건축공사 지연, 시설비 및 감리비 16,684백만원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70 (-)	- (-)	- (-)	270 (-)	270 (-)	- (-)	- (-)
'12년	810 (-)	- (-)	- (-)	810 (-)	627 (-)	183 (-)	- (-)
'13년	232 (-)	183 (-)	- (-)	415 (-)	248 (-)	166 (-)	1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결산 예결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나 집행부진으로 주의를 지적받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작성 및 검토 → 지정신청 → 관계 중앙기관협의 → 기획재정부장관 사전협의 →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 설계용역 → 조성공사 착공 → 조성공사 준공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조사기관 : KDI공공투자관리센터
- 조사기간 : '08.1월 ~ '08.6월
- 조사결과(B/C) : 1.5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0,052	11,814	15,645	3,831	32.4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10

* 담 당 자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최영학, 063-545-4811), 주무관(유근상, 063-545-48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9~'15 - 부지조성 : '09~'14, 표준공장 : '12~'15
총사업비	○ 1,355억원 (국비 977억, 지방비 378억) - 부지조성 : 961억원(국비 721억원, 지방비 240억원) - 표준공장 : 394억원(국비 256억원, 지방비 138억원)
사업규모	○ 부지조성 : 991,740㎡ (김제 지평선 일반산단 내) ○ 관리청사 1동(2,130㎡), 식당동(316㎡), 경비초소 2동(64㎡), 울타리(5.2km), 세관검사장, CCTV, 외부보안등 등 ○ 표준공장 5층 3개동 : 35,150㎡
지원조건	○ 국비 : 지방비 매칭방식 - 부지조성 961억원 : 국비 75%, 지방비 25% - 표준공장 394억원 : 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 진흥,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부지조성) 잔여 토지매입비 : 14,645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사업은 '14년말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가 96,096백만원으로 협의조정되어 증액된 총사업비중 국비부족분 14,645백만원 예산편성

* 증액 총사업비 96,096백만원중 국비 72,072백만원의 미확보액 14,645백만원

○ (표준공장) 준공을 위한 '15년 잔여 공사비 : 1,000백만원

- 산출내역 1) : 시설비 중 부족분 964백만원 × 국비(65%) = 627백만원

* '15년 건축면적 1,087㎡(건축단가 887,624원/㎡당)

- 산출내역 2) : 감리방식변경 부족분 574백만원 × 국비(65%) = 373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계약금액	비고(단위:백만원)
	당초	변경		
감리비(국+지)	365	1,239	939	낙찰차액 300
국비(65%)			610	237(기투입), 373('15년도 소요)

□ 지원 필요성

- '14년말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토지매입비 지원 필요
- '15년 하반기 표준공장 준공예정에 따라 잔여사업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0,052	11,814	15,645	3,831	32.4
▪ 부지조성	15,570	6,920	14,645	7,725	111.6
▪ 표준공장 신축	4,482	4,894	1,000	△3,894	△79.6
☐ 비목(합계)	20,052	11,814	15,645	3,831	32.4
○ 토지매입비(410-00)	15,570	6,920	14,645	7,725	111.6
○ 기본조사설계비(420-01)	818	-	-	-	-
○ 시설비(420-03)	3,648	4,894	627	△4,267	△87.1
○ 감리비(420-04)	-	-	373	373	100.0
○ 시설부대비(420-05)	16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종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도	금액	산 출 근 거
'14	118	○ 토지매입비 : 69 ○ 표준공장건축 : 49
'15	156	○ 토지매입비 : 146 ○ 표준공장건축 : 10
'16	-	-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 추진경위

【부지조성사업】

- 2007.09.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비후보지 선정
- 2008.03~2008.09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2008.11. : 관계부처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 2008.12.08.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2009.01.06. : 김제자유무역지역 본지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2009.09.29. : 조성원가 매입방식으로 조성방식 변경
* 김제시 조성, 지경부 매입
- 2009.12.24. : 김제자유무역지역 토지매매계약 체결
* 지경부-전북도, 김제시
- 2010.08. : 부지조성 공사 착공
- 2011.10.2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12.03.30 : 기재부협의 조정결과 사업기간 연장
* '09 ~ '11 → '09 ~ '13
- 2012.05.25 : 총사업비 자율조정 70,532백만원 → 76,569백만원
* 감정평가결과 반영한 직접보상비 및 부대경비 등 간접보상비 6,066백만원 증
- 2012.06.14 : 총사업비 조정요구
* 당초 76,569백만원, 조정요구 102,560백만원
- 2012.11~2013.5 : 총사업비 조정요구액 적정성재검토 실시(기재부, KDI)
* 요구액 102,560백만원, 검토액 100,630백만원
- 2014.09 : 총사업비 조정완료
* 조정액 96,096백만원
- 2014.12 : 부지조성 완료 예정

【표준공장 신축사업】

- 2012.09. : 표준공장 신축사업 총사업비내역사업으로 선정
- 2013.11 : 표준공장 설계완료(설계 및 공사입찰 : 조달청 의뢰)
- 2014.5 : 표준공장 공사착공
- 2015.11 : 표준공장 준공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97	174	318	118	1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97 (-)	- (-)	- (-)	97 (-)	96 (-)	1 (-)	0.2 (-)
'12년	174 (-)	1 (-)	- (-)	175 (-)	136 (-)	39 (-)	- (-)
'13년	318 (-)	39 (-)	- (-)	357 (-)	201 (-)	153 (-)	3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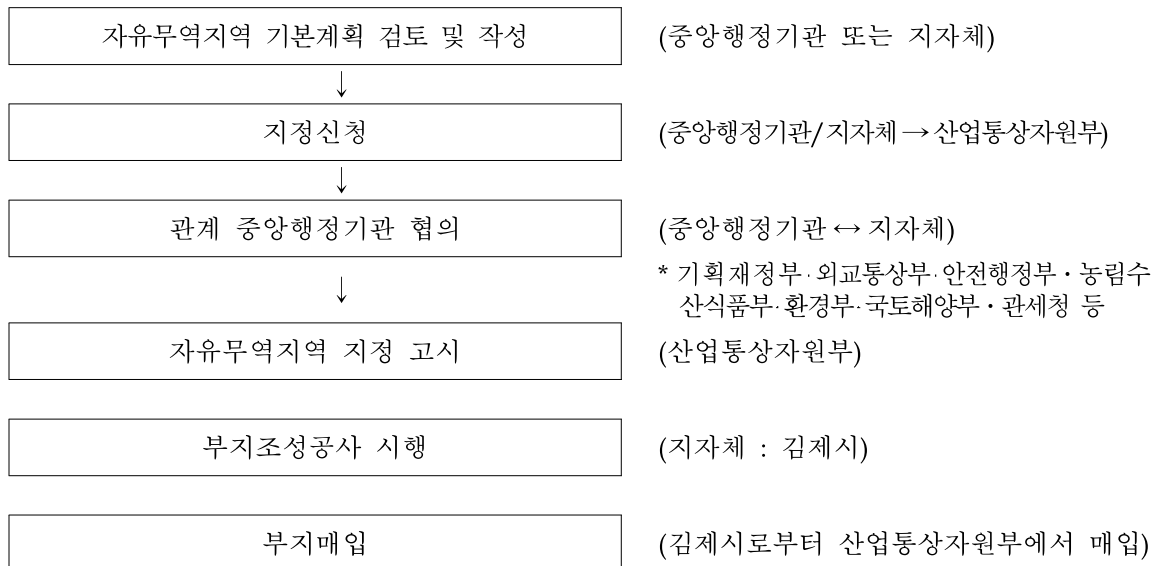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부지조성

- 자유무역지역지정 수요조사, 전문기관 평가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 후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추진

- 지정절차 및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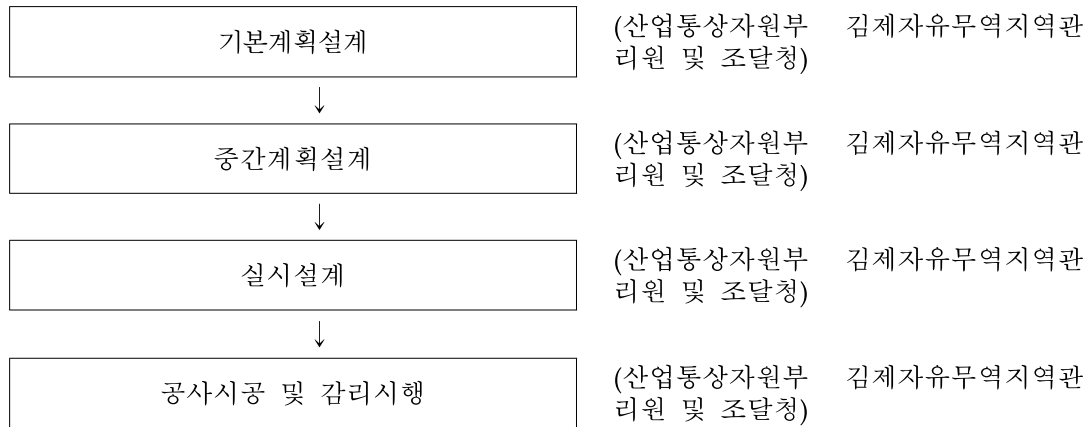


- 부지조성 시행 : 김제시
- 관리청사 및 부대시설 등 건축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될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시공업체 선투자방식으로 김제시에서 우선 조성한 후, 대상부지를 조성원가방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입

○ 표준공장 신축공사

- 김제자유무역관리원과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표준공장 시설물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관련분야 감독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맞춤형서비스제도)에 의뢰하여 시설물 신축



○ 조달청맞춤형서비스

- 시설공사의 전문인력이 없는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별(기획, 설계, 계약, 시공, 사후관리 등)로 대행하는 서비스제도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에서 품질·안전·하도급관리 등 전 단계를 일괄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부지조성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결과요지
- '08. 3.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조사기관: 기획재정부, KDI)
- 조사기간 : '08.03. ~ '08.09.
- 조사결과 : B/C 1.62, AHP 0.728, 총사업비 705억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6,060	16,871	16,678	△193	△1.1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11

* 담 당 자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류금렬), 관리과장(여희구, 055-294-2771),
주무관(강호민, 055-294-27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9~'16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16 - 확대조성 : '09~'14
총사업비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199억원 ○ 생산인프라 개선 : 6.4억원 ○ 확대조성 : 930억원
사업규모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부지면적 46,341㎡, 연면적 121,364㎡ ○ 생산인프라 개선 : 표준공장 옥상테크(5,880㎡), 식목비 ○ 확대조성 - 1공구 표준공장 4개동 81,007㎡, 주차빌딩 4,116㎡, 삼호천변 도로확장 16,160㎡, 간선도로 확장 9,807㎡
지원조건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직접수행(국비 65%, 지방비 35%) ○ 생산인프라 개선 : 직접수행(국비 100%) ○ 확대조성 : 직접수행(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 노후된 표준공장 9개동 재건축(건령 40년), 도로확장, 주차빌딩 신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시설비 등 16,678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정률 60% 이행 소요 시설비(15,708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사 감리비 소요(900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시설부대비 소요(7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정률 60% 달성을 위한 표준공장 건축 시설비(157억) 및 표준감리비(9억) 등 지원 필요
-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입주업체 생산 차질 및 기존업체 이탈 방지를 위해 신속한 생산시설의 재정비가 필요

※ 사업내용 : 현대식 아파트형 표준공장 5개동 재건축(연면적 121,364㎡)

< 세부 내역 >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6,060	16,871	16,678	△193	△1.1
▪ 노후표준공장재건축	1,695	16,231	16,678	447	2.8
▪ 확대조성	4,365	-	-	-	-
▪ 생산인프라개선	-	640	-	△640	순감
□ 비목(합계)	6,060	16,871	16,678	△193	△1.1
○ 설계비(420-02)	3,419	-	-	-	-
○ 시설비(420-03)	1,811	16,521	15,708	△813	△4.9
○ 감리비(420-04)	764	300	900	600	200.0
○ 시설부대비(420-05)	66	50	70	20	4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적기 투입으로 표준공장 재건축사업의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69	○ 시설비 165, 감리비 3, 시설부대비 1
'15	167	○ 시설비 157, 감리비 9, 시설부대비 1
'16	211	○ 공정을 100%에 따른 시설비 211
'17	-	-
'18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
- 추진경위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0. 12 : '11년 상반기 예타 대상과제로 신청(지경부→기재부)
- '11. 3 : '11년 상반기 예타 대상과제로 선정(기재부)
- '11. 4~9월 : KDI, 예타 용역수행
- '11. 10. 7 : 예타 최종결과 통보(기재부→지경부)
- '12. 12 : 설계용역 업체 선정 및 착수
- '13. 6 : 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 '13. 8 : 실시설계 완료
- '13. 12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300	118	473	169	16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년 : 예산 수시배정 지연(10월 배정)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가 늦어서 관련예산(설계비 1,600백만원, 감리비 385백만원) 이월

* 시설부대비(15백만원)는 미배정으로 불용

- '13년 : 재건축 공사 수시배정 지연에 따른 설계착수 및 완료지연('12.12착수, '13.8완료), 재건축 공사 착공 지연('13.12착수)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12년	20 (-)	- (-)	- (-)	20 (-)	- (-)	19.9 (-)	0.1 (-)
'13년	388 (-)	19.9 (-)	- (-)	407.9 (-)	43.6 (-)	333 (-)	30.7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11년 : 표준공장, 주차빌딩 공사는 정상 추진 되었으나, 삼호천변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안 개선을 관계기관(경남도 등) 협의 진행에 따른 시설비 일부(46억원) 미집행

- '13년 : 확대조성공사 삼호천변 도로확장공사 총사업비 조정지연 및 하천기본계획/실시계획 설계지연('13.7~'14.2)에 따른 이월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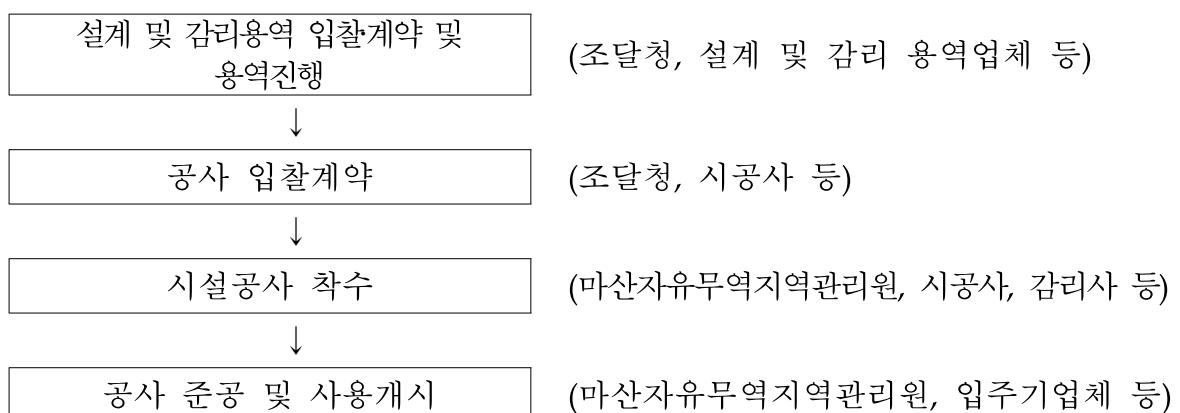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00 (-)	90 (-)	- (-)	390 (-)	344 (-)	46 (-)	- (-)
'12년	98 (-)	46 (-)	- (-)	144 (-)	144 (-)	- (-)	- (-)
'13년	85 (-)	- (-)	- (-)	85 (-)	17 (-)	68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산업위, 예정처) 지적 및 조치
 - (사업명)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지적)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해소 및 합리적 예산편성 필요
 - * '09년 21억원 이월, '10년 예산 90억원, '11년 46억원 이월 등
 - (조치) 연도별 공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 편성
 - * '12예산 98억원(전년도 300억원 대비 67% 감액), '13년 예산 85억원(전년도 98억원 대비 13% 감액) 편성
 - * '12년 예산(98억원)은 공정률에 따라 '12년말까지 전액 집행 완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조사기관: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2011.3.~2011.10.
- 조사결과: B/C 1.02, AHP 0.539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1.15, AHP 0.604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 2008.3~2008.9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자유무역지역관리	2,306	3,208	3,628	420	13.1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산업물류투자팀장(정재남, 044-203-4630),
사무관(박민정, 044-203-4631), 주무관(이미진, 044-203-46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71~계속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규모	○ 국유건물(34동, 151,887㎡), 기반시설물(공용면적 250,045㎡) 유지보수, 조경수 300그루
지원조건	○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사업목적

- 국유건물(표준공장, 청·관사 등) 및 국유시설물(가로등, 도로·보도 등)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유지 시설관리
-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자유무역지역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1,133백만원)

- * 노후 취약사업장 및 역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71백만원, 노후 국유건물 및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962백만원, 청사관리 및 조경 위탁관리 44백만원, 역내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 70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552백만원)

- * 국유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용 50백만원, 옥상방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비 153백만원,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349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501백만원)

- * 국유건물(시설물) 안전관리비용 39백만원, 물류창고동 방수공사 등 유지보수 37백만원,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411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14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248백만원)

-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198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50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관리(251백만원)

-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200백만원, 청사동 보수공사 등 51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312백만원)

-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179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133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501백만원)

-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351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150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 사업(130백만원)

- * 자유무역지역 홍보책자 인쇄비 등 12백만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90백만원, 투자유치 활성화 여비 25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물들을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시설관리 및 청소,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유지관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자유무역지역관리	2,306	3,208	3,628	420	13.1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958	969	1,133	164	16.9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399	372	552	180	48.4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486	467	501	34	7.3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268	198	248	50	25.3
○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	144	423	251	△172	△40.7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51	329	312	△17	△5.1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	450	501	51	11.3
○ 자유무역지역관리지원	-	-	130	130	순증
□ 비목(합계)	2,306	3,208	3,628	420	13.1
○ 일반수용비(210-01)	20	15	57	42	280.0
○ 임차료(210-07)	-	350	-	△350	순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63	63	순증
○ 위탁사업비(210-15)	1,130	1,491	1,873	382	25.6
○ 국내여비(220-01)	-	-	10	10	순증
○ 국외업무여비(220-02)	-	-	15	15	순증
○ 업무추진비(240-01)	-	-	3	3	순증
○ 연구개발비(260)	-	-	90	90	순증
○ 실시설계비(420-02)	10	37	30	△7	△18.9
○ 시설비(420-03)	1,044	1,305	1,125	△180	△13.8
○ 시설부대비(420-05)	12	-	15	15	순증
○ 무형자산(440)	90	10	347	337	337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유건물 및 시설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32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2
'15	36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6
'16	32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2
'17	34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4
'18	29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2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70.4) 이래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울춘('05.12), 울산('08.12), 김제('09.1)가 차례로 지정된 후 자유무역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계속 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자유무역지역관리	20	17	26	32	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 (마산, 군산) 시설공사 및 민간위탁 조달경쟁 입찰 낙찰차액 등 52백만원
- (대불, 울춘)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 등 불용 95백만원
- (동해) 동해무역원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전용 16백만원

○ '12년

- (마산, 군산, 대불) 시설공사 낙찰차액 27백만원
- (군산, 울춘) 민간위탁 조달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6백만원
- (군산) 경상경비 절감액 6백만원

○ '13년

- (마산, 군산, 대불) 시설공사 낙찰차액 123백만원
- (김제) 관리원청사 신축공사가 '13.8월에 준공되어 집행잔액 128백만원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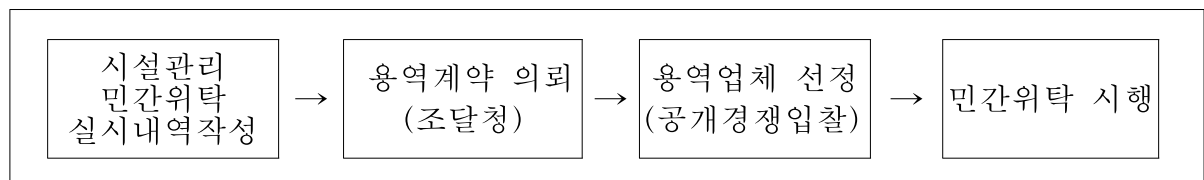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1.6 (-)	- (-)	△0.2 (-)	21.4 (-)	19.9 (-)	- (-)	1.5 (-)
'12년	17.3 (-)	- (-)	- (-)	17 (-)	16.5 (-)	- (-)	0.5 (-)
'13년	26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529	582	639	57	9.8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6-451

* 담 당 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산업물류투자팀장(정재남, 044-203-4630),
사무관(박민정, 044-203-4631), 주무관(이미진, 044-203-46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역내 내부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울타리, 초소, 세관검사장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물(도로, 가로등, 울타리 등)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체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400백만원)

- * 자유무역지역 내 단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5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0백만원, 도로 청소용역비 325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74백만원)

- * 가로등 전기요금 및 국유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 15백만원, 도로 청소용역비 59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72백만원)

- * 자유무역지역 내 단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4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4백만원, 수목관리 및 울타리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 44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9백만원)

-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2백만원,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7백만원

○ 울춘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10백만원)

-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1백만원,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9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22백만원)

- *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9백만원, 도로청소 용역비 13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52백만원)

- * 자유무역지역 내 단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3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5백만원, 도로청소 용역비 3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역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납부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 및 입주업체 생산기반여건 조성

< 세 부 내 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자유무역지역관리	529	582	639	57	9.8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376	379	400	21	5.5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0	72	74	2	2.8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0	70	72	2	2.9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	7	9	2	28.6
○울춘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	6	10	4	66.7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24	22	△2	△8.3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24	52	28	116.7
☐ 비목(합계)	529	582	639	57	9.8
○일반수용비(210-01)	29	12	15	3	25.0
○공공요금및제세(210-02)	96	133	149	16	12.0
○시설장비유지비(210-09)	388	437	475	38	8.7
○시설비(420-03)	16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 공동시설물(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동부담금(수입대체경비)을 활용하여 공동 시설물(가로등, 차도, 보도, 울타리 등)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활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32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2
'15	36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6
'16	32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2
'17	34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4
'18	29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2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관리사업 동일)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8조 : 관리권자는 자유 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70.4) 이래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울춘('05.12), 울산('08.12), 김제('09.1)가 차례로 지정된 후 자유무역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계속 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자유무역지역공동 시설유지관리	5.9	5.6	5.9	5.8	6.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 (군산) 낙찰차액 8백만원 불용
- (대불, 동해, 울춘) 일용임금 등 예산절감 10백만원 불용

○ '12년

- (군산) 김제관리원 신설에 따른 전용 4백만원, 낙찰차액 등 11백만원

○ '13년

- (마산, 군산) 경상경비 절감 5백만원
- (김제) 부지준공 연기('14.下)에 따른 공동시설물 미준공으로 62백만원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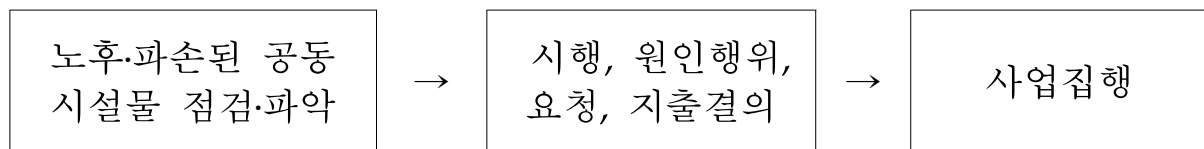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9 (-)	- (-)	- (-)	5.9 (-)	5.7 (-)	- (-)	0.2 (-)
'12년	5.6 (-)	- (-)	△0.1 (-)	5.5 (-)	5.4 (-)	- (-)	0.1 (-)
'13년	5.9 (-)	- (-)	- (-)	5.9 (-)	5.3 (-)	- (-)	0.6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5,042.5	12,450	7,690	△4,760	△38.2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4 - 4900 - 49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배기주, 044-203-462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유치대상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초기운영비 지원 등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25~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으로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6,64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간 : 5년 범위내
 - 외국교육기관(6개) 4,890백만원, 외국연구기관(2개) 1,750백만원 지원

-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 1,050백만원(국비 100%)
 - 외국연구기관평가 : 50백만원(국비 100%)
 - 외국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심사 및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기반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관리 지원(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는 핵심 국정과제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요건에 해당
-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소의 특성상 재정적 인센티브가 유치의 필수조건으로 외국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5,042	12,450	7,690	△4,760	△38.23
▪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조성	-	-	-	-	-
▪ 창원국제외국인학교 건축비	-	2,350	-	△2,350	△100
▪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1017	1,100	1,050	△50	△4.55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4025	9,000	6,640	△2,360	△26.22
☐ 비목(합계)	5,042	12,450	7,690	△4,760	△38.2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2,350	-	△2,350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42	10,100	7,690	△2,410	△23.8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 우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동북아 교육·연구 Hub 달성

- 특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외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으로서 동북아 지식 cluster 및 FDI 촉진의 Ancho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09.5 국경위 대통령 보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4	125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24억원, 2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1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90억원, 50%)
'15	77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67억원, 50%)-
'16	73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63억원, 50%)-
'17	73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63억원, 50%)-
'18	70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원,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60억원, 5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489	192	154	125	7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이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일부 대학 및 연구소의 설립협약 체결 지연으로 1,825백만원 이월

○ 2012년 불용 및 이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외국교육연구기관과 MOU 체결이후 입장 변경 등으로 협약체결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3,205백만원 불용
 - 일부 대학의 설립승인 지연 및 설립준비비 일부 집행 지연으로 950백만원이월

○ 2013년 불용 및 이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일부 대학의 협약이전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유치 무산으로 2,555.5백만원 불용
 - 일부 연구기관의 전문가심사 결과 반려에 따른 서류 미보완 및 민간 출연금 미확보로 인한 2,000백만원 불용
 - 교육부 설립승인 이후 인천청과 일부 대학의 설립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1,350 백만원 이월
 - 광역특별회계의 세수부족으로 인한 연구기관 초기운영비 4,427 백만원 이월
- 외국교육연구기관 건축비
 - 교육환경평가 준비로 인해 교육감 설립계획 승인지연 및 학교부지 유치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협약 미체결로 인한 1,000백만원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89 (471)	(38)	()	489 (509)	471 (479)	18 (25)	(5)
'12년	192 (168)	18 (25)	()	210 (193)	168 (152)	10 (33)	32 (8)
'13년	155 (51)	10 (32)	()	164 (83)	50 (72)	58 (2)	56 (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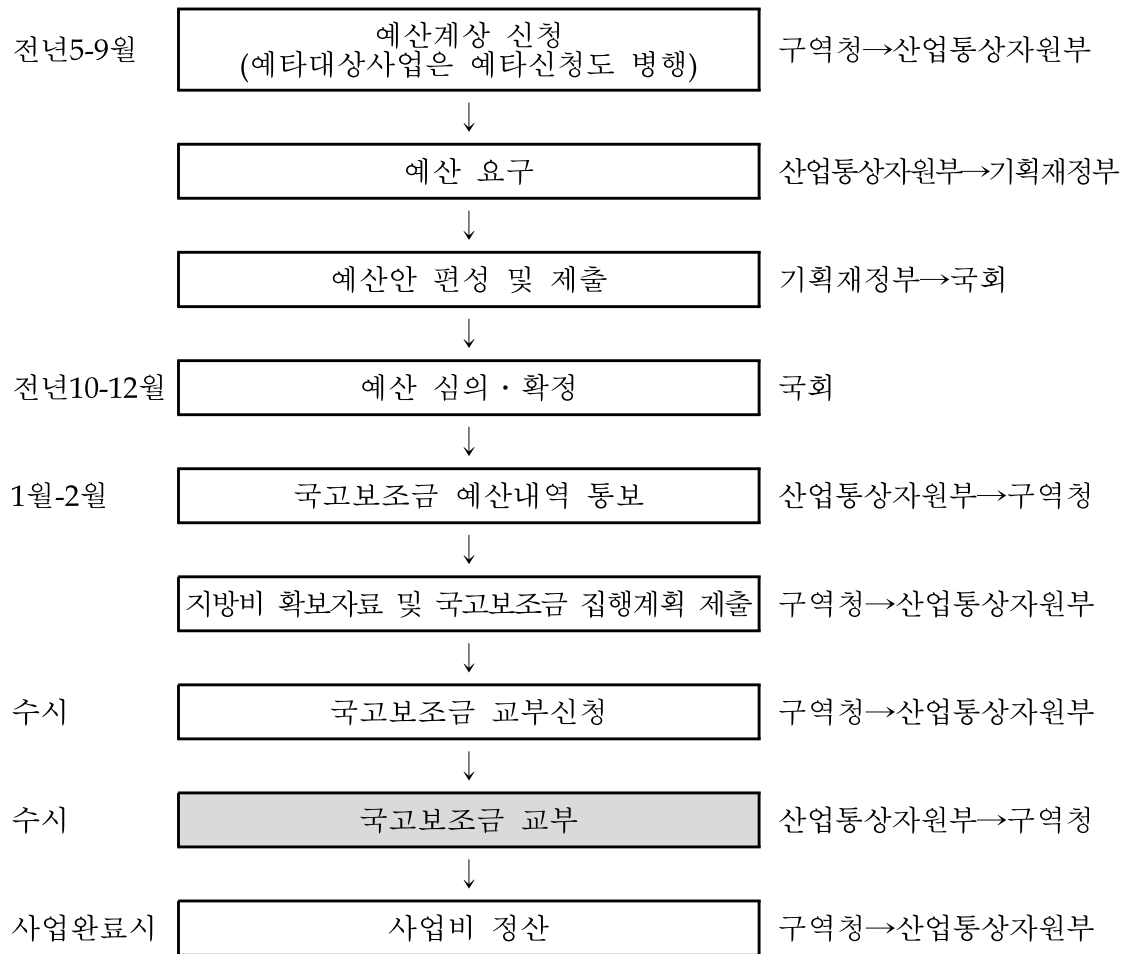
○ 싱가포르 (World-Class University Program)

- 추진배경 : 경제개발위원회 주관으로 10년간('98~'07) 세계 수준의 10개 대학을 유치하여 Education Hub 조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 MIT(1억불), 듀크대(3억불) 등

○ 카타르 (Education City)

- 추진배경 : 국가적 고급인력 양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 코넬의대, 카네기멜론대, 텍사스 A&M대, 조지타운대 유치를 위해 부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제공 및 연간 10억불의 대학 운영비 지원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참고 : 해외 외국대학 유치 사례)

참고

해외 외국대학 유치 사례

국 가	지 원 내 용	
싱가포르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간 대학부지 무상 제공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 과실송금 허용 경우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및 행정적 편의 제공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운영비용 및 연구비 50% 지원 (학생 1,200명 시 운영비만 약 650만 달러 상당- 조지메이슨대 재정계획 상 산출시) 대학의 각종 세금면제 및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지원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T와 싱가포르국립대(NUS)에 각각 1억 달러 지원 듀크 의대 유치 시 싱가포르 정부가 3억1천만 달러 기부 예일대 Liberal Arts College 설립(NUS와 공동)시 운영비, 본교 교수 인건비, 건축비 지원
카타르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교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등의 교육용 인프라 제공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교수들의 봉급, 보너스, 주택 등 제공 유치된 5개 해외대학 운영비로 연간 10억 달러 지원 * 코넬 의대 유치를 위해 11년간 7.5억달러 지원 재단이 학생의 학비 무이자대출 지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 분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본교와 동일하게 운영 외국대학 유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과학기술재단 건설
두바이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부지 장기임대 및 50년간 무상 제공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의 50년간 100% 감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 업무승인, 통신 등의 서비스 제공 이민지원, 동반가족 취업 알선 등 뉴욕대에 5천만 불을 기부 조건으로 분교설립 계약
중 국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부지 및 건설비용 무상 제공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도입 해외학생 유치 장려금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닝보시의 영국 노팅엄 대학 유치 시 토지 무상 제공(4,340억 상당) 및 건설비용액(1,650억) 부담 장쑤성 쑤저우 공업원구의 '국제대학촌'의 경우, 건축 및 토지 비용 100% 부담, 초기 임대료는 무상이나 관리비는 입주대학 부담 ※ 중국은 중국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 설립형태만 인정 (외국대학 단독 분교 설립 불인정)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18	1,128	970	158	14.0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 당 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정책기획팀장(전윤중, 044-203-4610),
주무관(이주영, 044-203-461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업비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 및 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970백만원
 - 운영비 : 741백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360), 경자구역 성과평가 실시(150), 위원회 개최비용(85), 과운영비 및 기획단운영 기본경비 등(56), 인쇄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90)

- 국내·외 여비 : 131백만원(국내 47, 국외 84)
-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과의 업무활성화 추진 : 68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 30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운영	인건비 101백만원, 운영비 794백만원, 여비 133백만원, 업무추진비 70백만원, 연구개발비 30백만원 지원	운영비 741백만원, 여비 131백만원, 업무추진비 68백만원, 연구개발비 30백만원 지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을 위해 설치된 기획단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내실화 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역청의 운영경비 차등지원

< 세부 내역 >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백만원)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18	1,128	970	△158	14.0
☐ 비목(합계)	1,118	1,128	970	△158	14.0
○ 기타직보수(110-02)	98	101	-	△101	△100
○ 일반수용비(210-01)	668	695	642	△53	△7.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1	41	41	-	-
○ 특근매식비(210-05)	42	42	42	-	-
○ 임차료(210-07)	3	3	3	-	-
○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
○ 국내여비(220-01)	48	48	47	△1	△2.1
○ 국외여비(220-02)	96	85	84	△1	△1.2
○ 사업추진비(240-01)	79	70	68	△2	△2.9
○ 연구개발비(260-00)	30	30	30	-	-
○ 민간이전비(320-03)	0.3	0.3	0.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간 개발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개발성과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본격 추진

* 현재 인천 등 총 8개 구역, 336km²를 경자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추진
 -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운영,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해외 우수대학·연구소 중점 유치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협의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보좌
 - 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 성과평가, 국제협력, 통계 및 자료의 조사 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1.28	인건비 1.01, 운영비 7.94, 여비 1.33, 업무추진비 0.7, 연구개발비 0.3
'15	9.70	운영비 7.41, 여비 1.31, 업무추진비 0.68, 연구개발비 0.3
'16	12.84	인건비 1.04, 운영비 9.05, 여비 1.4, 업무추진비 0.75, 연구개발비 0.6
'17	13.47	인건비 1.07, 운영비 9.27, 여비 1.44, 업무추진비 0.79, 연구개발비 0.9
'18	14.72	인건비 1.1, 운영비 10.13, 여비 1.48, 업무추진비 0.81, 연구개발비 1.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3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자단 지식경제부로 이관
 - '08.4월 : 3개 경자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22, 대구·경북 : '08.8.13, 새만금 : '08.8.28)
 - '09.1월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특별법 전환, 외국인 임대주택공급규정 등)
 - '10.9월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2.4월 :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 '12.9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2.9월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
 - '13.2월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13.2.4 경자위 의결)
 - '13.7월 : 제1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경제자유기획단 운영	10.8	11.1	11.2	11.3	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불용(1.9억원)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 2011년 이월(0.2억원) :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11.12.23~12.2.22) 연구비 지급을 위해 이월
- 2012년 불용(0.1억원), 2013년 불용(1.7억원)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 2013년 이용(0.3억원) : 광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용역비 미집행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0.8 ()	()	()	10.8 ()	8.7 ()	0.2 ()	1.9 ()
'12년	11.1 ()	0.2 ()	()	11.3 ()	11.2 ()	()	0.1 ()
'13년	11.3 ()	()	()	11.3 ()	9.3 ()	0.3 ()	0.7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구역청 투자유치지원(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830	4,950	5,050	100	2.0

* 사업코드 : 21-39-2-120-126-2700-2733-302

* 담 당 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박순기), 정책기획팀장(전윤종, 044-203-4610),
사무관(임경숙, 044-203-4615), 주무관(최승민, 044-203-462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지자체보조(정액, 일부정률보조)
사업시행주체	구역청(자치단체)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담조직인 구역청 운영과 바이오 앵커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7개 구역청에 대해 동 법에 따라 그 운영비를 국고 지원

- 기존구역청 운영경비(성과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6.5억원x5개청 : 32.5억원
- 신설구역청 운영경비 6억원x2개청 : 12억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상업화 및 기술협력을 위한 핵심앵커시설 장비 구축 등 지원
 - * 인천송도지구내 ‘바이오 분석센터’내 세포주 배양공정개발 연계 분석 장비 9기 구축
- 장비구축예산 10억원(국시비포함) x50%(매칭율)x1개소 : 5억원

□ 지원 필요성

- 경자구역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7개 구역청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내 특성에 맞는 업종별 유치 지원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활성화에 기여
 - * ‘인천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역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6개 바이오기업이 既 입주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830	4,950	5,050	100	2.0
▪ 기존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4,200	3,250	3,250	-	-
▪ 신설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630	1,200	1,200	-	-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 지원	-	500	600	100	20.0
□ 비목(합계)	4,200	4,950	5,050	100	2.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830	4,450	4,450	-	-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00	600	100	2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 사무를 전담처리하는 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투자유치활동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도모
- 경자구역내 업종별 핵심앵커시설 구축지원을 통한 투자유치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 액	산출 근거
'14	49.5	- 기존청 운영비 지원 32.5(평균6.5억원x5개청) - 신설청 운영비 지원 12(6억원x2개청)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지원 5(5억원x1개소)
'15	50.5	- 기존청 운영비 지원 32.5(평균6.5억원x5개청) - 신설청 운영비 지원 12(6억원x2개청)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지원 6(6억원x1개소)
'16	47.98	- 구역청 운영비 지원 41.98(평균5.99억원x7개청)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지원 6(6억원x1개소)
'17	45.58	- 구역청 운영비 지원 39.58(평균5.65억원x7개청)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지원 6(6억원x1개소)
'18	43.3	- 구역청 운영비 지원 37.3(평균5.32억원x7개청) - 바이오 네트워크 구축지원 6(6억원x1개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5조

○ 추진경위

- '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03년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및 구역청 개청
- '08년 3개 경제자유구역(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지정 및 구역청 개청
- '13년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 충북) 지정, 구역청 개청 및 새만금·군산청 폐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구역청투자유치지원	42	42	48.3	49.5	50.5
- 구역청운영경비지원	42	42	48.3	44.5	44.5
- 바이오네트워크구축지원	-	-	-	5	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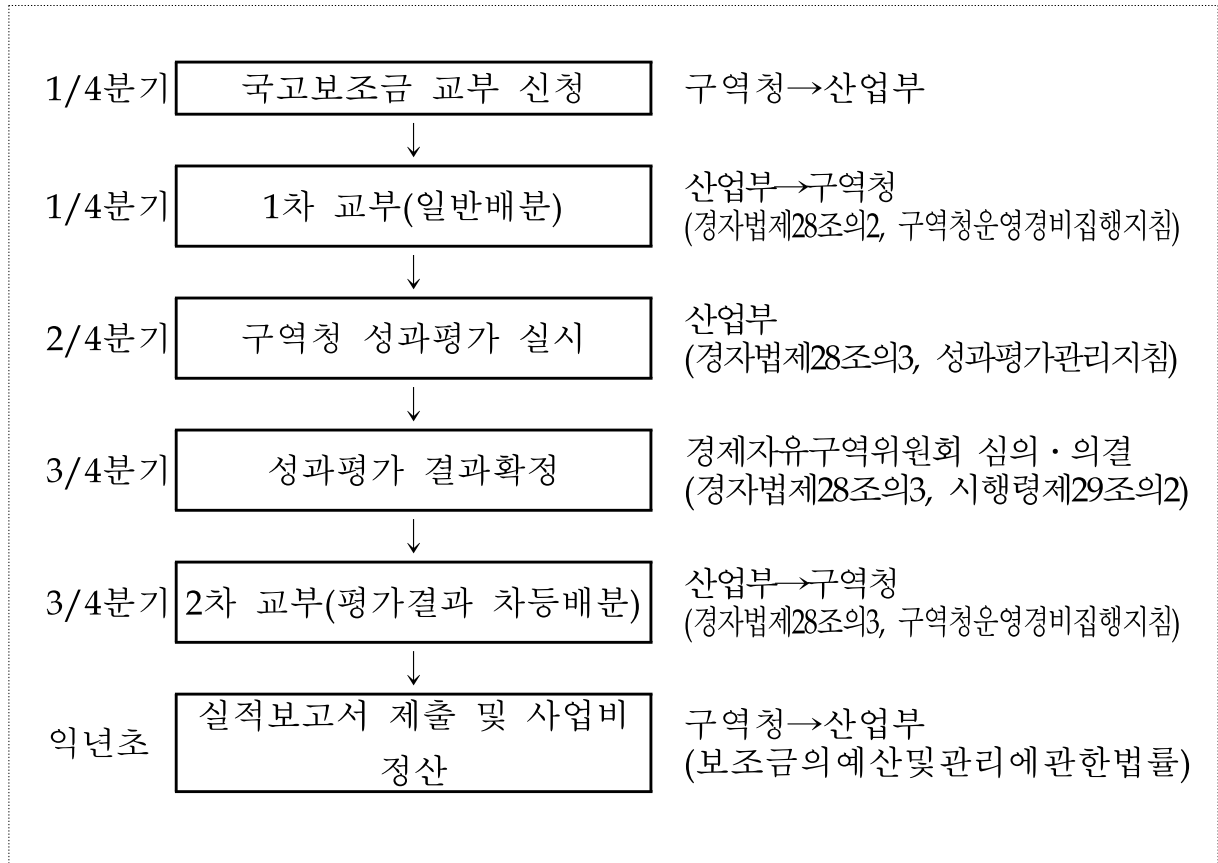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2 (42)	- (4)	- (-)	42 (46)	42 (42)	- (3)	- (1)
'12년	42 (42)	- (3)	- (-)	42 (45)	42 (43)	- (1)	- (1)
'13년	48.3 (48.3)	- (1)	- (-)	48.3 (49.3)	48.3 (44.2)	- (1)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바이오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미실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석동-소사간도로(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석동~소사간 도로	9,910	11,000	11,000	0	0.0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18
총사업비	2,864억원(‘14년까지 기투자액 : 1,007억원(국비 629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7.13Km, B=20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두동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1,000백만원
 - 공사비(8,690백만원), 보상비(2,000백만원), 시설부대경비(3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석동~소사간 도로	9,910	11,000	11,000	0	0.0
☐ 비목(합계)	9,910	11,000	11,000	0	0.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9,910	11,000	11,000	0	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4	110	연차 공사비 등: 110
'15	110	연차 공사비 등: 110
'16	105	연차 공사비 등: 105
'17	99	연차 공사비 등: 99
'18	489	연차 공사비 등: 48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6.10. 9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통보(재경부→경자청)
- '07. 1.1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정(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 '08. 5.29 : 총사업비 협의 완료(지식경제부)
- '08. 8. 1 : 입찰공고(조달청)
- '09.11.20 : 공사착공
- '14.10월 현재 공정을 24%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석동-소사간 도로	200	30	99	110	1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이월 및 불용, 2011년 이월 : 지방비 매칭분 미확보
- 지자체 이월 : 진해터널 굴착공사 준공금 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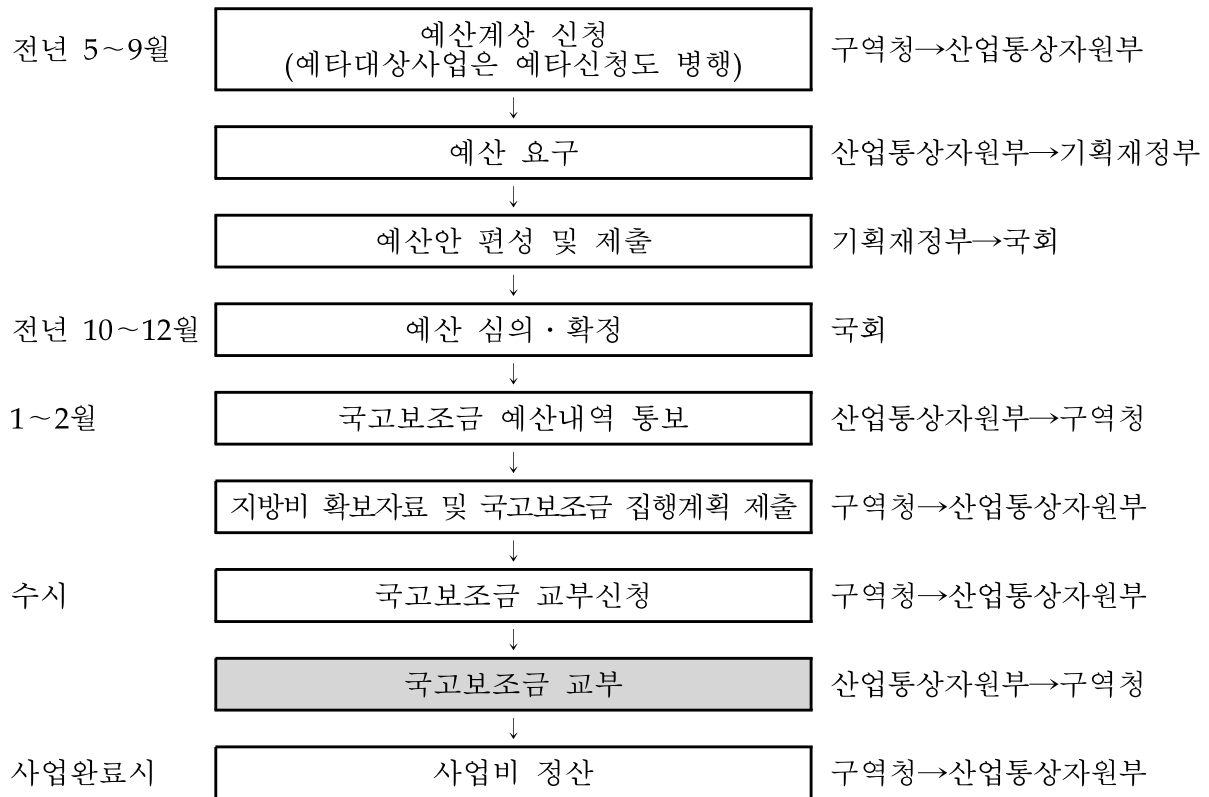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00 (97)	47 (1)	()	247 (98)	97 (91)	150 (6)	- (-)
'12년	30 (180)	150 (6)	()	180 (186)	180 (186)	- (-)	- (-)
'13년	99 (99)	- (-)	- ()	99 (99)	99 (98)	- (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05. 12 ~ '06. 8
- 조사결과 : B/C 1.67, AHP 0.653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타기반시설지원(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기타 기반시설 지원	53,671	49,098	44,122	△4,976	△10.1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4~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2개 도로 건설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제외)
사업시행주체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12개 진입 및 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44,122백만원
 - '15년 종료예정 잔여사업비(4개 사업) : 12,075백만원
 - * 미음지구 진입(3,026), 명지지구 진입(5,782), 갈사만진입도로 1호선(557), 화양지구 간선도로(2,710)
 - 계속사업(8개 사업) : 32,04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기타 기반시설 지원	53,671	49,098	44,122	△4,976	△10.1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	8,975	-	-	-	-
▪ 송도6-8공구 광3-29호 간선	1,000	4,120	500	△3,620	△87.9
▪ 미음지구 간선	1,245	-	-	-	-
▪ 미음지구 진입	-	2,018	3,026	1,008	50.0
▪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도로	5,262	4,144	-	△4,144	순감
▪ 명지지구 진입	7,343	4,974	5,782	808	16.2
▪ 생곡지구 간선	-	-	-	-	-
▪ 갈사만 진입 1호선	-	918	557	△361	△39.3
▪ 갈사만 진입 2호선	2,500	1,023	4,668	3,645	356.3
▪ 갈사만 진입 4호선	-	1,000	1,898	898	89.8
▪ 화양지구 간선	2,000	4,068	2,710	△1,358	△33.4
▪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	1,000	4,530	5,050	520	11.5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 간선	2,500	5,000	7,029	2,029	40.6
▪ 신덕지구 진입	6,812	4,503	4,547	44	1.0
▪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	7,480	9,000	3,575	△5,425	△60.3
▪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연결	2,923	-	-	-	-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	-	-	-	-	-
▪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	-	-	-	-	-
▪ 대구신서경자구역 진입 1호선	1,631	-	-	-	-
▪ 대구신서경자구역 진입 2호선	3,000	-	-	-	-
▪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	3,800	4,780	980	25.8
□ 비목(합계)	53,671	49,098	44,122	△4,976	△10.1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3,671	49,098	44,122	△4,976	△10.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세부사업별 사업기간내 사업 준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4	491	연차공사비 등: 491
'15	441	연차공사비 등: 441
'16	397	연차공사비 등: 397
'17	254	연차공사비 등: 254
'18	214	연차공사비 등: 21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5월 : 기반시설 국고지원기준 마련(제4차 경자위)
 - '08.4월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선정
 - '08.7~8월 :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2월~4월 : 2개 경제자유구역(충북, 동해안권) 추가선정 및 개청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타 기반시설 지원	674	710	537	491	44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이월 : 지자체 지방비 매칭분 미확보
 - 화양지구 간선(29억원), 갈사만1호선(45억원), 갈사만2호선(15억원), 갈사만4호선(15억원), 포항융합기술 진입(62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28억원)
- 2010년 불용 : 경자구역 지정 해제, 지구 실시계획 수립 중단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수성의료(고모 및 이천) 간선도로(72억원)
 - 지구 실시계획 수립 중단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간선도로(20억원)
- 2011년 불용 : 총사업비 조정, 경자구역 해제 등
 - 총사업비 감액 조정에 따른 차액 : 서부산유통 진입(17억원)
 -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수성의료(고모 및 이천) 간선도로(10억원)
 -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 포항융합 진입(61억원), 영천하이테크 진입(28억원), 갈사만진입 2호선(16억원), 갈사만진입 4호선(15억원)
- 2012년 이월 : 실시설계 변경 및 토지·건물이전 협의지연
 - 보상비 및 공사비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15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15억원), 갈사만4호선 연결(7.5억원), 미음지구 진입(7.5억원)
- 2012년 이용 : 구미불산사고('12.9.27) 재해복구비로 이용
 - 지구개발계획 지연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56억원)
 - 사업시행사 선정 지연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50억원)
 - 지구내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 생곡지구 간선(20억원)
- 2013년 이월 : 광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이월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90억원), 송도6-8공구(광3-29) 간선(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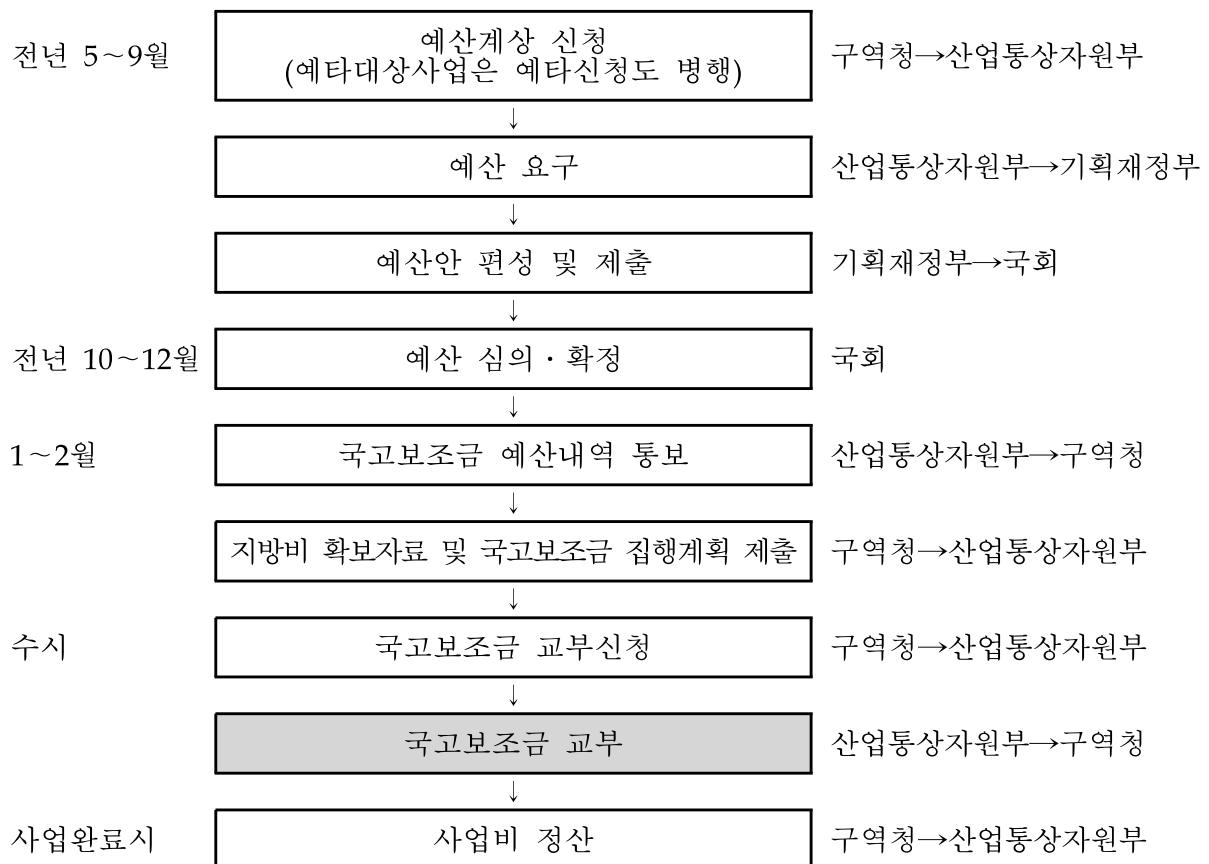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674 (721)	194 (122)	()	868 (842)	721 (517)	(315)	147 (4)
'12년	710 (539)	- (315)	126 ()	836 (854)	539 (512)	45 (282)	(60)
'13년	537 (482)	45 (282)	()	582 (764)	482 (596)	100 (168)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성의료지구간선도로(계속)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18,700	13,900	3,760	△10,140	△72.9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15
총사업비	839억원(‘14년까지 기투자액 : 629억원(국비 326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3.28km, B=20~26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개설을 위한 연차공사비 3,7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의료시설 등이 조성되는 대구경북경자구역의 핵심지구로 조성
원가 인하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18,700	13,900	3,760	△10,140	△ 72.9
□ 비목(합계)	18,700	13,900	3,760	△10,140	△ 72.9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8,700	13,900	3,760	△10,140	△ 72.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편익 도모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4	139	보상비 및 공사비: 139
'15	38	공사비: 38
'16	36	공사비: 36
'17	19	공사비: 19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8. 05 :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09. 05 : 개발사업시행 협약체결(대구도시공사)
 - '09. 06 : 실시계획 및 설계용역 착수

- '11. 04 : 개발계획(3차) 변경승인
(지구조정→면적축소(1.76km²→1.21km²))
- '11. 10 : 간선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조건부선정
- '12. 02 : 개발계획(4차)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경부고시 제2012-33호)
- '12. 11 : 간선도로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 1.1, AHP 0.532)
- '13. 12 : 감정평가 완료
- '14. 01 : 보상협의 통보
- '14. 02 :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 '14. 04 : 수용재결 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	187	139	38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13년도 : 광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차년도 이월(18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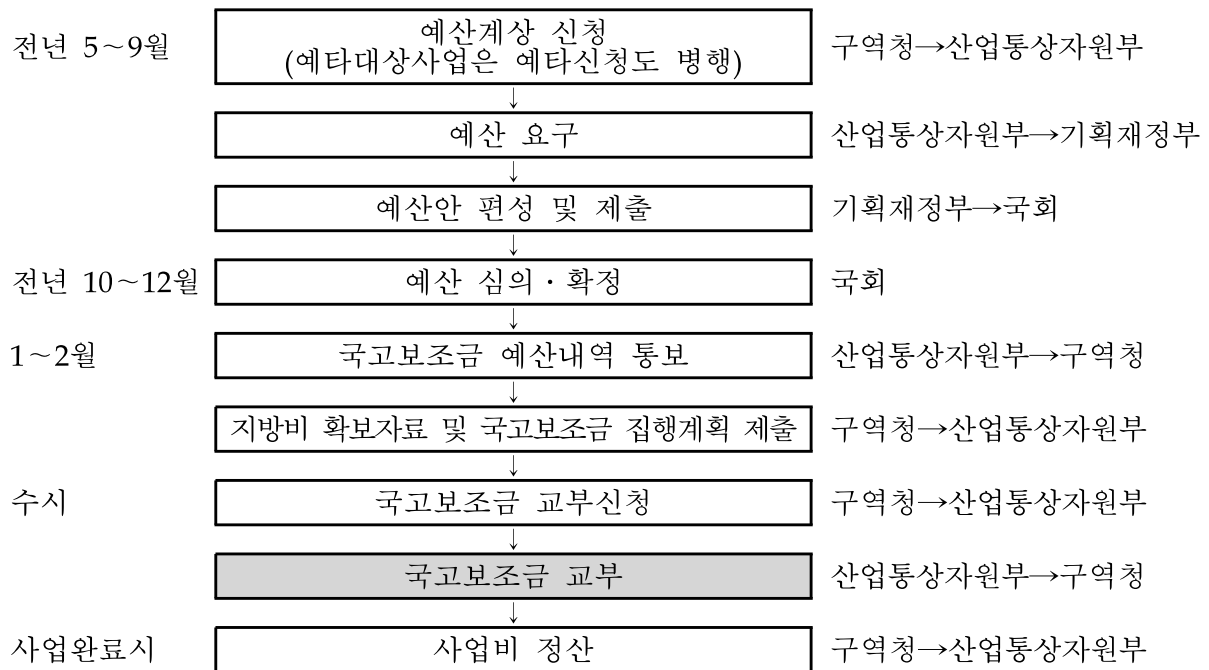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 (-)	()	()	- (-)	- (-)	- ()	- ()
'12년	- (-)	()	()	- (-)	- (-)	()	()
'13년	187 (-)	- ()	- ()	187 (-)	- (-)	187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2. 3 ~ '12. 11
- 조사결과 : B/C 1.1, AHP 0.532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잠진도-무의도간연도교(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708	-	3,550	3,550	순증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17
총사업비	583억원(‘14년까지 기투자액 : 230억원(국비 115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1.6km, B=8~12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개설을 위한 연차공사비 3,5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쟁력 확보
- 도서간의 교통연결로 구축을 통한 무의도의 경자구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외자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8,975	-	3,550	3,550	순증
□ 비목(합계)	8,975	-	3,550	3,550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8,975	-	3,550	3,55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편익 도모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36	연차 공사비: 36
'16	34	연차 공사비: 34
'17	142	연차 공사비: 142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11. 4. 4 :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결과통보(행안부)

- '11. 11. 22 : 실시설계용역 착공
- '12. 11.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연도교 전체구간 L= 1.6km, B=8~12m(본선 1.3km, 접속교 0.3km)
- '12. 12. 4 : 감사원의 기재부 감사시 타당성재조사 요구
 - '13. 2. 20~'13. 11. 14 :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재부)
 - '13. 11. 14 : 사업타당성 재조사 결과(B/C 1.13, AHP 0.555 경제성 도출)
통보(기재부)
 - '13년도 국비예산(89억원) 이월하였으나, '14.2월 전액집행완료(산업부)
- '14. 2. 14 :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완료(인천광역시)
- '14. 5. 14 : 총사업비 조정협의 완료(기재부 및 산업부)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500억원 이상)으로 신규등록(디브레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11	15	90	-	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 광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차년도 이월(9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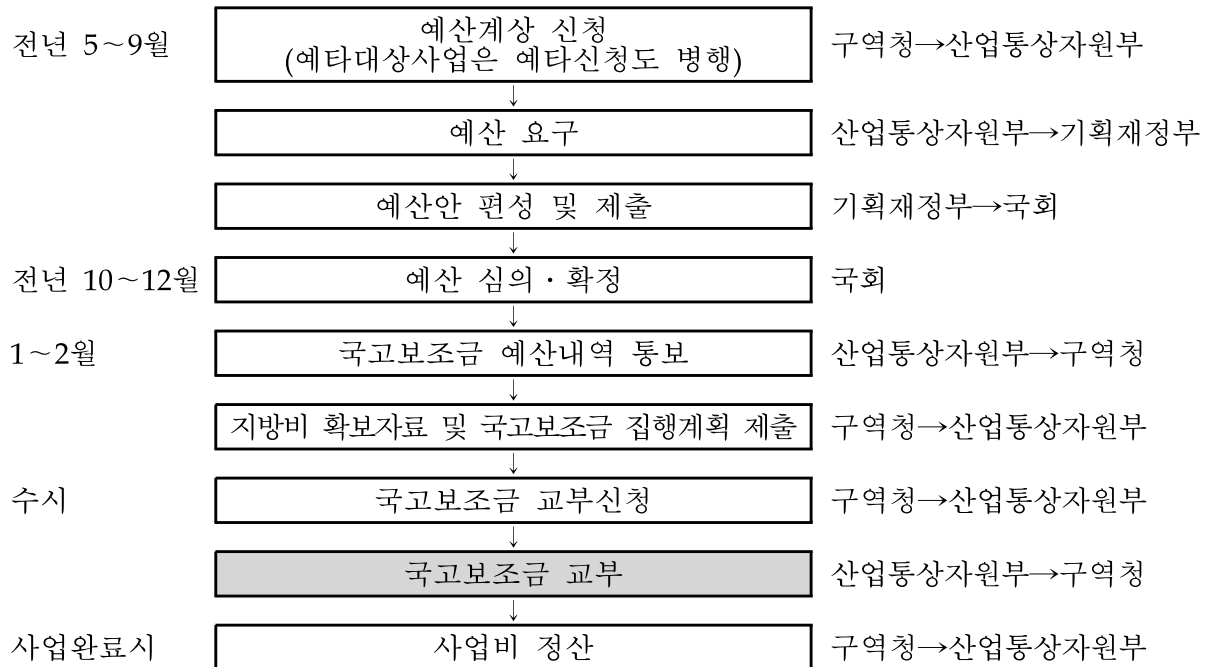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5 (15)	(9)	(-)	15 (24)	15 (9)	(15)	(-)
'13년	90 (-)	(15)	(-)	90 (15)	- (7)	90 (8)	- (-)
'14년	- (90)	90 (8)	- (-)	90 (98)	90 (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3. 2 ~ '13. 11
- 조사결과 : B/C 1.13, AHP 0.555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산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신규)

< 지특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	1,000	1,000	순증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김동곤, 044-203-4620),
사무관(권영무, 044-203-46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18
총사업비	1,164억원(‘14년까지 기투자액 : 0억원(국비 0억원))
사업규모	도로개설 L=7.5km, B=15~18m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도로) 건설 지원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조기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로)를 조기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	1,000	1,000	순증
□ 비목(합계)	-	-	1,000	1,000	순증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1,000	1,0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투자기업 편익 도모 및 투자유치 활성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4	-	-
'15	10	설계비: 10
'16	224	연차 공사비 및 보상비 등: 224
'17	174	연차 공사비 및 부대비 등 : 174
'18	174	연차 공사비 및 부대비 등: 174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8. 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

- '10. 7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1차) 승인
- '12. 1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12. 8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2차) 승인
- '13. 6 : 경산지식산업지구 보상계획 공고
- '14. 4 : 경산지식산업지구 보상가 개별통지(1-1차)
- '14. 8.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기재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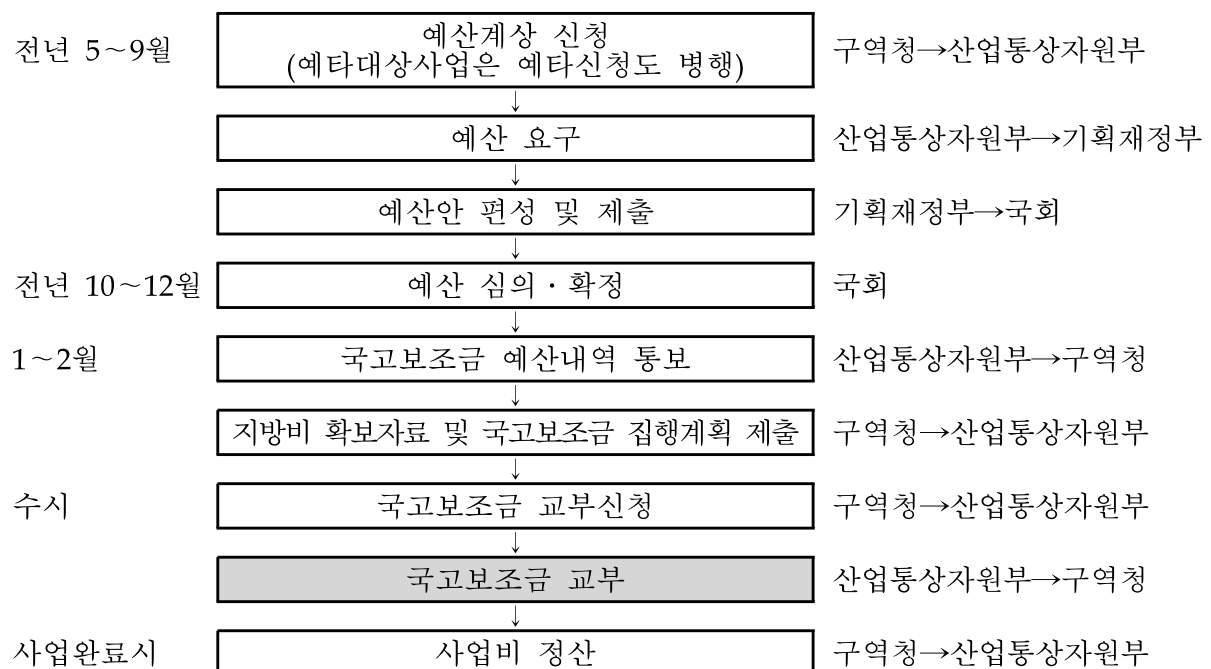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	-	-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3. 11 ~ '14. 8
- 조사결과 : B/C 1.21, AHP 0.609

6. 참고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세 입

□ 혁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혁특회계	24,246	43,739	23,800	△19,939	△45.6

관	항	목	2013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4,246	43,739	23,800	△19,939	△45.6
		관유물매각대	24,246	43,739	23,800	△19,939	△45.6
		고정자산매각대	4,594	8,426	8,426	0	0
		▪ 건물매각대	4,594	8,426	8,426	0	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9,652	35,313	15,374	△19,939	△56.5
		▪ 토지매각대	19,652	35,313	15,374	△19,939	△56.5

건물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건물매각대	5,583	8,426	8,426	-	-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방이전 기관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매각대	-	-	-	-	-	-	-	-	5,583	4,594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8,426	○ 국가기술표준원 건물매각대 = 18,377(매각대금) X 46% = 8,426
'15년	8,426	○ 국가기술표준원 건물매각대 = 18,377(매각대금) X 46% = 8,426
'16년	-	○ -
'17년	-	○ -
'18년	-	○ -

※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 국유재산매각계약에 따라 2015년까지 징수완료 예정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토지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토지매각대	22,396	35,313	15,374	△ 19,939	△56.5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방이전 기관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매각대	-	-	-	-	-	-	-	-	22,396	19,652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35,313	○ 국가기술표준원 토지매각대 = 78,609(매각대금) X 44.91% = 35,313
'15년	15,374	○ 국가기술표준원 토지매각대 = 78,609(매각대금) X 20% = 15,374
'16년	-	○ -
'17년	-	○ -
'18년	-	○ -

※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 국유재산매각계약에 따라 2015년까지 징수완료 예정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없음

세 출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표준정책국	50,913	56,437	59,959	3,522	6.2
○국가표준활성화	4,260	4,740	4,212	△ 528	△ 11.1
○국제표준활동지원	2,000	2,148	2,642	494	23.0
○표준교육및이행확산	300	300	285	△ 15	-5.0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R&D)	42,620	47,571	50,805	3,234	6.8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64	812	1,216	404	49.8
○기술표준정책	869	866	799	△ 67	△ 7.7
<일반회계> ; 제품안전정책국	6,174	6,296	6,892	596	9.5
○안전제도기반조성	2,507	2,414	2,493	79	3.3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328	3,495	3,495	0	0.0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0	0	535	535	
○제품안전정책	339	387	369	△ 18	△ 4.7
<일반회계> ; 적합성정책국	4,629	5,770	7,308	1,538	26.7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555	2,072	1,968	△ 104	△ 5.0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99	443	1,282	839	189.4
○신기술제품인증	1,934	1,943	2,248	305	15.7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437	1,000	1,250	250	25.0
○적합성정책	304	312	560	248	79.5
<일반회계> ; 기술규제대응국	3,166	3,783	4,961	1,178	31.1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1,354	2,000	2,000	0	0.0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0	0	1,119	1,119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900	900	890	△ 10	△ 1.1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610	595	676	81	13.6
○기술규제대응	302	288	276	△ 12	△ 4.2
<일반회계> ; 지원총괄과	1,181	1,753	1,468	△ 285	△ 16.3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70	1,122	1,468	346	30.8
○국가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	11	631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9,013	1,122	1,468	△ 285	△ 16.3
○기술표준원	29,013	-	-	-	-
총계	95,076	74,039	80,588	6,549	8.8

국가표준활성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가표준활성화	4,260	4,740	4,212	528	11.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9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연구사(기현종, 043-870-534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WTO·FTA체계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해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추진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 다변화 등 新산업환경변화에 따른 민간 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여 KS개발·관리 업무 이양
- 국민편익,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국민행복가치중심의 표준화 확대 및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177백만원

-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주요 이슈별 표준화 정책개발, 전략 분야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표준정책연구
- 창조산업전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유망선도분야 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관점의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개발
- 최근 국제표준 및 기술발전추세에 따라, 기존 2만여종의 국가표준 정비(제정, 개정, 폐지 등) 추진

▪ 산출내역 : 47과제 × 46.3백만원¹ ≒ 2,177백만원

1. 46.3백만원 = 40백만원(평균용역비) + 6.3백만원(회의수당·세미나 등)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840백만원

- 분야별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시장수요에 따른 신속한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 수행

▪ 산출내역 : 57개 기관¹ × 32.3백만원² ≒ 1,840백만원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2. 지정분야 표준화 수요조사, 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 기술위원회 운영 등

③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195백만원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근절 및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

▪ 산출내역 : 130개 업체 × 1.5백만원¹ ≒ 195백만원

1. 1.5백만원 = 시료구입비, 시험수수료, 출장비 등 전체 평균 금액

□ 지원 필요성

- 최근 정책기조(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따른 표준화 지원 시급
 - 창조경제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국정과제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증액 필요
 - * 국정과제 : 「1-1-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신성장동력 표준선도)」
「1-1-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보건의료표준화)」
 - 부처 기술기준과 국가표준(KS)의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 해소를 위한 강제인증기준과 중복된 국가표준 정비 시급
 -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2-7 KS와 기술기준간 중복인증 일원화」
- 최근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정비 수요 증가
 - 국제표준 추세 및 新산업분야 표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 정비 확대, 전문가 회의 및 관련 표준연구개발 예산 필요
 - * 연도별 국가표준 종수 : ('80) 7,029 → ('90) 8,552 → ('00) 10,845 → ('13) 20,482
 - 국가표준은 제·개정 후 5년 주기로 업데이트 여부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어, 매년 최소 4천여종이상의 KS정비 수요 분석 필요
 - * 최근 국가표준 정비건수 : ('10) 1,456 → ('11) 1,571 → ('12) 2,362 → ('13) 4,854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국가표준화 요구 증대
 -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등 국민행복 가치중심의 표준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표준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필요
 - * 정부3.0 과제명 : 국민행복 표준화 국민참여 채널 다양화 및 표준활용 확산
- 불량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방지를 위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최근 사회적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 시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가표준활성화	4,260	4,740	4,212	△528	△11.1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	2,177	2,177	순증
▪ (표준화 정책연구)	900	750	-	△750	순감
▪ (표준부합화 개발정비)	1,600	2,150	-	△2,150	순감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760	1,840	1,840	-	-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	195	195	순증
☐ 비목	4,260	4,740	4,212	△528	△11.1
▪ 일반수용비(210-01)	45	62	32	30	△48.3
▪ 시험연구비(210-13)	653	659	541	118	△17.9
▪ 국내여비(220-01)	14	17	17	-	-
▪ 국외여비(220-02)	13	12	12	-	-
▪ 사업추진비(240-01)	51	50	50	-	-
▪ 연구개발비(260)	1,724	2,100	1,720	380	△18.0
▪ 출연금(350-01)	1,760	1,840	1,84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WTO체제하의 개방화시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추세를 반영한 국가표준 개발 및 정비 확대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의 다양화 등 新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표준개발협력 기관 제도 도입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성장산업·복지·사회적책임 등 시스템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책연구 16과제x46.8백만 ≒ 750백만원 표준개발·정비 46과제x38.3백만 ≒ 1,760백만원 표준개발협력기관 : 57개x 32.3백만 ≒ 1,840백만원
'15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47과제x46.3백만 ≒ 2,177백만원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x 32.3백만 ≒ 1,840백만원 KS시판품 조사 130개 업체 × 1.5백만원 ≒ 195백만원
'16	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42과제x46.3백만 ≒ 1,915백만원 표준개발협력기관 50개x 32.3백만 ≒ 1,619백만원 KS시판품 조사 115개 업체 × 1.5백만원 ≒ 173백만원
'17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44과제x46.3백만 ≒ 2,068백만원 표준개발협력기관 54개x 32.3백만 ≒ 1,748백만원 KS시판품 조사 123개 업체 × 1.5백만원 ≒ 184백만원
'18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38과제x46.3백만 ≒ 1,758백만원 표준개발협력기관 46개x 32.3백만 ≒ 1,486백만원 KS시판품 조사 104개 업체 × 1.5백만원 ≒ 156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등)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주재 국가표준심의회에서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확정)
- * 국가표준제도기반구축(국가표준 종합정비체계의 확립, 국가표준체계 혁신,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전개(성문표준의 세계화, 전략적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표준 활동강화) 등을 수립
-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
-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표준전문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명문화 규정
- 2007.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08.7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09.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0.6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 밀착형·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표준화 등
-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2.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인증기간 및 비용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추진 등

- *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2013.6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4.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가표준활성화	48	48.8	45.6	47.4	42.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 집행잔액 등 51백만원 불용
- '12년 : 집행잔액 등 40백만원 불용
- '13년 : 2건의 연구개발사업 일정지연으로 68백만원 이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32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8.0			48.0	47.5		0.5
	()	()	()	()	()	()	()
'12년	48.8			48.8	48.4		0.4
	()	()	()	()	()	()	()
'13년	45.6			45.6	42.6	0.7	2.3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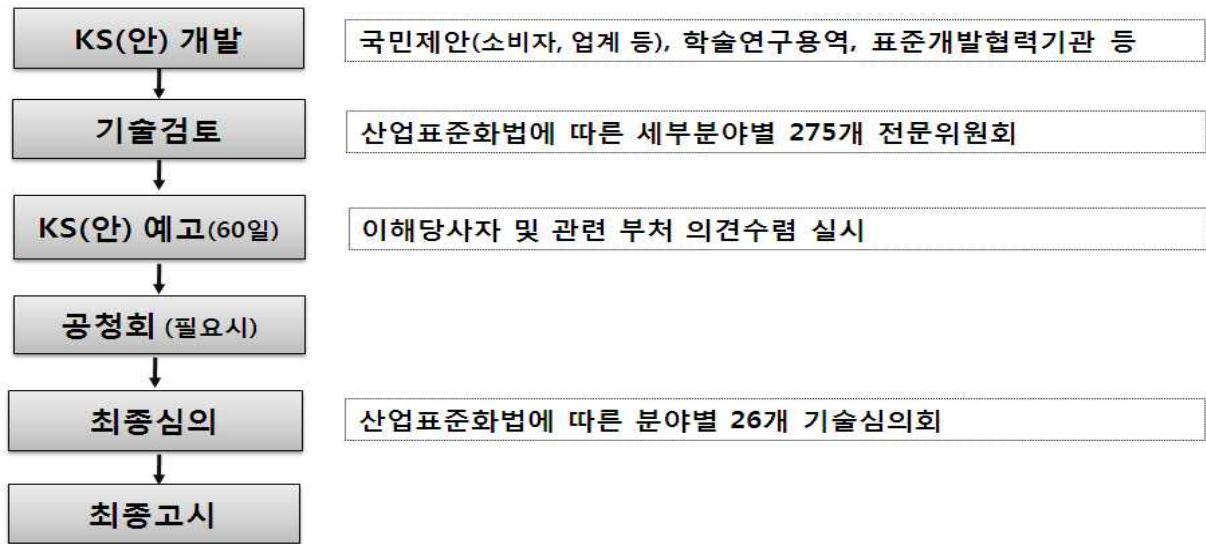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표준개발협력기관

항목	일 본	미 국
제도명	특정표준화기관 (CSB: Competent Standardization Body)	표준개발기관 (SDO :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관련법	공업표준화법 제12조	SDOAA: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 등
기관수	일본규격협회 등 3개 기관 지정 (원안작성단체 500여개)	250여개
절차	심의 간소화 추진	표준심의위원회에서 SDO개발 표준의 절차적 하자 심의

(5) 사업추진절차

○ 국가표준 정비 절차



○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지원 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 국민행복표준화 추진 개요

참고 2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개요

참고 3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개요

참고1 국민행복표준화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국가표준은 과거 산업육성중심으로 추진되어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으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요자중심의 표준 정책은 다소 미흡
 - * '62년 KS제도 도입하여 국제표준 등을 도입하여 산업계에 보급('13, 20,482종)
- 따라서,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가치 중심의 표준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추진 내용

- (과제 발굴) 생활 속 40개 국민행복 표준화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 지속적인 신규 과제도출을 위한 국민제안 접수채널 확대

< 국민행복표준 3대 분야 40개 과제 >

- ① **편안한 사회(13개)** : 층간소음방지, 노트북충전기호환, 가전제품(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평가, 건축단열소재 등 표준화로 편안한 국민생활에 기여
- ② **함께하는 사회(13개)** : 장애인용 전자책,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요구사항, 노인 요양원·복지관 서비스 등 표준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구현
- ③ **풍요로운 사회(14개)** : 레저·엔터테인먼트(영화, 스키장, 관광 등) 서비스, 차량 정비·보험서비스, 기능성의류 품질 등 표준화로 국민 삶의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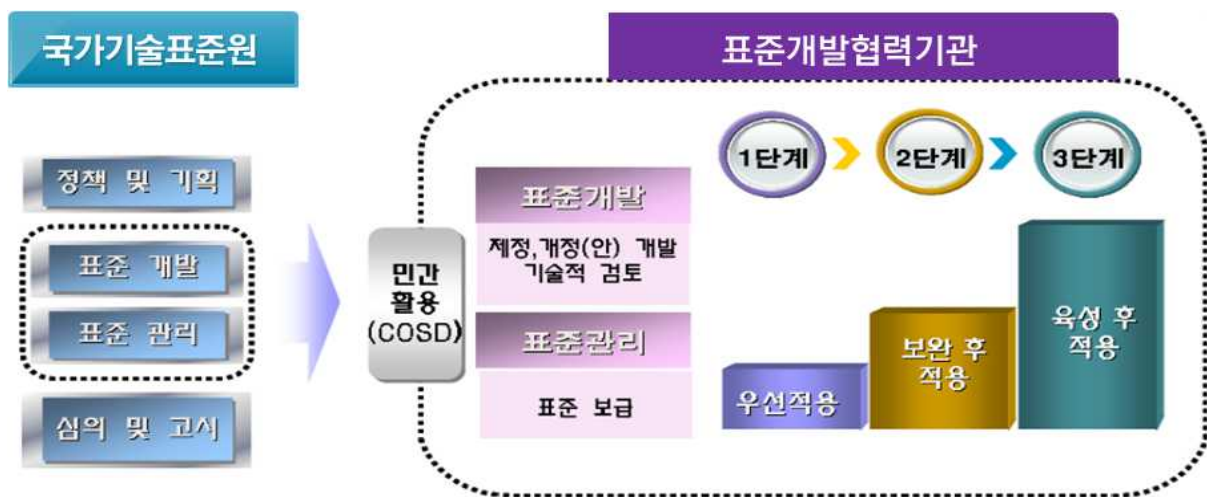
참고2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개요

□ 표준개발협력기관 역할 및 지정요건

○ 표준개발협력기관

- 국가표준중 민간이 관리 가능한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여 국가 표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 반영

* 국가표준 제·개정절차 중 표준개발·관리 등의 집행업무를 전문성 있는 분야별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3항,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이양업무 : 표준개발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을 COSD로 지정하고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업무 위탁

○ COSD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지정요건 :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가진 자발적 참여기관
- 정관 또는 직제규정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를 지정
-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운영

□ COSD 운영현황 (‘13년말 기준)

-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총 54개 기관
- 지정표준 : 전체 KS 20,482종 중 16,241종(79%) 관리 이양

참고3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시판품조사 개요

- 불량 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근절 및 소비자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시판품조사 실시

*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에 의거 시판품조사(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현장조사(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를 실시

※ 시판품조사 절차 : 계획수립 → 조사실시 → (필요시)행정처분 → 인증기관 개선 확인

□ '14년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수요

연번	품목명	조사 사유	조사업체수 (개)
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 확인 요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2	속빈 콘크리트 블록	품질 확인 요청 (서울특별시)	2
3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1
4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2
5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2
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7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
8	도자기질 타일		1
9	누전 차단기	품질불량 제품 유통	23
10	LED 조명기구	품질불량 언론 보도	4
11	배선용 비닐절연전선	품질관리단체의 품질 문제 제기	79
12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품질불량 제품 유통	26
13	일반방독면	안전사고 사전 예방	2
14	방독마스크		1
15	화재용 긴급대비마스크		1
16	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	품질불량 제품 유통	19
17	위생도기		33
18	복층유리		210
19	배선용 차단기		23
총계	19개 품목		437

국제 표준 활동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제표준활동지원	2,000	2,148	2,642	494	23.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국제표준과장(정기원, 043-870-5350), 연구관(김홍준, 043-870-5352), 연구사(서상헌, 043-870-546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주요국과의 표준협력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확대, 주요 국제표준화회의 국내유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 표준주도 세계교역에서 비관세 기술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표준에 우리나라 기술 이식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의 원천 표준인프라 확충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 국정과제 8번(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으로 수행 중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지원 : 581백만원

- 24회 × 15백만원 (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361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통역비 등 운영비 : 27회 × 약 3.7백만원 = 89백만원
- 주요국 표준(ASTM, ASME) 등 자료구입비 : 26백만원
- 국제간사업무용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20백만원
- 국제표준화활동업무지원 보조인력 활용비 : 14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지역표준화기구, 주요국가와의 국제표준협력 회의체 운영 등을 위한 경비 : 71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597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138회(지원대상자수) × 약 3.5백만원(1회 평균 출장여비) = 477백만원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 : 35회 × 약 3.5백만원(1회 평균 출장여비) = 120백만원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100백만원

- 3건 × 약 33.3백만원(1회 평균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65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29회 × 약4백만원 = 516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 × 2명 × 12월 = 60백만원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 7백만원 × 2회 = 14백만원
- 전략기획 등 국제의장·간사 지원 경비 : 60백만원

○ 2015년 ISO 총회 개최(민간보조) : 714백만원

- 회의장, 장비 등 임차료 : 20실 × 5일 × 2.86백만원 = 286백만원
- 행사홍보 : 10회 × 5백만원 = 50백만원
- 기업전시회 등 부대행사 : 6회 × 17.5백만원 = 105백만원

- 해외 VIP 초청 비용 : 7명 × 10백만원 = 70백만원
- 행사진행 인건비 : 130명 × 7일 × 약 0.15백만원 = 143백만원
- 장비 및 시설 임차 : 5일 × 7.2백만원 = 36백만원
- 회의자료 등 인쇄비 : 2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필요
 -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대응,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국제표준회의 국내유치, 양자·다자 국제표준협력 등 기술외교 지원확대가 절실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의 비전인 “2015년 세계 7위의 국제표준강국(상임이사국) 목표” 달성을 위해,
 - ▶ 국제표준화회의 임원(정책위임원,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필요
 -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확대 : ('10) 112명 ⇒ ('15) 200명
 - ▶ 또한, 우리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지원 확대 필요
 - *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0) 390건 ⇒ ('15) 800건
-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이 ISO/IEC 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중·일 중 우리나라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기술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제기
 - *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더 나아가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 중
 -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세부과제 3 (기술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
 - 단위과제 1 (우리 기술의 국가·국제표준화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제표준활동지원	2,000	2,148	2,642	494	23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548	648	581	△67	△10.3
▪ 국제표준화회의 및 주요국가(기구) 표준협력	702	620	597	△23	△3.7
▪ 국제표준화 선도정책 연구	-	100	100	-	-
▪ 국제의장·간사 활동 지원	750	750	650	△100	△13.3
▪ 2015년 ISO 총회 개최	-	-	714	714	순증
☐ 비목	2,000	2,148	2,642	494	23
▪ 인건비(110-03)	-	14	14	-	-
▪ 일반수용비(210-01)	70	136	115	△21	△15.4
▪ 임차료(210-07)	387	407	361	△46	△11.3
▪ 국외업무여비(220-02)	702	650	597	△53	△8.2
▪ 사업추진비(240-01)	73	71	71	-	-
▪ 연구개발비(260-00)	-	100	1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750	750	1,364	614	81.9
▪ 자산취득비(430-01)	17	20	2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예산의 충분한 확대지원으로 국제표준 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충실한 이행이 요구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한 비전인 “2018년 세계 7대 국제표준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표준화회의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 확대 : ('13) 140명 ⇒ ('18) 220명
 -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3) 563건 ⇒ ('18) 840건
 - 주요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확정: ('14) W3C(월드와이드웹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15)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 ('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632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07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59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15	2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77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81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20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650백만원 ▪ ISO총회 개최 : 714백만원
'16	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505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615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27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6백만원 ▪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688백만원
'17	1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80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84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21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654백만원
'18	1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55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55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15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96백만원 ▪ 국제 의장 간사 활동지원 : 621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 국가차원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 중요성의 지속적 증대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실적이 '02년에 24건에서 '13년 563(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제표준활동지원	19	18	21	22	27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 2011년 : 집행잔액(2백만원) 불용
- 2012년 : 집행잔액(1백만원) 불용
- 2013년 : 예산절감액(98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9.18			19.18	19.16		0.02
	()	()	()	()	()	()	()
'12년	17.98			17.98	17.97		0.01
	()	()	()	()	()	()	()
'13년	20.98			20.98	20.00		0.98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통상부(DTI)는 자국 표준화기구인 BSI의 표준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02년 6월엔 영국 정부(DTI)와 BSI간의 MoU 체결을 통해 이를 명문화함 (4.3조 4항)

* 국제회의경비지원(AITS, Assisted International Travel Scheme, 1982년 시작)

- 일본은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연구개발 · 표준화 전략방안('08.7월 공표)」을 수립하여, 정부예산으로 표준전문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활동 참가경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
- 미국은 「표준우산(Standard umbrella)」정책으로 APEC국가의 결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제 의장간사 진출에 총력을 기울임
- EU는 뉴어프로치 정책으로 표준을 경제사회 통합 수단으로 활용, 특히 독일은 실용적인 표준화 정책을 통해 세계 2위 기술수출국으로 도약
- 중국도 표준정책을 10대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추진('07)하고,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自主创新 보고서'에서 자주적 표준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

(5) 사업추진절차

【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 ① 기술표준원내 각 국별 내부수요조사 및 외부기관/개인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 수요조사(전년 12월)
- 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지원내역 각과 통보(1월)
-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2월-익년 1월)

【 보조금 수행 】

- ① 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 조문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1. 국제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활동

구분	직책	구 성	위 원	임 기	담당과
ISO (163개국)	Council(이사회) 위원	20개국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14~'16	국제표준
	TMB(기술관리이사회) 위원	14개국	정기원 국가기술표준원 과장	'09~'14	국제표준
IEC (82개국)	CB(이사회) 위원	15개국	최갑홍 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12~'14	국제표준
	SMB(표준화관리이사회)위원	15개국	신명재 한국표준학회 부회장	'09~'14	국제표준
	CAB(적합성평가이사회)위원	12개국	오광해 국가기술표준원 IEC과장	'12~'14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13~'15	시험인증
	MSB(시장전략이사회) 위원	13개국	이용로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삼성디스플레이 김학선 전무	'12~'14	국제표준

2. 국제기구 기타위원회 위원 활동

구 분	분 야	구 성	위 원	임기	담당과
IEC	SMB/ACTAD(전기 송배전)	18명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주) 대표	'05~'15	전자정보
			심응보 한전전력연구원 수석	'11~'15	전자정보
	SMB/ACEA(환경자문위원회)	11명	이화조 영남대 교수	'14~	전자정보
	SMB/SG 7(로봇기술 응용)	8명	임성수 경희대학교 교수	'13~	전자정보
	SMB/SG 8(스마트 제조)	8명	홍승호 한양대학교 교수 권대현 LS산전 책임	'14~	전자정보
	CAB/WG 16(CA의 시스템레벨)	14명	이용로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11~	시험인증
	CAB/IECQ		장영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14~	시험인증

구분	분 야	구 성	위 원	임기	담당과
ISO	TMB/CCCC(기후변화조정위원회)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14~	에너지
	COPOLCO/TG 3(위조제품) 컨비너		박현호 용인대 교수	'13~	문화

3. ISO/IEC 기술위원회(TC/SC) 가입현황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718	229	489	547	180	367	155	45	110	702	225	447	76.2%
IEC*	187	111	76	131	68	63	32	24	8	163	92	71	70.1%
합계	905	340	565	678	248	430	187	69	118	865	317	548	74.9%

* IEC/TC 100소속 14개 TA는 포함

4.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진출현황

구 분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계	15명	23명	116명	154명
ISO	14명	19명*	87명	120명
IEC	1명*	4명*	29명	34명

* ISO WG 간사 총 6명 불포함

** IEC TA의장 1명, TA간사 2명 총 3명 불포함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SO	의장	12	13	16	16	13	13	14	14
	간사	11	11	12	14	15	17	17	17
	컨비너	18	25	37	46	56	59	67	79
IEC	의장	1	1	2	3	3	3*	2*	1*
	간사	4	4	4	4	4	5*	5*	4*
	컨비너	7	9	10	12	16	17	19	25
합계	의장	13	14	18	19	16	16	16	15
	간사	15	15	16	18	19	22	22	21
	컨비너	25	34	47	58	72	76	86	104
	소계	53	63	81	95	107	114	124	140

5.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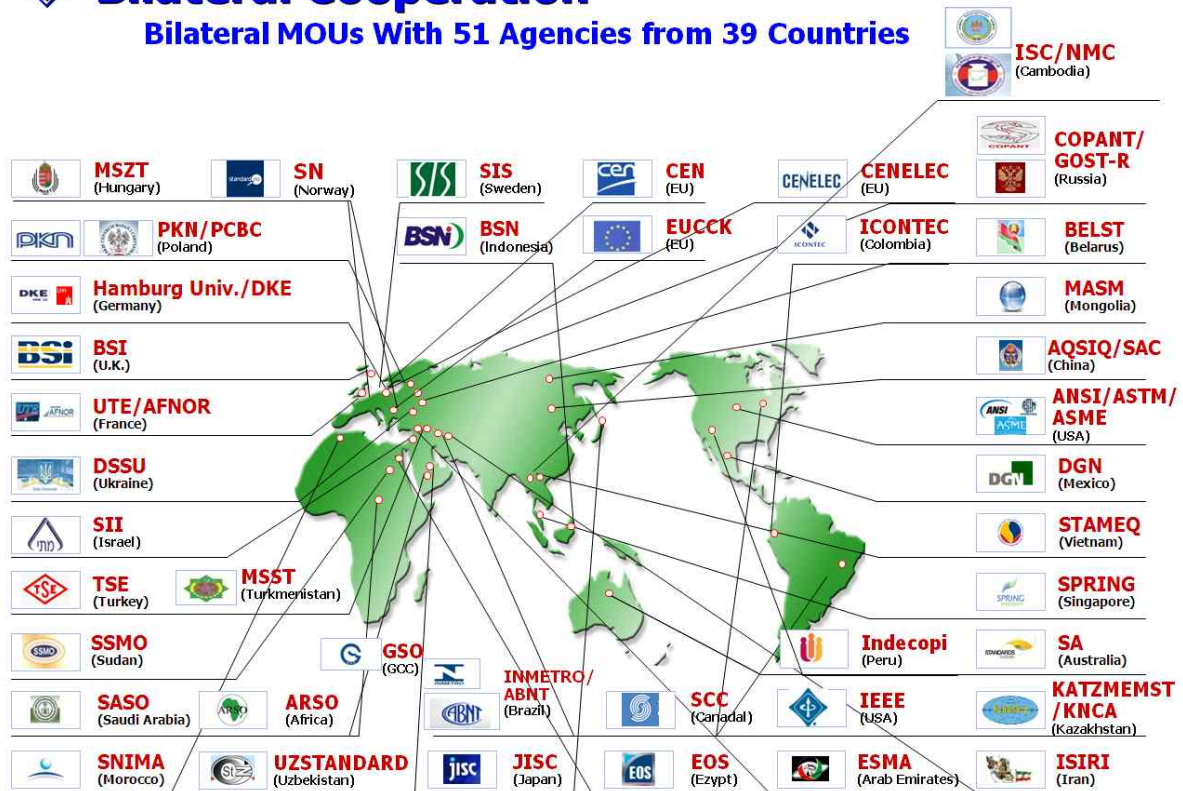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ISO 제안	19	7	12	22	39	51	51	48	44	42	43	42
IEC 제안	5	2	8	5	6	10	12	30	19	18	15	11
제안실적	24	9	20	27	45	61	63	78	63	60	58	55
누적 합계	24	33	53	80	125	186	249	327	390	450	508	563

6. 표준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현황 (39개국 51개 기관)



Bilateral Cooperation

Bilateral MOUs With 51 Agencies from 39 Countries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계속)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300	300	285	△ 15	△5.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6 - 301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국제표준과장(정기원, 043-870-5350), 연구사(임미희, 043-870-535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표준교육을 통한 전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생활속 표준 활용 · 확산을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 활성화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표준주간 운영 및 표준확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55백만원

- 산출내역: 55백만원(세계 표준의 날 운영) × 1회/년 = 55백만원

* '14년 표준화 관계자 및 유공자 400여명 참석

- ② 청소년 표준올림픽아드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 산출내역: 예선·본선대회 운영비 66백만원

과제개발비, 심사위원회 운영, 홍보 등 34백만원

③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연구학교 지원을 위한 130백만원

- 산출내역: 10백만원(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x 10개 학교 = 100백만원
교재개발, 교사연수, 운영보고회 등 = 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표준은 의·식·주는 물론 사회적 약속, 안전, 환경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민 대상 표준교육이 필요
- WTO/FTA 체제하에서 표준은 국제무역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할 차세대 전문가양성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300	300	285	△ 15	△5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70	70	55	△ 15	△21.4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	100	100	-	-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130	130	130	-	-
□ 비목	300	300	285	△ 15	△5
▪ 일반수용비(210-01)	257	70	55	△ 15	△21.4
▪ 임차료(210-07)	43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230	23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참가국 수 확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의 공조를 통한 국제대회로 격상, 기존 중·고등부 운영에 초등부를 추가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회 규모 확대

* '14년 말레이시아(2개팀)와 인도네시아(2개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우리나라가 시범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향후 정식 국제대회로의 가능성 검진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지원을 현재 10개교에서 2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여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확대

* 전국의 초등학교 수(5,800여개)대비 정부의 표준화교육 지원은 미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7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5	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5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6	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1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00백만원
'17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1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2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00백만원
'18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8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일상생활 및 국제무역에서 표준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표준교육을 통한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및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3년 신규사업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표준교육 및 이행확산	-	-	3.00	3.00	2.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교육

- (ISO) 표준교육 운영 우수 대학 시상, 표준교육 개도국 대상 지역워크숍 개최, 제네바 표준교육 대학원 과정 지원

* '14년도 발간을 목표로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중

- (CEN)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ESTI) 표준교육 작업반 운영

○ 미국의 표준화 교육

- 국립기술표준원(NIST)를 중심으로 표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표준교육 실시

○ 중국의 표준화 교육

- 국제환경 요인에 충족하는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 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표준교육을 강화

* (초·중·고) 표준과 표준화의 개념, 표준의 종류, 표준개발 절차, 국제표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표준화 활용 장점 등을 교육

○ 일본의 초등생 표준화 교육

- 경제산업성에서는 실생활과 사회에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강의
 - * (초) 일상생활의 표준사례, 표준의 기능, 그림문자를 사용한 의사소통
 - * (중) 표준 및 표준화의 개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사례, 미래의 표준화
 - * (고) 표준개요, 일본의 표준, 표준화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 각국의 활동

○ 영국의 청소년 표준화 교육

- 초중고 표준화 교육을 국가 교과과정으로 운영
 - * 영국 교육부에서는 7-11세, 11-14세/14-19세를 구분하여 표준화교육 실시
- 영국표준화기구(BSI)는 '08년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표준화 체험기회 제공
 - * 학생이 표준화 주제 선정·계획, 주최측의 심사 후 우수자에게 시상

(5) 사업추진절차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세계 표준의 날)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과제 개발 ▶ 대회 홍보 ▶ 예선대회 개최 ▶ 본선대회 개최 ▶ 결과 시상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 연구학교 지정 ▶ 교사 W/S ▶ 연구학교 운영 ▶ 중간평가 실시
 - ▶ 운영보고회 개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42,620	47,571	50,805	3,234	6.8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5 - 301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국제표준과장(정기원, 043-870-5350), 연구관(조영돈, 043-870-53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정부출연(일부 내역사업은 25%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2.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표준화 및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 기반조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산업 선진화 지원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 견인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평가기준 개발 등 기반조성을 통한 안전한 제품의 개발 보급과 국민의 생활 안전 확보
- 글로벌 협업, 국제적인 안전 규제 강화 등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新품질 경영기법 개발·보급 및 글로벌 품질경영 기반조성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 연구, 정책과제 (국가R&D, 실증사업 등) 표준화 조율·지원 등을 통한 국가표준 경쟁력 강화

- IT·SW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 조작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표준 조기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 및 국내 계량·측정산업의 선진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의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기반조성, 사회적 약자 및 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정비 등 표준R&D 지원
 ('14년 : 22,620백만원 → '15년 : 24,095백만원, '14년 대비 1,475백만원 증액)
 - 복합 표준화 등 미래 신성장분야 등 신규과제 지원 : 12,175백만원
 - 수출전략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 등 계속과제 지원 : 11,920백만원
-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무역상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확대토록 인프라구축, 시험평가 장비 국산화와 첨단시험장비구축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14년 : 10,856백만원 → '15년 : 13,300백만원, '14년 대비 2,444백만원 증액)
 - 국제시험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시험장비 구축 등 : 12,300백만원
 - 산화 개발 수요분야 평가장비 개발·활용 : 800백만원
 -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지원 : 200백만원
-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 취약 생활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 등 기반조성 과제 지원
 ('14년 : 3,945백만원 → '15년 : 4,260백만원, '14년 대비 315백만원 증액)
 -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안전 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과제 지원 : 2,960백만원
 - 제품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방법 개발 등 기반조성과제 지원 : 1,300백만원
-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품질취약 개선 및 고품질 확보 의지를 가진 기업을 선정, 제조단계별 품질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품질기술 개발
 ('14년 : 2,000백만원 → '15년 : 1,500백만원, '14년 대비 500백만원 감액)
 - 품질취약 기업의 품질개선 기술개발 : 1,500백만원

-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
(‘14년 : 2,400백만원 → ‘15년 : 2,250백만원, ‘14년 대비 150백만원 감액)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 81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활용 모델 기획 및 개발 : 85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90백만원
-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 연구, 국책과제(국가R&D, 실증사업 등) 표준화 조율·지원, 국내 기업 표준화 자문 등 수행
(‘14년 : 3,200백만원 → ‘15년 : 2,000백만원, ‘14년 대비 1,200백만원 감액)
- 표준기반 R&D 기획, 표준프레임워크 및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 개발, 국가 표준화 및 국제 표준협력 전략 수립 : 1,300백만원
 - 국책과제 표준화 조율 및 표준과제 발굴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구성·운영 : 200백만원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 500백만원
-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14년 : 1,450백만원 → ‘15년 : 2,000백만원, ‘14년 대비 550백만원 증액)
- 계량·측정기기 SW불법조작방지 및 성능향상, IT융합 계량·측정 기술 개발 : 1,350백만원
 - 계량·측정기기 평가기반 구축 : 650백만원
- ⑧ (기획평가관리비)
- (‘14년 : 1,100백만원 → ‘15년 : 1,400백만원, ‘14년 대비 300백만원 증액)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7개 사업의 신규·계속과제 평가, 분석, 관리 등 : 1,4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래 新산업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기존 주력산업 및 기술선도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 인증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표준 개발·정비 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등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지원 및 범부처 기술기준과 국가표준 연계 추진
- 중소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확보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주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표준화 참여 활성화 유도(향후 30% 수준으로 확대 추진)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각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제품의 시험인증수요가 증대하였고, 국제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등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여 동등성을 갖추어야 가능
 - * WTO 이후 TBT 장벽은 도리어 강화추세('95년 365건 → '13년 1,626건)
- 제조수준은 선진국 대비 동등 수준의 역량을 갖춘 반면, 시험인증역량은 74.5%('13년) 수준으로 선진국과의 갭이 상당히 존재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린카 등 신수요 분야 지원이 필요
 - *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시험장비 미 구축시 수출용 시험성적서를 외국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시험부담(비용/기간), 신기술 유출 등의 사례도 발생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은 인증 등 규제를 통한 제품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제품사고·위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
- 안전취약제품 원인 해소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과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 품질취약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기준 미달 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 * KC 제품조사 기준미달('13년) : 417건(불량율 9%)
 - * KS 제품심사 기준미달('13년) : 280건(불량율 7.7%)
-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수준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60~80% 수준으로 선진 품질비교평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가 품질경쟁력 제고 필요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 참조표준데이터의 체계적 DB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보건·환경 분야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지원 필요
 - * 연간 100억원이 투입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723.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96.6억원, 고용창출효과 1,683.7명의 산업파급효과 발생 (참조표준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보고서 (날리지웍스, 2009))
 - * 한국인 게놈 참조표준 개발-“포스트 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R&D 사업”(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2012)
- ‘14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중인 43개 DB의 사장 방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산업지원체 맞춤형 보급 강화
 - *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고속 충돌 물성은 삼성전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6개사 유료회원 가입완료
 - * 산업체 맞춤형 인체참조표준 활용 패키지는 아이오테크놀로지, (주) 더아이엄씨 등 6개사 판매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DB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보건·환경분야의 참조표준 DB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생태계 창조형 R&D 견인) 융·복합 촉진에 따른 미래유망산업은 상호운용성(표준)이 필수적으로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화 가능
 - * 각 국 정부 및 기업은 국제표준화가 적용된 시스템 및 제품의 구입을 희망
- (R&D 효율성 제고) 국가표준코디네이터(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제적 표준기반 R&D를 기획하고 정부 R&D의 효율성을 제고
 - *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12.8, 총리 주관 12개 부처 합동)에서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역할 명시
- (추진 분야 확대) 산업원천 14대 전략분야 등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R&D를 추진할 분야는 150여개로 이중 우선 20여개의 분야에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 미래성장산업으로 예측되는 분야 중 현재 7개 분야를 선정·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진분야를 최소 10개 이상으로 확대가 요구됨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소비자 권익보호) 최근 고유가 및 난방비 증가로 불법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조작 방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계량·측정기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
 - IT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기의 조작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기반마련이 필요
- (무역수지 개선) FTA등 글로벌 경제체제 심화로 무역적자폭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
 - * 국내 계량·측정기기 무역규모는 '11년 기준 126억달러(약 13조원)로 이중 수입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48억달러(약 5조원)로 매년 증가 추세
- (중소기업 육성) 계량·측정산업은 기술집약적인 분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술적 창업효과가 큰 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5년 정도 뒤쳐져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이 시급
 - * 국내 계량·측정기기 산업규모는 제조업 총매출액(1,464조원)의 0.69%, 총 고용인력의 1.3%를 차지하나,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87%를 차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42,620	47,571	50,805	3,234	6.8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700	22,620	24,095	1,475	6.5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 기반구축	9,670	10,856	13,300	2,444	22.5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945	3,945	4,260	315	8.0
▪ 품질혁신기반구축	2,805	2,000	1,500	△500	△25.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2,000	2,400	2,250	△150	△6.3
▪ 국가표준코드데이터	3,500	3,200	2,000	△1,200	△37.5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1,450	2,000	550	37.9
▪ 기획평가관리비	-	1,100	1,400	300	27.3
☐ 비목	42,620	47,571	50,805	3,234	6.8
▪ 출연금(350-01)	42,620	47,571	50,805	3,234	6.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미래성장동력, 융·복합 산업 등 우리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 표준 개발, 표준기반조성 및 중소중견 기업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중복 인증 해소 등 국내에 특화된 국가표준 개발 등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
- 국제공인 인정기관 확보 및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를 위해 고난도·신수요 시험장비 구축, 고가 시험평가장비 개발 및 시험분석방법의 원천기술개발 등 시험인증역량 확보로 무역상 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수출기업을 지원
- 국민의 제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품의 다양화 및 융·복합화로 인한 위해(危害)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안전기술 및 기준을 개발·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과 국민 생활안전 확보
- 중소기업품질경쟁력이 글로벌 선진기업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하고, KC, KS 등 국가품질 기준미달 제품이 10% 내·외 수준으로 품질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안전안심사회 구축 및 미래성장동력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참조표준데이터 센터 구축
- 융·복합에 기초한 미래성장산업의 원천 기술표준 개발에 대한 효율성 및 산업화율 향상을 위해 정부 및 기업 R&D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 연구 수행
- 공공 상거래 질서 훼손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작 방지 기술개발 및 측정값 신뢰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한 계량측정 기술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여 국민 권익 보호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7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26.2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 능력기반구축 : 108.56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39.45 ▪ 품질혁신기반구축 : 20.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4.0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2.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14.5 ▪ 기획평가관리비 : 11.0
'15	5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0.95 ▪ 국제상호정시험평가 능력기반구축 : 133.0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2.6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20.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0 ▪ 기획평가관리비 : 14.0
'16	5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0.95 ▪ 국제상호정시험평가 능력기반구축 : 133.0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2.6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20.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0 ▪ 기획평가관리비 : 14.0
'17	5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0.95 ▪ 국제상호정시험평가 능력기반구축 : 133.0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2.6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20.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0 ▪ 기획평가관리비 : 14.0
'18	50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0.95 ▪ 국제상호정시험평가 능력기반구축 : 133.0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42.6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0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20.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0 ▪ 기획평가관리비 : 14.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및 동법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6월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2월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 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 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8.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85	225	207	226.2	240.95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 「MRA사업」 1차년도 추진(49억원)
 - 現 '12년(10차) 사업을 추진중(75.34억원), '11년(9차)까지 556억원 투입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 제24차 경제정책 조정회의 의결
- '10.9월 :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 「FTA시대 국가 R&D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국제 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90	75.3	96.7	108.5	133.0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09.4월 :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사업비지원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5	31	39.5	39.5	42.6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 지원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품질경영 실태조사 실시('04.7 ~ 8, 18개 부문 181개 항목)
- 품질경영 기본계획 수립('05.3.4)
- '06년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정부예산(일반회계) 15억원) 신설
- '08.2월 :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직제개정)
- '08.10월 : '10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에서 분리
- '10년 : '기술이전사업화촉진'에서 분리하여 신규 예산 확보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0년 :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11~'1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품질혁신기반구축	20	19	28	20	15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 국가참조표준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 '06.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 참조표준의 제정·보급을 위한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데이터센터지정, 참조데이터 평가 및 참조표준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06.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06년~'10년 : 연구소, 대학, 시험기관 등 21개 데이터센터 지정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신규사업
- '12년 : 24개 데이터센터 지정 21개 데이터센터 운영
- '13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24개 데이터센터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개발·보급	5	10	20	24	225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 관리),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추진경위

- '10.4월 : “국책과제 표준 코디네이터」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0.12월 : 국가표준심의회 “선진인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수립”
- '11년 : 40억원(기술료)으로 시범 사업 실시

- '12년 : 25억원(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으로 2차년도 사업 실시
- '13년 : 35억원(R&D)으로 3차년도 사업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	35	32	20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4.5월 공포)
- 국정과제 1-7(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과 부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	14.5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35				335		
	(335)	()	()	()	(335)	()	()
'12년	360				360		
	(360)	()	()	()	(360)	()	()
'13년	426				426		
	(426)	()	()	()	(42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국

- '00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03년 상무부, 8개 항의 표준화 전략(Standard Initiative) 발표
- '08년 융합기술 연구개발(나노, 생명과학 재료, 기술 등)에 14.5억달러 투자

○ 일본

- '01년 표준화 활동의 성과보급을 위해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발족
- '03년 “신시대 표준,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표준화전략 등을 추진
- '07년 경제성장전략 대강 중 국제표준화 전략 목표 수립 및 추진
- '08년 5월 발표한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저감 기술을 선정 및 로드맵 작성·추진

○ EU

- '03년 EU 표준화기구의 2010 Vision(단일표준을 통한 무역촉진) 추진키로 하고 EU 각료이사회를 통해 표준화활동 지원 결의
- '06~'09년 기술융합개발 프로젝트 “Knowledge NBIC Project” 추진
- '07~'13년 범유럽 차원에서 추진하는 FP7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확대 및 학제간 연구개발 추진 강화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산업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험업무 위임 시 정부 예산지원

- 미국의 경우,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를 제정하여, 민간시험기관에게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및 시험분석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

- 또한,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ndards Laboratory)라는 거대 조직을 구축하여 시험분석 전문인력양성 강화
 - 적합성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을 9개 이상 설립하여 전문교육 실시
- 글로벌
 - 글로벌 시장교류 확대 및 각국의 시험·인증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 인증시장이 최근 5년간 급성장 추세('07년 76조원 -> '11년 132조원)로 국내시장방어 및 글로벌 시장 참여필요
 - * 주요국 시험인증산업 GDP내 비중 : 독일(0.52%), 프랑스(0.32%), 한국(0.19%)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내·외에서도 정부주도로 제품안전에 필요한 정부자금을 지원 하도록 법제화
 - (국내)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 (국외) 제조업 단체의 제품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美 소비자제품안전법 섹션 5)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 미국
 - NIST(美 국가기술표준원)를 통해 각종 품질혁신활동 기반 구축
 - * '87년 미국국가품질상(MBNQA)를 제정, 80년대 美 국가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진단된 '품질 약화' 해결을 위한 국가적 기반 마련
 - ASQ(미국품질협회)를 중심으로 품질경영 확산의 필요성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
- EU
 - 유럽 14개국 국가품질조직의 지원은 받는 DRQM(유럽품질재단)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전파
 - * '92년 유럽품질상(EQA)을 제정, 품질혁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시상

○ 중국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을 설립, 제품 품질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등 독자적 품질혁신 노력을 강화
- * 제1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국과학기술부 지원을 통해 '13년 유럽 품질대회에 29명이 참석하는 등 각종 국제품질컨퍼런스에 최대인원 파견

○ 독일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7대 과제에 품질혁신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제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제 위기 돌파
- * '06년 중소기업 육성 7대 과제 : 품질혁신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자금조달 기회 확대, 행정규제 개선, 창업 및 융자 지원, 해외판로 확보

○ 대만

-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능력 및 기술 향상을 위해 정부 주도의 품질 관련 기술개발 및 자문서비스 제공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보급

○ 미국

- '68년 '참조표준법(Standard Reference Act)'제정
- 미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참조표준사업 주도
- 7개 연구부서의 측정과학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참조표준 개발
- 38개 분야 172개 참조표준 DB 개발 및 보급
- NIST에서 개발한 참조표준은 약 1,800개 기관에서 활용, 개인 컴퓨터용 제품(PC Product)은 매년 약 6,000개가 판매되고 있음.
- NIST와 미항공우주국(NASA)이 공동개발한 물질의 분광학 데이터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연간 약 40억원 판매)

○ 일본

- '76년 통산산업성이 참조데이터 사업 본격 추진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산하의 61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DB(RIO-DB) 구축 및 보급

- AIST 산하 첨단정보계산센터(TACC)에서 연구개발 DB 구축 및 운영
- 생명과학, IT, 나노/재료, 환경/에너지, 지구과학, 측정표준 등의 분야에서 94개 DB 개발 및 보급
- 독일
 - '74년 '참조표준진흥사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 연방재료시험연구원(BAM), 연방물리기술청(PTB)를 중심으로 화학, 재료, 표준물질 등 5개 DB 구축 및 운영
 - 민간차원의 데이터 개발 및 보급
 - 화공생명기술학회(DECHEMA)는 순수성분 및 혼합물 열역학물성에 관한 세계 최고의 DB인 DETHERM(Thermophysical Property DB) 개발 및 유료 판매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미국
 - '90년 NIST(미국표준기술원)의 주도로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고려하는 첨단기술계획보조금 프로그램(ATP)을 시행
 - * 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
 - '10년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 표준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R&D 연계 표준개발을 통합 조정
 - 국립과학재단(NSF),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등 R&D 전문기관들은 효율적 국가 예산운영을 위해 PD(Program Director) 제도를 도입·시행
- EU
 - (EU) '85년부터 에너지, 나노 등 7대 산업분야의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하여 범유럽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인 'EUREKA' 도입
 - * EUREKA를 통해 공동개발된 기술은 자체가 유럽표준으로 정립(예: GSM 통신기술)
 - (독일) 독일연구협회(DFG)는 R&D의 효율화를 위하여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제 운영
- 일본

- '00년 '국가산업기술전략'을 수립하여 기술의 활용·보급을 위해, R&D 추진시 표준화와의 연계성, 추진목표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일본학술진흥회는 R&D의 효율화를 위하여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제 운영
- 한국
 - '03년 정통부는 IT R&D의 성공률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민간 기술전문가가 기획·관리하는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
 - '09년 한국은 유럽시장을 고려한 R&D-표준 연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EUREKA'에 준회원국(지정부)으로 가입
 - '09년 지경부는 미래선도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후 상용화 단계까지 책임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인 MD(Managing Director)·PD 제도 도입
 - '09년 문화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위한 5단계 기술혁신 체계 (과제기획-선정-수행관리-평가-활용) 수행을 위해 문화기술PD 제도 도입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실태조사) 독일, 네덜란드 및 일본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계량·측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등의 복합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 기반산업으로 인식
 -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모든 산업 현장에 필수적 기기로 인식
 - 산업의 고도화에 맞춰 자동화와 연계된 계측시스템으로 전환
 -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실태조사 사례 없음
- (기업특성) 국제적 계량·측정 기업은 계측기기가 기술집약적, 소품종이 주류를 이루는 특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전시장의 65%를 차지
 - 국내 계량·측정기는 제품별 3,000억원 이하의 시장구조로서 대기업의 참여 없이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다국적기업 : Agilent Technology(미국), Fluke Cooperation(미국), Rohde & Schwarz(독일)
 - * 국내 측정기 기업은 중소기업(87%) 및 중견기업(13%)으로 대기업 부재
- (무역규모) 국제 계측시장은 EU가 41.5%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선진국은 평균 10%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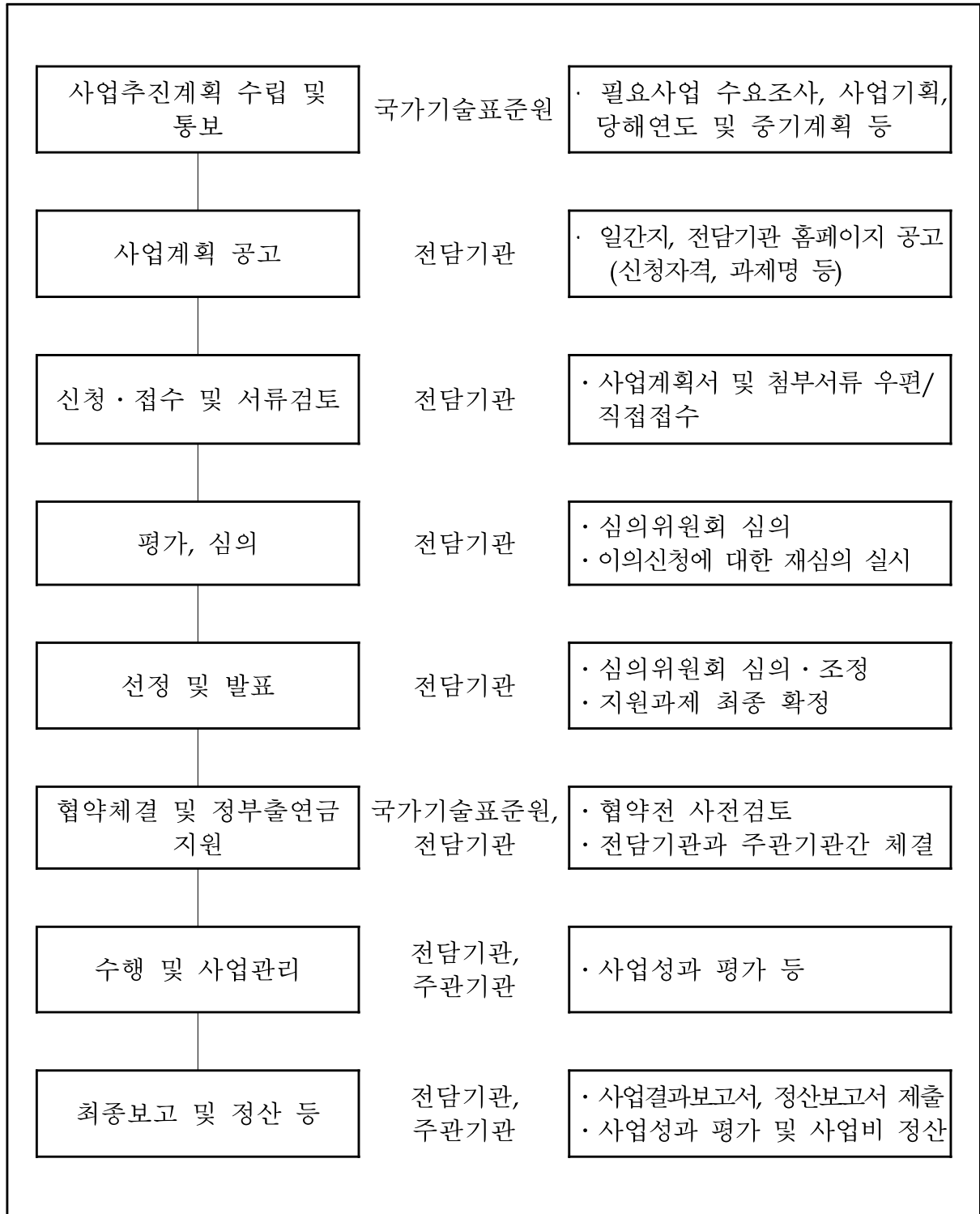
- * EU는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41.5%(177,518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14.7%의 성장률을 나타냄
- * 중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6.2%(112,185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22.7%의 최고성장률을 나타냄
- * 미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1.5%(92,141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6.4%의 성장률을 나타냄
- (산업육성전략) 세계 1, 2위의 미국과 일본의 산업육성 체계는
 - 미국은 연방정부의 담당부처별로 지원하나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의 국가주도로 산업 지원
 - 미국은 연구비의 90%이상을 공모에 의해 지원하고, 일본은 기기개발과 요소 기술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
 - * 국내는 계량·측정기기에 대한 부처별 규제만 있을뿐,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검정장비 현황) 독일 등 대다수의 OECD는 국제표준(OIML)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의 검사기법, 설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는 턱없이 부족
 - *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기법, 설비 등이 없이 일부 계량기에 대한 시험·인증만 가능 (예 가스미터(1,000m³/H 이하), 수도미터(350mm이하) 등 다수)
 - * 저울의 경우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OIML MAA) 대상 품목이어서 외국에 별도 시험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검사기법 및 설비 등이 없어 대형 저울 등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는 불가능
- (신기술 계량기 개발) 미국, 일본 등 계량분야 리딩 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차세대 지능형 IT 융·복합 계량·측정기 개발 등을 집중 지원
 - * 미국(NIST) : 지능형 전력량계 개발지원, 혈당측정기 개발지원 등
 - * 일본(NMIJ) : 질량 교정 기술개발(밀도 측정방법 등) 지원 등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IT를 융합한 계량기(지능형전력량계, 전기차충전기 등)의 기술기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5) 사업추진절차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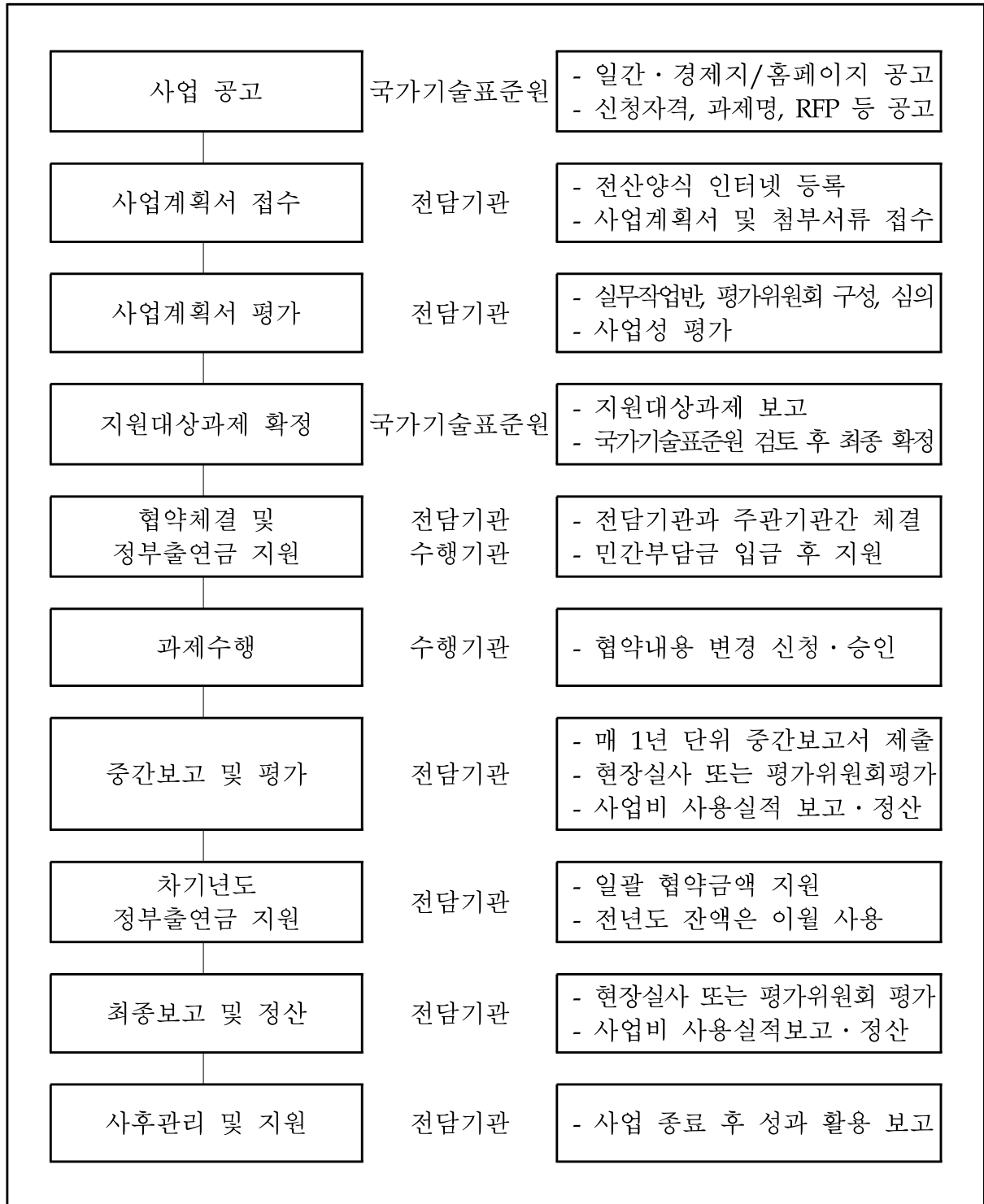
②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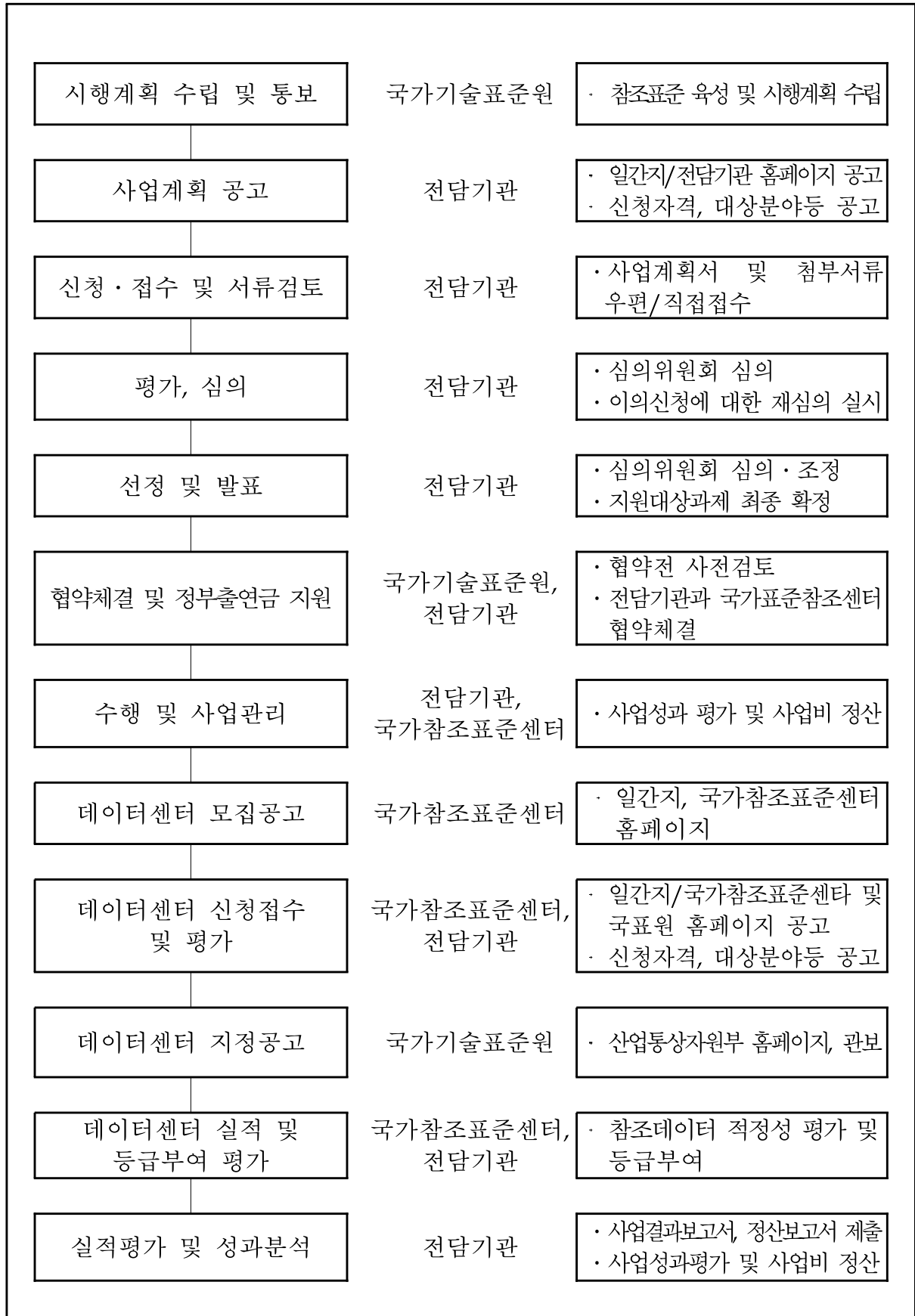
③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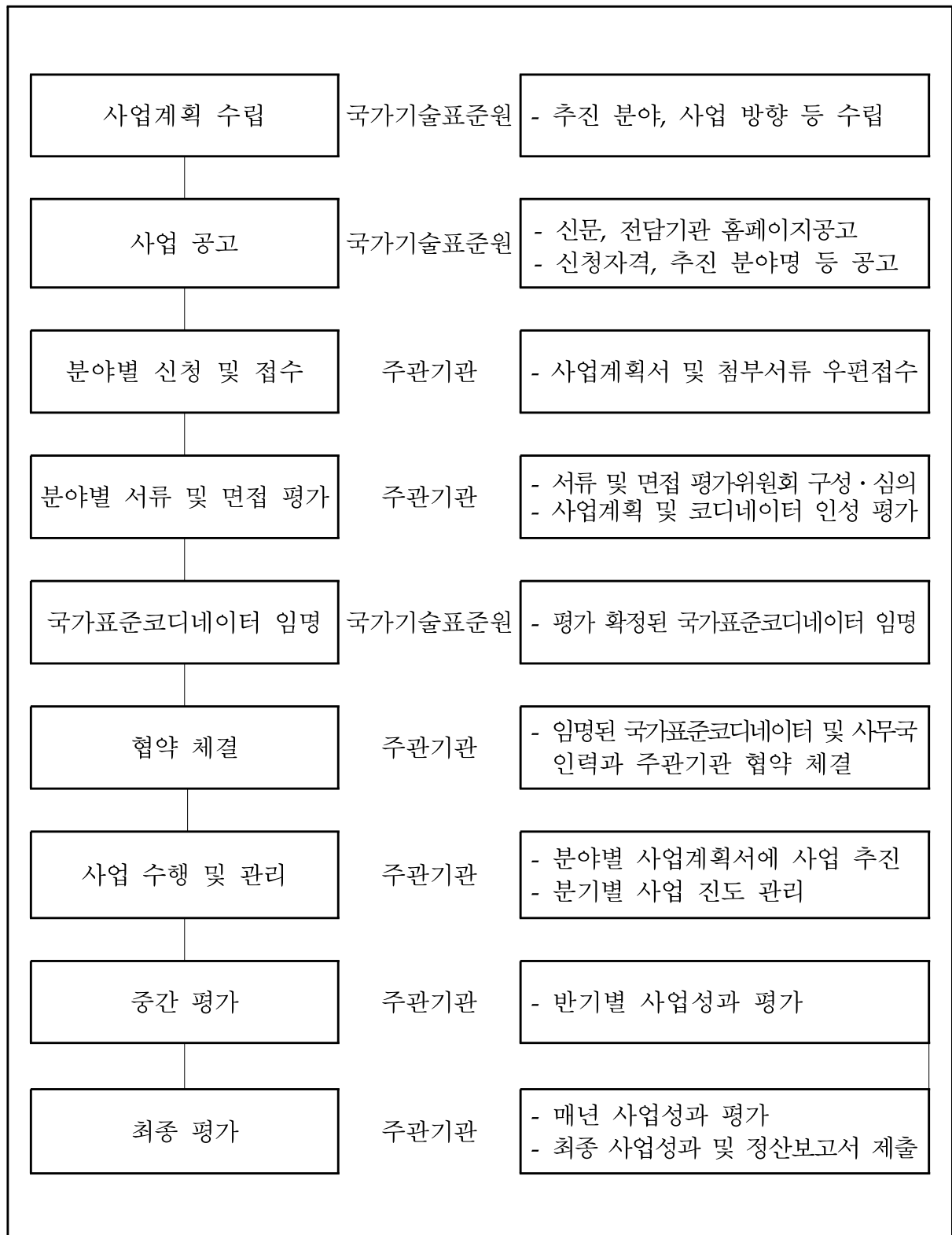
④ 품질혁신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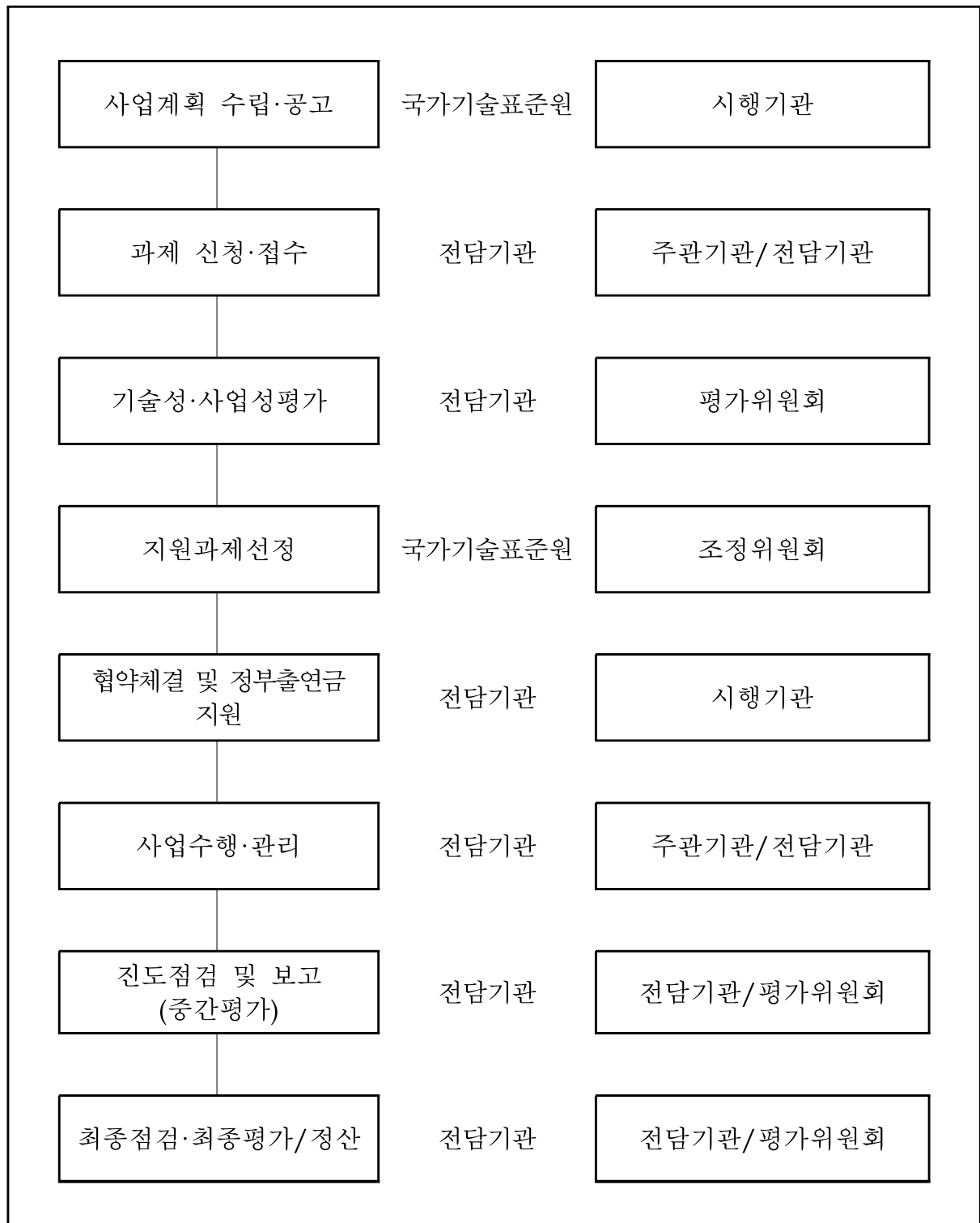
⑤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보급



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⑦ 계량·측정기술고도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해당사항

한국인인체 치수 조사보급(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64	812	1,216	404	49.8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4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문화서비스표준과장(장혁조, 043-870-5390), 사무관(김윤근, 043-870-539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업의 인간공학적 제품설계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활용사업에 반영하고, 국제규격 제안 및 인체 정보가 반영된 KS규격의 제정·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인체치수 및 형상 측정조사 : 인체 친화적 제품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정보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사업 (927 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연구원 등 25명) 359백만원 + 측정경비 568백만원

- ②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 : 한국인체치수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체 친화적 제품설계에 필요한 인체표준형상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인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계가 기술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지원하는 사업 (289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연구원 등 20명) 170백만원 + 개발경비 11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국의 신체 변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인체관련 정보의 업데이트 필요
 - OECD Social Indicators('09년 5월)에 따르면 2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20대의 평균키는 남자는 6cm, 여자는 4cm 커진 것으로 조사됨
 - 식생활 및 생활 습관의 변화로 한국인의 체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에 정밀한 분석을 통한 인체 정보 제공 필요
- 전 산업에 걸쳐 활용 가능한 3차원 인체형상자료의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은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사업이므로 국가의 지원 필요
 -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자료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국민의 산업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 사용제품의 인체정보 활용과 인체정보의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체정보 보급사업의 확대가 필요

-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자 복지 기반 확보를 위한 고령자 인체치수 및 체형조사 시급
- 생산제품에 대하여 인체정보의 활용은 필요하나 활용능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이나 사업화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인체치수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체정보 DB를 통하여 인체정보표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적합한 최신의 인체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64	812	1216	404	49.8
▪ 인체치수 및 형상 측정조사사업	737	622	927	305	49
▪ 인체정보 보급사업	126	190	289	99	52.1
☐ 비목	864	812	1,216	404	49.8
▪ 시험연구비(210-13)	14	10	45	35	350
▪ 사업추진비(204-01)	4	5	4	△1	△20
▪ 연구개발비(260-00)	845	797	1,167	370	46.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인에 대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 기능 및 품질수준의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12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6.2 ○ 인체정보보급사업: 1.9
'15	12.16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927 ○ 인체정보보급사업: 289
'16	7.71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5.71 ○ 인체정보보급사업: 2.0
'17	7.32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5.32 ○ 인체정보보급사업: 2.0
'18	6.95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4.95 ○ 인체정보보급사업: 2.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통계법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 통계법시행령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추진경위

- '79년부터 : 의류 치수 제·개정을 위해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사업 수행
- '00년부터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정보 등 새롭고 다양한 인체 치수 자료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

- '03~'04년 :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
- '05년 : 한국인 인체정보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 정보에 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 '05년 이후 : 장애인에 대한 인체치수 측정 등 과거 측정사업에서 측정하지 못한 분야를 측정사업 지속 추진 및 한국인 인체정보의 산업계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 실시
- '10~'13년 : 제6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는 인체치수(7~69세의 남녀 14,016명 대상 136개 항목의 인체치수와 20~39세의 남녀 848명 대상 156개 항목)과 3차원 인체형상(연령대별 1,200여명, 156개 항목)에 대한 인체정보 DB 구축하고 3D 표준인체형상(연령대별)을 개발 및 보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5.5	5.2	9.5	8.12	12.1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2백만원)
- 2012년
 - 불용 : 낙찰 차액 및 경상경비 절감(20백만원)
 - 이월 : 계약체결 지연(28백만원)
- 2012년 : 낙찰 차액 및 경상경비 절감(115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2	-	-	5.5	5.48	-	0.02
	()	()	()	()	()	()	()
'12년	5.2	-	-	5.2	4.72	0.28	0.2
	()	()	()	()	()	()	()
'13년	9.5	0.28	-	9.78	8.64	-	1.15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 국

- '65년 이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였으나 내 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자료 미공개
- '03~'04년 TC²(Textile Clothing Technology Cooperation)에서 자체 적으로 개발한 3차원스캐너를 통해 240개 항목에 대해 인체측정

○ 프랑스

- '03~'04년 IFTH(The French Textile and Clothing Habillement)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60개 항목에 대해 인체 측정
- 측정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Raw Data를 보급하고 그 외의 기업에는 가공하여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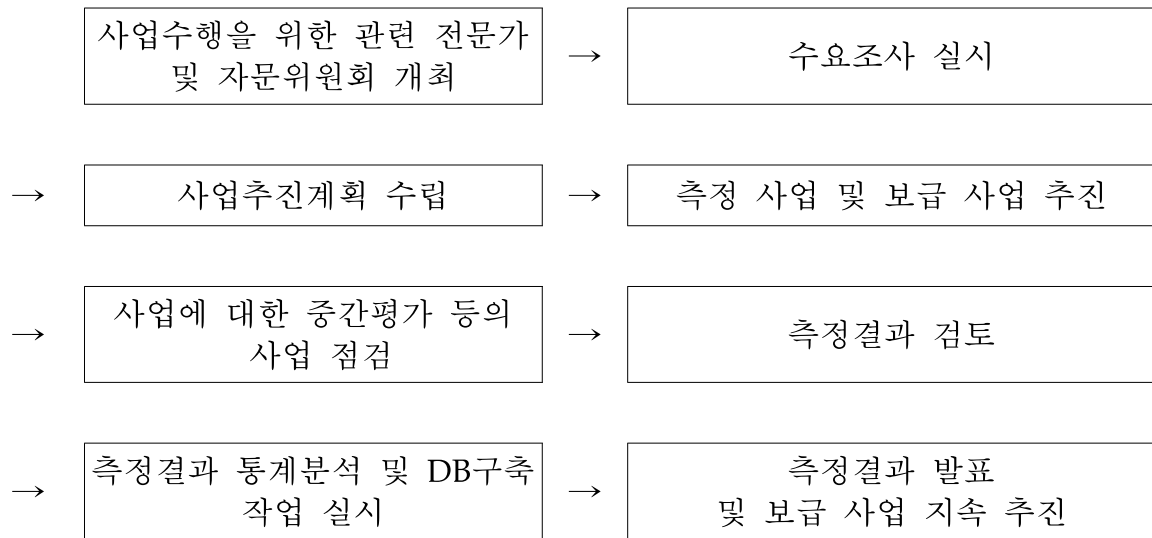
○ 영 국

- '02~'05년 3차원스캐너 업체를 중심으로 영국정부와 기업들이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3차원측정과 직접측정을 통해 140개 항목을 측정
- 측정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Raw Data를 보급하고 그 외의 기업에는 가공하여 판매

○ 일 본

- '04~'07년 HQL(Research Institute of Human Engineering of Quality life)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3차원측정, 직접측정 등 215항목 측정
- 측정된 자료는 일본산업규격(JIS)에 반영하고 HQL를 통해 Raw Data 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
- HQL을 통해 인체치수 외에 감성, 감각, 행동 등 인간과 관련된 데이터 를 측정하여 DB를 구축하려고 함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기술표준정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술표준정책	869	866	799	△67	△7.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연구사(기현중, 043-870-534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국가표준선진화전략, 국제표준협력방안 등 기술표준정책분야 연구개발
-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개발한 우수부서 포상
-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회원 부담금 납부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술표준정책분야 학술연구용역 : 5백만원

- 표준화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 동향 조사·분석 수행

▪ 산출내역 : 5백만원(학술연구용역비) × 1과제 = 5백만

② 지식관리 포상금 운영 : 5백만원

-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 산출내역 : 1백만 × 5과(우수부서) = 5백만원

③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 부담금 : 789백만원

- ISO, IEC 등 10개 표준관련 국제기구 회원국 부담금 납부

▪ 산출내역 : ISO 등 10개 기구 회원국 부담금 = 약 789만원

<최근 3년간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기 구 명	'11년 집행액	'12년 집행액	'13년 집행액
ISO(국제표준화기구)	573	597	579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211	168	153
IECQ(국제전자부품품질인증위원회)	6	6	6
IECEX(국제방폭전기기기인증위원회)	4	4	3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위원회)	8	8	7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15	16	16
APLAC(아·태 시험기관인정협력체)	18	18	18
PAC(태평양인정협력체)	4	5	7
APLMF(아·태 법정계량포럼)	10	5	-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4	5	8
합 계	850	834	797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표준선진화전략, 국제표준협력방안 등 기술표준정책분야의 지속적인 정책연구개발이 필요
- 국가산업발전 및 글로벌표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표준업무 관련 부서 포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역량 강화 유도
-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국정과제 8번)를 위하여,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 부담금 납부는 필수적인 사항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기술표준정책	869	866	799	△67	△7.7
▪ 기술표준정책 연구과제	69	80	5	△75	△93.7
▪ 지식관리 포상금 운영	3	5	5	-	-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	797	781	789	8	△1.0
☐ 비목	869	866	799	△67	△7.7
▪ 연구개발비(260-00)	69	80	5	△75	△93.7
▪ 보전금(310-03)	3	5	5	-	-
▪ 해외이전(340-02)	797	781	789	8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최신 산업환경변화 및 국제표준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기술표준 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국제부담금 확대 등 국제 표준협업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 2개×40백만 = 80백만원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781백만원
'15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 : 1개×5백만 = 5백만원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789백만원
'16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698백만원
'17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754백만원
'18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64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수립
 - 2012. 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3.6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4.3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술표준정책	8	9	9.1	8.7	8.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기술표준원기본경비(7118-251-210), 기술표준정책국기본경비(7118-253-210) 261백만원 전용,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으로 3백만원 불용
- '12년 :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기술표준원 기본경비(7118-251-420), 기술표준정책국 기본경비(7118-253-210) 등에서 180백만원 전용, 용역 수행기관의 자진해지요청으로 45백만원 불용

- '13년 :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표준정책 (7134-302-260)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2034-401-210)으로 8백만원 전용, 예산절감액 및 국제 부담금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으로 37백만원 불용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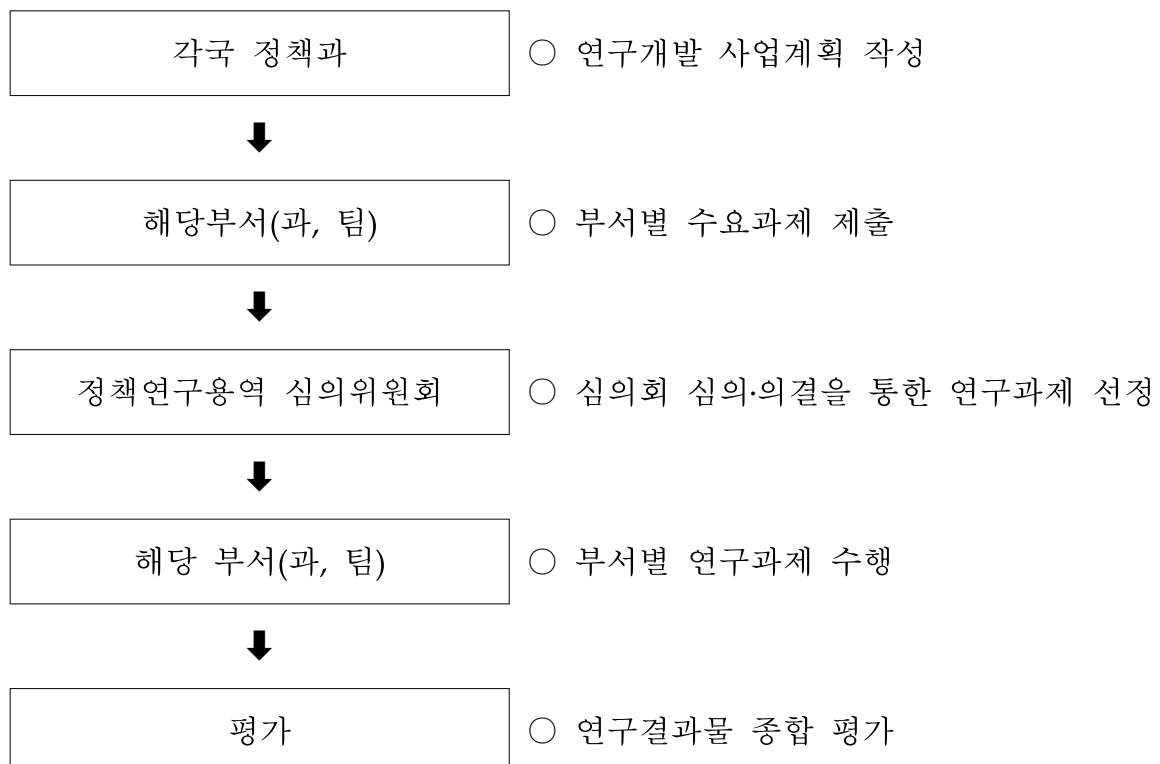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7.95		261	1,056	1,053		0.03
	()	()	()	()	()	()	()
'12년	8.09		1.80	9.89	9.44		0.45
	()	()	()	()	()	()	()
'13년	9.14		△0.08	9.06	8.69		0.37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안전제 도기 반조성(계 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안전제도기반조성	2,507	2,414	2,493	79	3.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4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안전정책과장(박형건, 043-870-5410), 연구관(남하옥, 043-870-541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호서대안전성평가센터

2. 사업목적

- 시장변화에 따른 제품 안전기준 개발·보급, 국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 및 기반구축
- WTO·FTA 체결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련 국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의 개발 및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자율적 제품안전관리제도 정착
- 제품안전 보급·확산 사업을 통한 사업자의 자발리콜 분위기 조성 등 제품안전분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마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 개발 : 700백만원

- 제품안전기준 제·개정 : 500백만원 (50종×10백만원)
- 제품안전정책개발, 조사, 분석 실시 : 200백만원(4종×50백만원)

②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 1,093백만원

- 제품안전 의식개선 교육·홍보·포상행사 : 700백만원

-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500백만원
-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00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100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46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16점)

-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지자체 협력 : 393백만원

- * 제품안전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ICPSC, ICPHSO 등) 참석 등 협력 : 193백만원
- * 지자체와 불법·불량 제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및 안전 홍보 자료 제작·배포 등 : 200백만원
(정보수집체계 구축 : 1식 x 100백만원 = 100백만원, 안전 홍보 자료 제작 : 20종 x 5백만원 = 100백만원)

③ 제품안전 「정책·정보 안내 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제품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기준전산화 유지보수 : 100백만원

- * 제품사고, 리콜, 인증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안전기준 개정 이력 관리 등
- 정책·정보제공을 응용 프로그램 교체 등 보강 : 100백만원
- * 제품사고, 위해사례 등 수집·관리 프로그램 보강 등

④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방법 전파: 500백만원

- 어린이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5종 x 100백만원 = 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시장현황) 제품 융·복합화, 유통시장 다변화로 제품안전관련 위해사례* 및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관련 안전사고**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제품사고 위해사례(건) : ('11) 19,219 → ('12) 22,716 → ('13) 24,464 ('11년 대비 27.3% ↑)

** 어린이 위해사례 접수(건) : ('11) 20,732 → ('12) 22,907 → ('13) 24,312 ('11년 대비 17.3 ↑)

○ (안전기준 정비) 제품 안전기준 운영을 통한 사전 인증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사항

-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을 위하여 주요국 안전기준 제·개정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융·복합화, 다양화 되는 제품의 특성 파악 및 이를 통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 現, 전기용품 693종, 생활용품 110종 등 전체 803종의 안전기준 운영 중

* 13년 실적 : (전기용품) 형광램프 대체용 호환형 LED 램프, 전기오븐 등 10건 제·개정, (공산품) 실내용 바닥재, 생활화학가정용품 독성 정보 및 사용제한물질 추가 지정 등 23건 제·개정

○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 소비자·기업의 선제적인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품안전 의식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 및 포상 필요

- 제품안전 의식개선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기업의 안전의식 향상 도모

* 홍보,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은 가장 강력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효과

* 14년 지상파 광고 후 콜센터 접수건수 54%, 제품안전포털 방문자수 49.8% 증가

➡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정비, 안전정책개발 및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을 추진하는 “안전제도 기반조성”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안전제도기반조성	2,507	2,414	2,493	79	3.3
▪ 신종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신속 조치제도 운영	1,053	-	-	-	-
▪ 제품안전 보급확산 및 국제협력	412	1,014	1,093	79	7.8
▪ 공산·전기용품 안전기준 정비 및 제품 안전 정책개발	342	600	700	100	16.7
▪ 제품안전 정책정보 관리시스템(2종) 운영	-	300	200	△100	△33.3
▪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700	500	500	-	-
□ 비목	2,507	2,414	2,493	79	3.3
▪ 일반수용비(210-01)	104	247	333	86	34.8
▪ 임차료(210-07)	11	20	20	-	-
▪ 재료비(210-11)	-	50	50	-	-
▪ 시험연구비(210-13)	862	-	-	-	-
▪ 위탁사업비(210-15)	-	100	100	-	-
▪ 국내여비(220-01)	11	16	16	-	-
▪ 국외여비(220-02)	17	57	50	△7	△12.3
▪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	-
▪ 연구개발비(260-00)	477	600	600	-	-
▪ 민간경상보조(320-01)	1,000	1,100	1,200	100	9.1
▪ 자산취득비(430-01)	-	200	100	△100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제품안전 기준 제·개정, 제품안전 정책개발을 통한 국민안전 사고 예방 및 소비자·기업 안전관리 능력 제고로 국제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국제안전기준과 국내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사업을 확대하여 안전사회 기반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14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3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15	2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93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16	2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94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300백만원
'17	2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270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300백만원
'18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6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14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2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안전제도기반조성	22.5	22.2	26.6	24.2	2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홍보예산 절감(10백만원) 및 용역과제 잔액 반납(1백만원)
- 2012년 : 여비(39만원), 일반수용비(34만원) 등 집행잔액 불용(1백만원)
- 2013년 :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불용액 발생(155백만원)

* 운용비(72백만원), 여비(7백만원), 연구개발비(74백만원), 업무추진비(2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2.48			22.48	22.37		0.11
	()	()	()	()	()	()	()
'12년	22.16			22.16	22.15		0.01
	()	()	()	()	()	()	()
'13년	26.62			26.62	25.07		1.55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1년 국회 지경위 결산(정지은 입법조사관)

- 안전제도혁신기반구축사업(3732-304)의 ‘제품위해성평가 및 신속 조치제도’와 공산품안전망 구축사업(3732-303)의 ‘유통제품 안전성조사’는 사업목적 및 수행방식 등에서 차이가 없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의 통합운영·내역사업 조정 등 사업개편의 필요성 존재
- 이에, 본 사업은 제품안전정책국 內 두사업(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간 뚜렷한 사업의 차별성 및 제품안전 정책의 효과적 집행·추진을 위해, '14년 예산요청시 사업명 변경 및 두 사업간 내역사업을 조정 추진

☞ (사업명 변경) 공산품안전망구축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3732-303), 안전제도혁신기반조성 → 안전제도기반조성(3732-304)

☞ (내역사업 조정)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은 불법·불량제품 조사 단속 업무로, ‘안전제도기반조성’은 제품안전 정책개발, 기준정비, 국제협력, 제품안전관리시스템운영 등 종합적 제품안전 기반조성 중심으로 개편·유사성 해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 ▶ 취약계층지원(Minority Outreach) 캠페인 및 사고정보의 신속한 전달
- ▶ 웹 환경에 맞는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CPSC 2.0 구축

- 다인종 밀집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후원)하에 전시회와 축제 등을 개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언론사나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정보제공
-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CPSC 2.0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정보제공 및 블로그, 유튜브, 위젯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나노기술 분야에서의 신기술 및 유해성평가는 미국의 기술표준원(NIST)와 성능평가 및 잠재적 위험요소의 분석의뢰

< EU >

▶ The Consumer Scoreboard 및 RAPEX annual report의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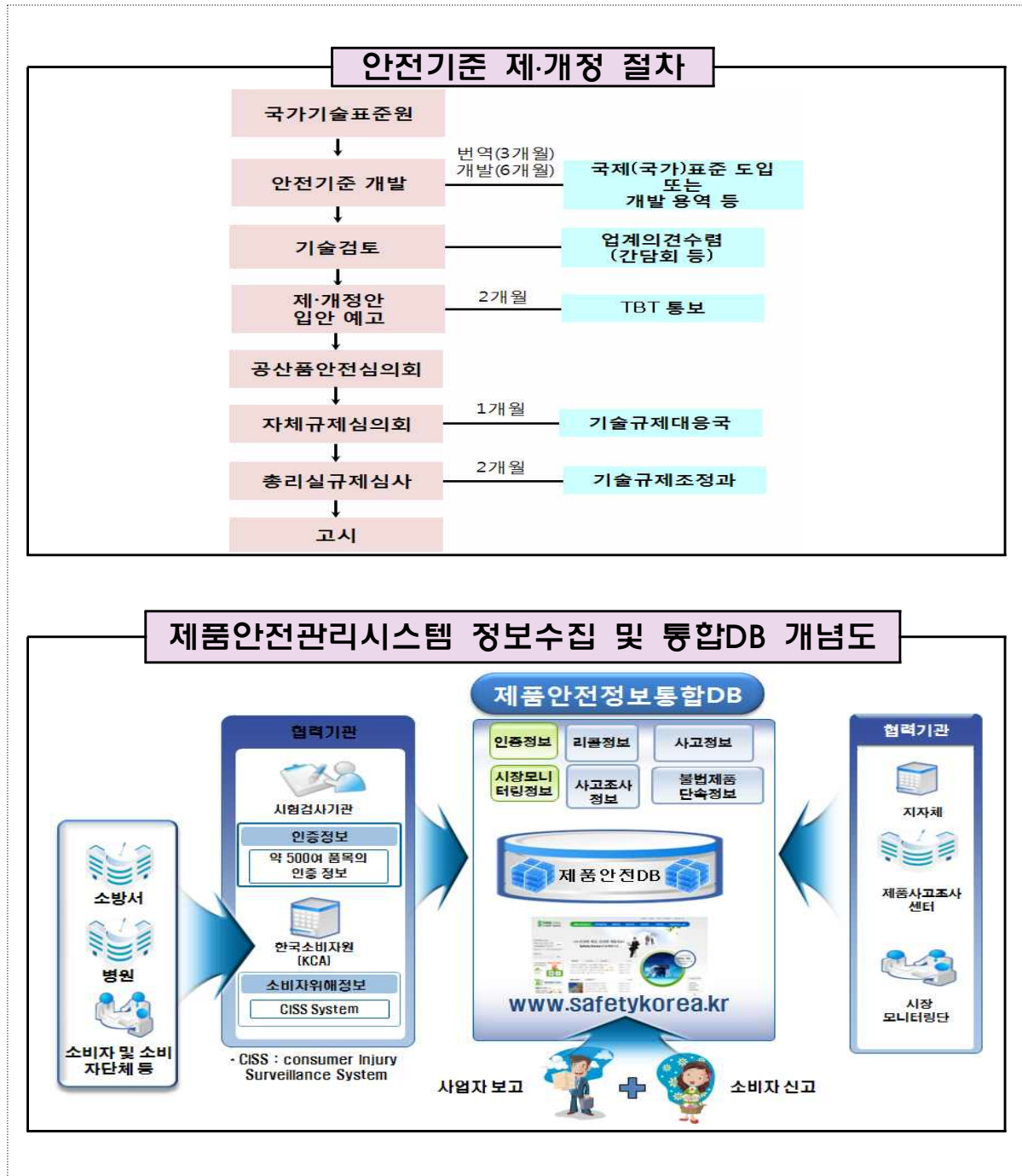
- E-News를 통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으며, Health and Consumer Voice Newsletter를 통해 식품안전·소비자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
- 「Your rights a consumer」 책자를 발행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리며 매년 정기적으로 European Commission을 개최(Open door day)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컨퍼런스를 진행

< 일본 >

- ▶ 제품안전강좌 개설 및 다양한 교육·홍보 책자 발간
- ▶ 제품안전 우수대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운영
- ▶ 제품안전점검의날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품안전 문화정착 추진

- NITE는 주부연합회, NPO법인 간사이 소비자 연합회 등과 공동 참여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무료강좌 개설
- 제품안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제품안전대책 우량기업'으로 표창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및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운영
- 제품안전점검의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의 의의,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보급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통해 제품안전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추진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제 품 시장 감 시 역 량 강 화 (계 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328	3,495	3,495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3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시장관리과장(전민영, 043-870-5420), 사무관(김석무, 043-870-54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2. 사업목적

- 생활제품의 안전한 시장관리를 통해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 차단을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생활 환경조성
- 생활제품이 국민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 제품(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정성조사,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안전모니터링 등을 실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515백만원

-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정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부적합제품에 대하여 제품 수거 등의 명령 또는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

- 시중 유통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 2,515백만원
 - (산출내역) 시료구입비 $5,121\text{건} \times 10\text{만원} = 512\text{백만원}$
 시험수수료 $5,121\text{건} \times 35\text{만원} = 1,792\text{백만원}$
 일반수용비 = 100백만원
 국내(22백만원) 및 국외(59백만원) 여비 = 81백만원
 업무추진비 = 30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 불법·불량제품(KC 미인증제품 등) 조사 및 고발, 리콜이행점검 및 불이행시 고발 실시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고발조치 : 53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 $15\text{명} \times 30\text{백만원} = 450\text{백만원}$
 출장비 $160\text{회} \times 10\text{명} \times 50\text{천원} = 80\text{백만원}$
 - 리콜이행점검 실시(회수율, 공표현황 등 점검) : 7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 $2\text{명} \times 30\text{백만원} = 60\text{백만원}$
 출장비 $100\text{회} \times 2\text{명} \times 50\text{천원} = 10\text{백만원}$

③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380백만원

-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 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조치 대상 제품의 시장 유통여부를 감시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
 - (산출내역) 4개분야* $\times 20\text{백만원} = 80\text{백만원}$
 * 어린이용품,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전기용품 등 4개 분야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
 - (산출내역) 1개분야 $\times 40\text{백만원} = 40\text{백만원}$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
 - (산출내역) 제품안전감시원 $186\text{명} \times 28\text{일} \times 50\text{천원} = 260\text{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및 융·복합 신제품 출시 등 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위해 사례 지속 증가 등 제품안전성조사 수요증가

* 위해건수 : '10) 15,795건 → '11) 19,219건 → '12) 22,716건 → '13) 23,173건

- 사전 인증품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품 출시後 시장감시를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동시에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확대, 안전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시장사후관리기능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328	3,495	3,495	-	-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497	2,515	2,515	-	-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450	600	600	-	-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290	380	380	-	-
▪ 제품안전정보망 운영지원	91	-	-	-	-
□ 비목(합계)	3,328	3,495	3,495	-	-
▪ 일반수용비(210-01)	60	-	-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	-	-	-
▪ 시험연구비(210-13)	2,262	2,485	2,485	-	-
▪ 위탁사업비(210-15)	338	380	380	-	-
▪ 국내여비(220-01)	10	-	-	-	-
▪ 국외업무여비(220-02)	37	-	-	-	-
▪ 사업추진비(240-01)	27	30	30	-	-
▪ 연구개발비(260-00)	100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450	600	600	-	-
▪ 자산취득비(430-01)	43	-	-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품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시켜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에 노력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15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60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380백만원
'15	3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15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60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380백만원
'16	30.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214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528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334백만원
'17	3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392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57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360백만원
'18	2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044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48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3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4조(안전인증 등)
 -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3조(안전인증)
 -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1.5	20.7	34.7	34.9	3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집행잔액 3백만원
- 2012년 : 집행잔액 5백만원
- 2013년 : 집행잔액 144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21.54			21.54	21.51		0.03
	()	()	()	()	()	()	()
'12년	20.70			20.70	20.65		0.05
	()	()	()	()	()	()	()
'13년	34.72			34.72	33.28		1.44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NEISS*, 웹포털 등으로부터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 분류 및 리콜조치

* 상해정보수집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0여개 종합병원으로부터 CPSC 웹을 통해 매년 약 36만건 보고

-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관에서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수입제품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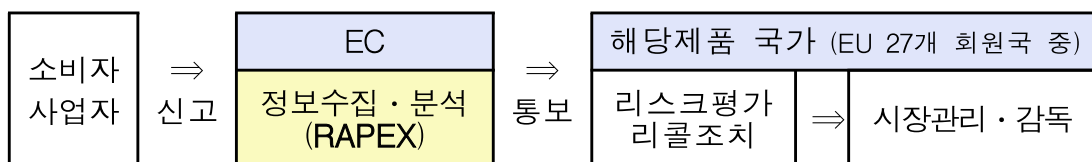
* 어린이 제품과 관련한 2011년 예산이 약 1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400억 원)로 2008년 대비 200% 증가

- (EU) Rapex*를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평가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제품별 상세한 안전기준을 통해 사전 규제의 강도가 높고 광범위한 사후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리콜 조치

- 회원국들은 '리스크평가기법'을 활용해 통보된 위해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 등 시장감시활동 이행

* 위해정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을 활용하여 수집·분석된 정보의 약 90%가 리콜조치됨

<EU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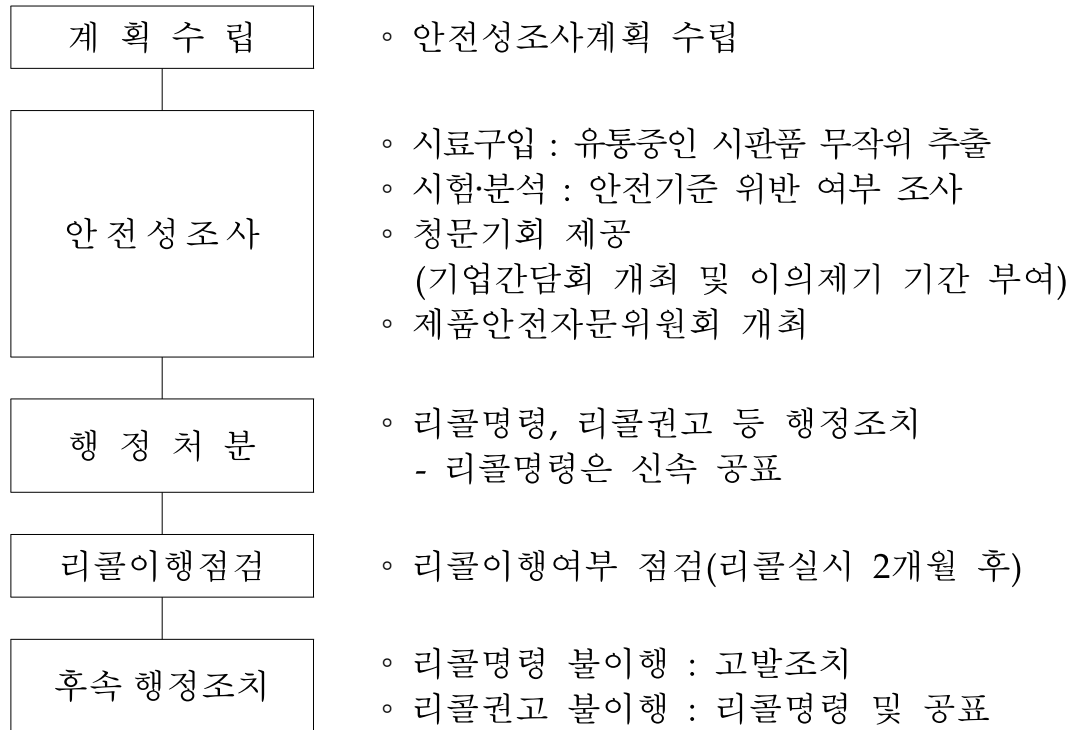
-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에서 제품사고조사 후 R-map(Risk-map)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경제산업성에 통보하여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활동 수행

- (호주) Clearinghouse*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등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여 리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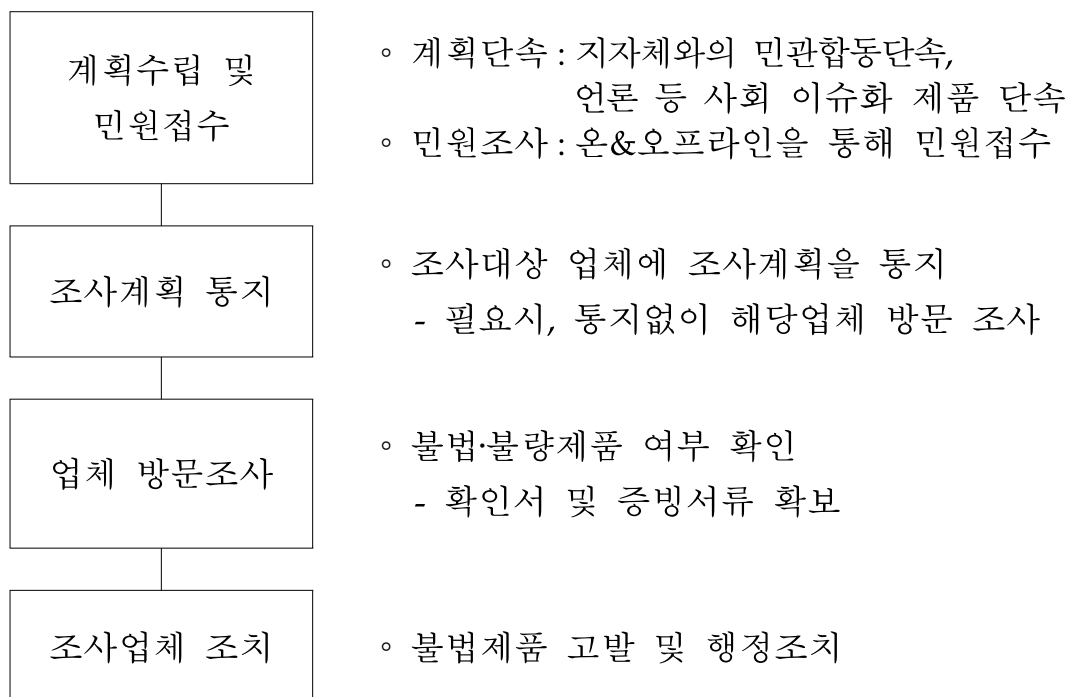
* 사고정보시스템(Clearinghouse)의 업무처리 절차 : 사고정보수집→데이터 입력→초기평가→상세평가→제품안전위원회 행정조치 결정

(5) 사업추진절차

○ 제품 안전성조사



○ 불법·불량제품 단속



○ 제품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구 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할
주 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등
운 영	소비자단체 (분야별 모니터링단체)	· 운영위원회 운영(제품안전감시원 포함) · 제품안전감시원 교육·관리 등
시장감시	모니터링요원	·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정보 수집·보고 ·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 제품안전관리가 취약한 문방구,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KC 마크 미부착,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을 집중 단속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 시장 출시 전후 쉰주기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실시

* 제품출시 前 안전성확인제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15.6.4 시행)

* 제품출시 後 결함제품 리콜관련 : 제품안전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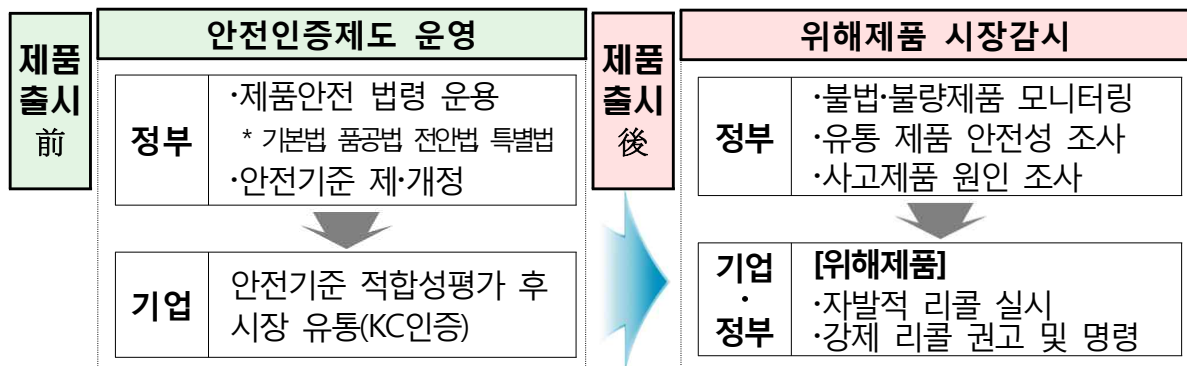
○ (시장출시 前)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사전인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

* 소비자 위해정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품질표시)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구 분	마크	대상품목 (전기용품/공산품)	적 용 절 차
① 안전인증	 (인증번호:)	58품목(45/13)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② 안전확인	 (신고번호:)	114품목(68/46)	제품시험 → 신고 → 판매
③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품질표시)		103품목(59/44)	제품시험 → 판매

○ (시장출시 後) 정부의 안전성 조사 또는 소비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해 원인 조사 후 리콜(권고 또는 명령) 및 고발 조치

<제품안전관리 체계>



*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품 사 고 조 사 및 수 입 제 품 안 전 관 리 (신 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	53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6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안전정보과장(정승희, 043-870-5430), 연구관(배진한, 043-870-54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년 ~ 계속
총사업비	해 당 없 음
사업규모	해 당 없 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제품사고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고조사를 이행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제도 이행
- 체계적인 사고정보 수집·분석 및 사고조사 이행을 통해 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확보 이행
- 특히, 불법 수입제품 조사를 국내 반입 前 통관단계에서 수행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 관세청과 협업추진 협의완료,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14.8.21

☞ 現 세관에서는 일부 제품에 대해 서류확인 후 통관하는 방식으로 인증여부만 조사하였으나 이조차도 서류위조 확인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검토 중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200백만원)

- 사고접수 즉시 결함여부 조사 (30백만원)

1) 시험비 : 10백만원=25건*30만원(시험수수료) + 25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10백만원=25건*2명*20만원

3) 조사결과 결함판정 자문위원회 운영비 : 10백만원 = 10건*5명*20만원

* 조사범위 : 자동차(국토부), 식·의약품(식약처) 등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가정용품 (완구, 의류 등 공산품과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 포함)

- 사고다발제품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120백만원)

* 전기장판 등 사고다발 제품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30백만원 * 4개 제품

- 사고조사 결과 제품의 결함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함의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및 평가인력 양성” (50백만원)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185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 100백만원

- 사고정보 통계관리 및 조사결과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 85백만원

* “제품안전매거진” 발간비 및 배송비 등

☞ 분석정보를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보급하여 안전품질경쟁력 제고 유도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150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평가 수행

1) 평가비 : 50백만원=100건*30만원(시험수수료) + 100건*2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100백만원(3명)

□ 지원 필요성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사업으로 정부예산 반영 필요

○ 관세청과의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반영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	535	535	순증
▪ 사고조사제도 이행	-	-	200	200	순증
▪ 정보수집·분석·보급기능 확충	-	-	185	185	순증
▪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평가	-	-	150	150	순증
☐ 비목	-	-	535	535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	-	95	95	순증
▪ 시험연구비(210-13)	-	-	30	30	순증
▪ 위탁사업비(210-15)	-	-	285	285	순증
▪ 업무추진비(240-01)	-	-	5	5	순증
▪ 연구개발비(260-00)	-	-	120	12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외 리콜정보 및 사고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업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품안전관리제도 이행
- 또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시 즉시 조사후 해당제품 사업자에 대해 리콜 및 개선조치 등을 통해 대국민 안전확보 강화
- 통관단계에서의 수입 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불량제품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제도 이행 : 200백만원 ▪ 정보수집·분석·보급기능 확충 : 185백만원 ▪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평가 : 150백만원
'15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제도 이행 : 200백만원 · 사고 조사 (150백만) · 위험성평가기법개발 및 평가인력양성(50백만)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확충 : 185백만원 · 정보수집 및 콜센터 운영·홍보(100백만), 제품안전정보 보급(85백만) ▪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150백만원)
'16	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제도 이행 : 200백만원 · 사고 조사 (150백만) · 위험성평가기법개발 및 평가인력양성(50백만)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확충 : 121백만원 · 정보수집 및 콜센터 운영·홍보(36백만), 제품안전정보 보급(85백만) ▪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150백만원)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7	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제도 이행 : 200백만원 · 사고 조사 (150백만원) · 위험성평가기법개발 및 평가인력양성(5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확충 : 159백만원 · 정보수집 및 콜센터 운영·홍보(74백만원), 제품안전정보 보급(85백만원) ▪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150백만원)
'18	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조사제도 이행 : 200백만원 · 사고 조사 (150백만원) · 위험성평가기법개발 및 평가인력양성(5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확충 : 82백만원 · 정보수집 및 콜센터 운영·홍보(36백만원), 제품안전정보 보급(46백만원) ▪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1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이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관세법 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

○ 추진경위

- ‘14.2.26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 ☞ “인증제도 완화를 통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사고조사 등을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 ‘14.5.12 “어린이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계획” BH 보고
 - *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수입제품 안전관리 계획 포함
- ‘14. 5.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계획” 부처협업과제 장관보고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제품사고조사 제도

- 전국단위 조직을 운영하며, 사고정보 수집시 사고조사를 통해 리콜제도 운영 ⇒ 실제 소비자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중
- 유럽의 RAG(Risk Assessment Guideline) 및 일본의 R-Map(Risk Map) 등 각국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 리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 리콜시 이를 적극 활용

* <참고 1> 미국, 유럽, 일본 제품안전제도 운영현황 참조

< 미국 >

- 15,000여종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상시 감시프로그램 운영,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권고, 안전위해정보 수집 등의 업무 추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사업자(판매자 포함)의 위해 제품 보고 의무화 제도 등 종합관리

< EU >

- 유럽연합국 차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RAPEX)을 운영하고 수집된 위해 정보를 근거로 해당국에서 위험성 평가후 리콜조치 이행
 - Rapex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제품에 대해 각 회원국 담당부처가 조사를 이행하고 조사결과 결함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토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

< 일본 >

- “제품평가기술키반기구”(NITE)에서 제품사고조사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후 경산성에 통보하면 경산성에서 결함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조치
 - 소비자청(위해정보 수집), 경제산업성(리콜제도 이행), NITE(사고조사 이행) 등으로 역할배분을 통한 제품안전제도 운영

② 수입제품 안전관리(관세청 협업)

- 美,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불법 수입제품의 사전 유통차단을 통한 자국민보호를 위해,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수입물품 안전관리정책」 운영 중('09~)

* '07년 12개 연방정부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수입안전 작업반이 구성되어 추진

- '08년 수입품 조사부서를 신설(20명 증원)하고 세관과 협력하여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이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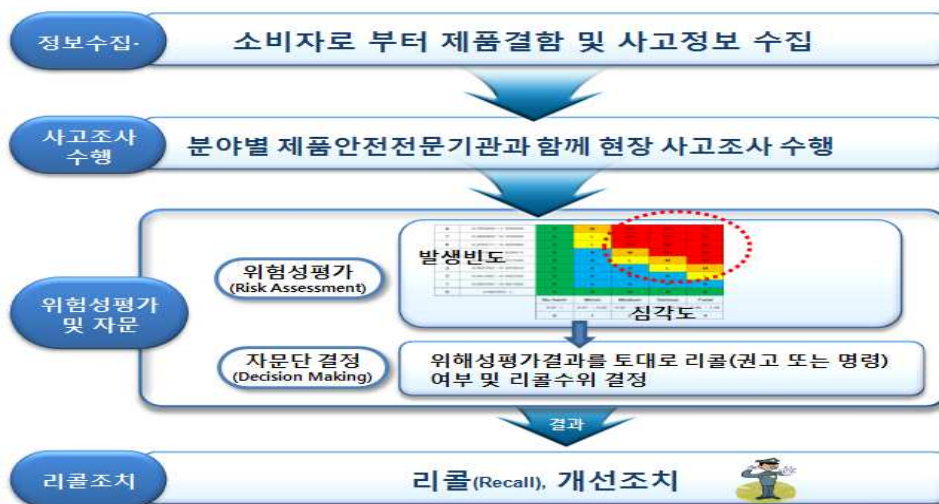
☞ '09년 6개 항구에서 시작하여 '13년 15개 항구로 확대

(5) 사업추진절차

① 제품사고조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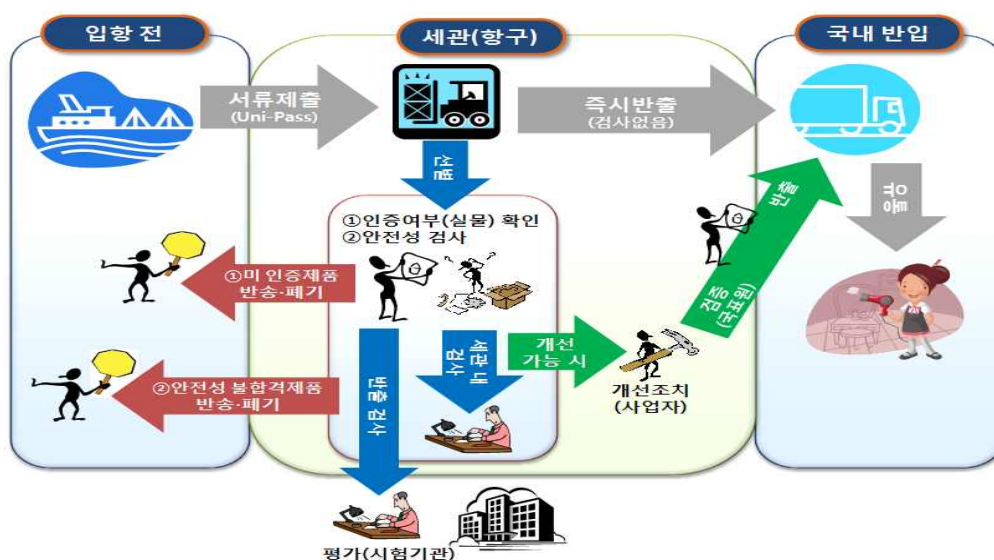
-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제품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여부 평가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② 수입제품 안전관리(관세청 협업)

<통관단계 불법제품조사>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제품안전사고 현황

- 소비자의 안전의식 상승 및 다양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사고 건수가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전기설비를 포함한 생활가전으로 인한 화재건수가 전체 화재의 51% 차지 ➡ **전기장판류 화재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
- ▶ 2013년 화재건수 총 14,215건 중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8,550건(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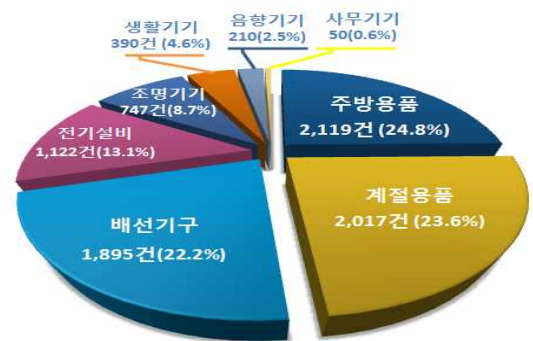
【 연도별 소비자사고 건수 】

출처:안국소비자원



【 2013년 생활가전 화재 건수 】

출처: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제 품 안전 정책(계 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제품안전정책	339	387	369	△18	△4.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3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김정환), 제품안전정책과장(박형건, 043-870-5410), 주무관(조정웅, 043-870-541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의 생활제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
 -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에 대한 조사·평가, 연구개발 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 : 174백만원

* (신속조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활제품을 조사 후 위해가 있을 경우 리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해제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등 실시

- 12품목 × 14.5백만원(평균 시료구입·평가비) = 174백만원

* 시료구입(0.3백만원×10개=3백만원)+평가비(1.15백만원×10개=11.5백만원)=14.5백만원

② 제품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평가보조비 : 195백만원

- 제품안전정책, 전기제품·생활제품 안전분야 등 연구 : 65백만원

* 평균 연구비 32.5백만원 × 2과제 = 65백만원

-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위해성 조사를 위한 평가보조비 : 130백만원

* 기타직보수(117백만원), 복리후생비(2), 연금지급금(11)

□ 지원 필요성

-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활제품을 신속히 조사·평가하여 위해제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제품안전 정책에 대한 방향 수립 및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제품안전정책	339	387	369	△18	△4.7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평가보조비	181	186	174	△12	△6.5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58	201	195	△6	△3.0
□ 비목	339	387	369	△18	△4.7
▪ 기타직보수(110-02)	-	111	117	6	5.4
▪ 재료비(210-11)	26	-	-	-	-
▪ 복리후생비(210-12)	-	2	2	-	-
▪ 시험연구비(210-13)	156	186	174	△12	△6.5
▪ 연구개발비(260-00)	158	77	65	△12	△15.6
▪ 연금지급금(320-03)	-	11	1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제품안전정책 수립 및 신속조치제도 운영을 통한 제품안전 확보
- (추진방향) 제품안전정책 조사·분석, 연구개발 및 신속조치제도 운영을 통한 제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 및 평가) : 186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평가보조비 : 201백만원
'15	3.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 및 평가) : 174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평가보조비 : 195백만원
'16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 및 평가) : 130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평가보조비 : 195백만원
'17	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 및 평가) : 156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평가보조비 : 195백만원
'18	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조치제도 운영 (시료구입 및 평가) : 103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평가보조비 : 195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제품안전정책	4.10	3.90	3.71	3.87	3.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불용(11백만원)
- 2012년 : 예비(39만원), 일반수용비(34만원) 등 집행잔액 불용(1백만원)
- 2013년 :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전용(19백만원) 및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불용액 발생(13백만원)

* 전용 : 제품안전정책(7134-303) →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2034-401)

* 불용 : 연구개발비(12백만원), 재료비(1백만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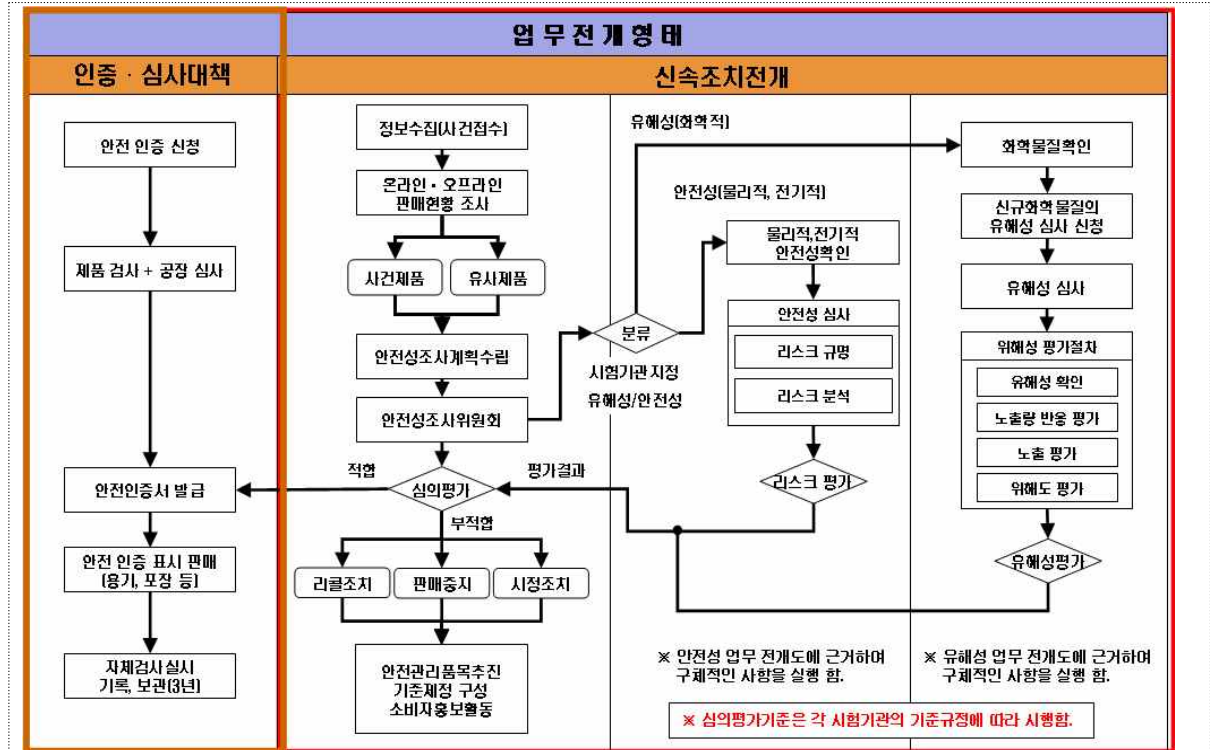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10			4.10	3.99		0.11
	()	()	()	()	()	()	()
'12년	3.90			3.90	3.89		0.01
	()	()	()	()	()	()	()
'13년	3.71		△0.19	3.52	3.39		0.13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제품안전관리 개략적 업무 흐름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555	2,072	1,968	△104	△5.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1 - 306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이동욱), 적합성평가과장(정민화, 043-870-5490), 연구관(박광호, 043-870-549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4년 ~계속('14년 2개 세부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구조 조정)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국제공인기관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내 기관의 기술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등 지원
- 국내시험·인증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체결·유지를 통한 국제 동등성 확보, 국제적 시험·인증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시험·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ISO 경영시스템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및 인정기구의 국가단일인정체계 운영
- 정부 규제외 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은 FTA,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
 - 제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시험인증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숙련도시험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789백만원

- 750백만원=30백만원×25건(녹색, 융합제품 등 수출주력 및 신수요 분야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15백만원=2.5백만원×6건(상용표준물질구입비)
- 6백만원=0.2백만원×30회(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 18백만원=1백만원(10명 기준×0.15백만원(수당))×12회(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② 국제동등성유지 국제협력 등 기반구축 : 183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정기구 운영기준(매뉴얼·절차서, 운영요령 등) 정비 및 인정위원회 운영 : 113백만원
 - 90백만원=3건(인정기구 운영매뉴얼/절차서, 지침 개정)×30백만원
 - 15백만원=10회(시험·교정위원회 운영)×15백만원(10명참석×0.15백만원(수당))
 - 8백만원=8백만원(분야별 공인인정서 전용용지 등 인쇄비)
- 국제기구(ILAC, IAF)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대응 : 18백만원
 - 13백만원=13백만원(평가회의 사무기기임차, 통역비, 운영비등)
 - 5백만원=5백만원(평가수검 회의장 임차, 7일)
-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총회, 협정회의 및 국제인정교육 참석 등 국제협력 : 52백만원
 - 42백만원=3건(IAF/ILAC 총회, APLAC 총회/이사회, PAC 총회 등 국제회의)×3명×3백만원 + 5건(시험, 교정, 검사, 숙련도, 메디칼 등 국제 인정교육)×1명×3백만원
 - 10백만원=국제인정업무 협력강화를 위한 관련 국제회의 개최

③ 국제시험인증제도 공신력 및 효율성 향상 기반구축 : 548백만원

- ISO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 1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80백만원 = 2명×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전산망·서버 유지보수 : 20백만원
- 인증현황 실태조사 실시 : 35백만원 = 70건×2명×0.25백만원
- 부실인증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 5백만원 = 5건×1백만원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3개인정기구의 국가단일인증 체계 구축 및 운영 : 300백만원
 - 단일인증체계구축·운영 : 300백만원 = 3개분야×2명×50백만원
- 신수요 시험·인증 기법 등 개발 : 80백만원
 - 사회안전분야 사업연속경영시스템 등 : 40백만원×2건
- 국제적합성평가제도 기반구축 협의 : 18백만원 (시험·인증발전협의, 단일인증구축협의, 성적서 및 인정서 신뢰성 강화 시험인증기관 등 협의)
- 국제인증동향 세미나 개최 : 10백만원

④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 448백만원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산업화 지원 시범사업비 : 420백만원
 - 350백만원 = 175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 예시: 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시험인증
 ② M2M 기반 사물통신 상호운용성 시험
 ③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부품 시험인증
 ④ 감성 고효율 반도체 조명의 시험평가
-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 위한 실태조사비와 여비 : 9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74백만원
 - 시험인증 실태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 4백만원(0.2백만원×20회)
 - 신흥국·개도국에 시험인증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 20백만원(3.3백만원×2명×3회)
- * 예시: 사우디 표준청과 협의하여 에어컨('13년), 세탁기, 냉장고('14년) 에너지 효율 강제인증 도입을 위한 시험소 구축

□ 지원 필요성

- 국내 시험성적서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 기업 시험비용의 이중부담을 제거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수준의 숙련도 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입증 필요
- 국내 시험·검사 교정 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국내 시험 및 교정기관들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기업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선진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제 기준과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운영요령·추가기술요건·지침 등의 개발과 숙련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교정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이
- 글로벌무역 등 경제활동에서 ISO인증이 필수조건이나, ISO 인증의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SO 인증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10년)
- 신 분야 시험·인증의 수요에 적기 서비스 제공 등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국제 시험·인증 제도 기반구축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555	2,072	1,968	△104	△5.0
▪ 숙련도시험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84	798	789	△9	△1.1
▪ 국제동등성유지 국제협력기반구축	137	174	183	9	5.2
▪ 국제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634	548	548	-	-
▪ 시험인증서비스산업화 지원	-	552	448	△104	18.8
☐ 비목	1,555	2,072	1,968	△104	△5.0
▪ 일반수용비(210-01)	30	40	54	14	35.0
▪ 임차료(210-07)	40	25	15	△10	△40.0
▪ 시험연구비(220-13)	15	30	25	△5	△16.7
▪ 국내여비(220-01)	1	10	10	-	-
▪ 국외여비(220-02)	9	62	62	-	-
▪ 업무추진비(240-01)	18	18	18	-	-
▪ 연구개발비(260)	947	1,027	994	△33	△3.2
▪ 민간경상보조(320-01)	495	440	440	-	-
▪ 출연금(350)	-	420	350	△70	△16.7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존에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상용표준물질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과적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지원 추진
- 기업 및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ISO 인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인증의 신뢰성 제고
- 국제적인 시험·인증제도의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신수요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제도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장품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개발 및 운영 : 798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74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4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552백만원
'15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융합제품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0건) : 789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83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3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48백만원
'16	1,7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의학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0건) : 750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80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02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00백만원
'17	1,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안전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0건) : 771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50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00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50백만원
'18	1,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15건) : 650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50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00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92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 제

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16조의2(녹색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제16조의3(관리대행자지정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94이전 :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 '94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를 수행
- '97. 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KAB)에 위탁
- '00. 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01. 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에 완전 이양(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 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 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 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 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 제도를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정고시
- '10. 4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한 권고
- '12.5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의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4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886	1,272	1,672	2,072	1,96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86			8.86	8.79		0.07
	()	()	()	()	()	()	()
'12년	12.72			12.72	12.71		0.01
	()	()	()	()	()	()	()
'13년	16.72			16.72	15.55		1.17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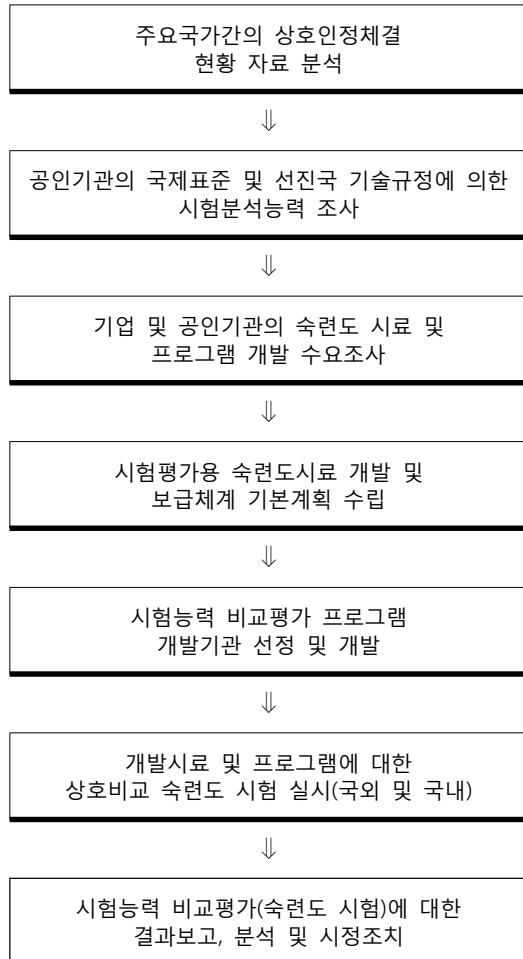
- 해외의 경우(호주 NATA, 영국 UKAS 등), 연평균 50여개 정도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15~20개 정도에 불과하여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국제상호인정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숙련도
시험운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25배의 관련 예산 증액이 요구됨

- 선도산업표준화 선행대응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 사례
 - 일본 경산성의 기술인증연구개발 : 4대 전략분야에 대해 ISO 및 IEC의 국제표준(안) 개발에 매년 약 100억원 지원
 - 일본 총무성의 국제기술획득형 연구개발 : 통신분야에 대해 ITU 등의 국제표준(안)개발에 매년 약 20억 지원
- 국제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사례
 - (EU) 개별 회원국의 통합노력과 병행하여 역내 시험인증제도 통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08)
 - * (영국) '95년 NACCP와 NAMAS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UKAS로 통합
 - * (이탈리아) '09년 2개의 인증제도를 ACCREDIA으로 통합
 - * (독일) '09년 4개의 인증제도를 DAkkS로 통합
 - (중국) '07년 CNLA와 NCAB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CNAS로 통합
 - (일본) 3개의 인증제도 간 MoU 체결('08), 인증제도 통합 추진중
 - (미국) 민간중심의 다원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운영중이나, 국제기준 제정 등 대외활동 시에는 상무부 소속 NVLAP가 주도
 - * 국제기구(ILAC 등) 가입 59개국 중 미국(11), 캐나다(2), 일본(3), 태국(3), 인도(2) 및 한국(3) 등 6개국만이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
 - (한국) 시험·검사(KOLAS), 제품인증(KAS) 및 경영시스템(KAB) 분야로 구분되어 시험·인증제도가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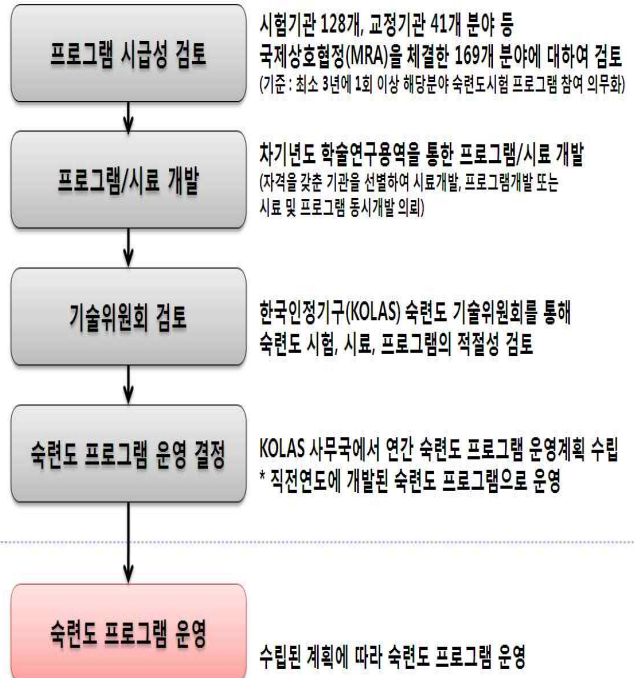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 적합성평가기반구축(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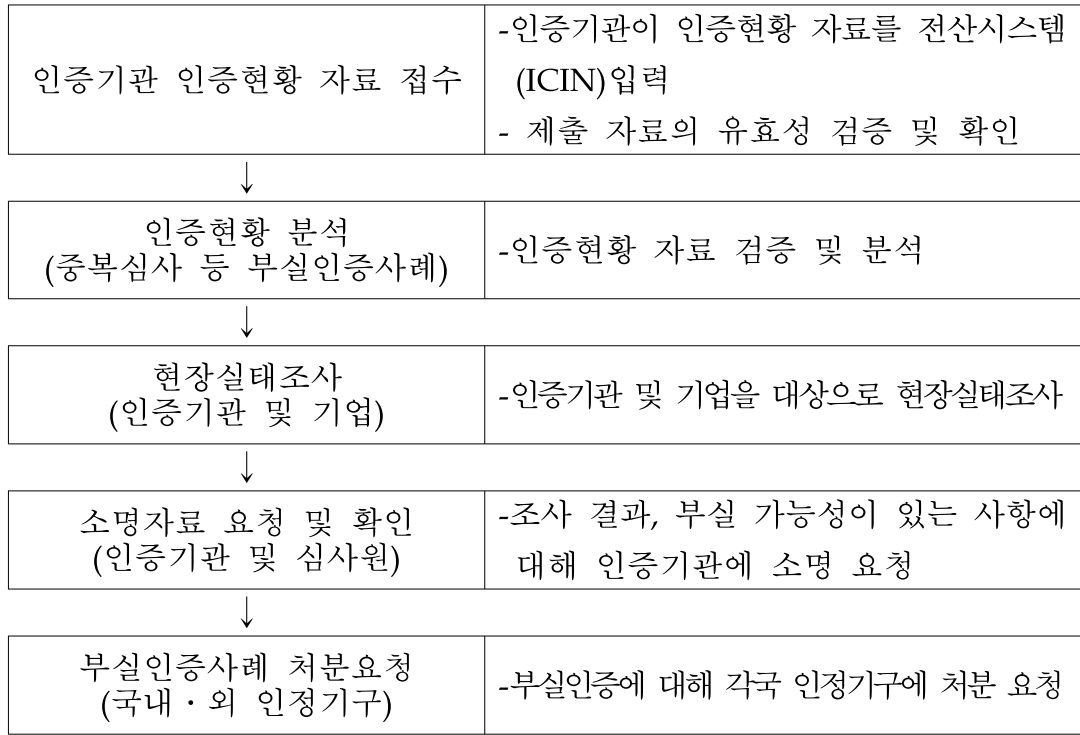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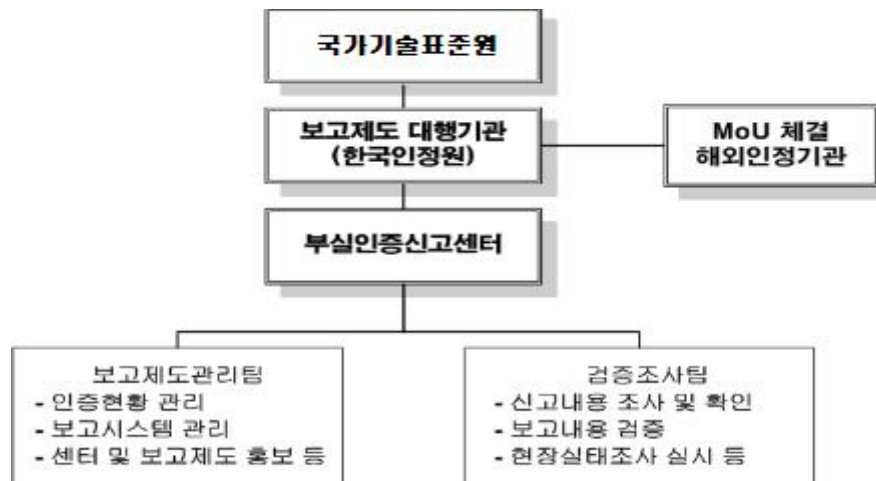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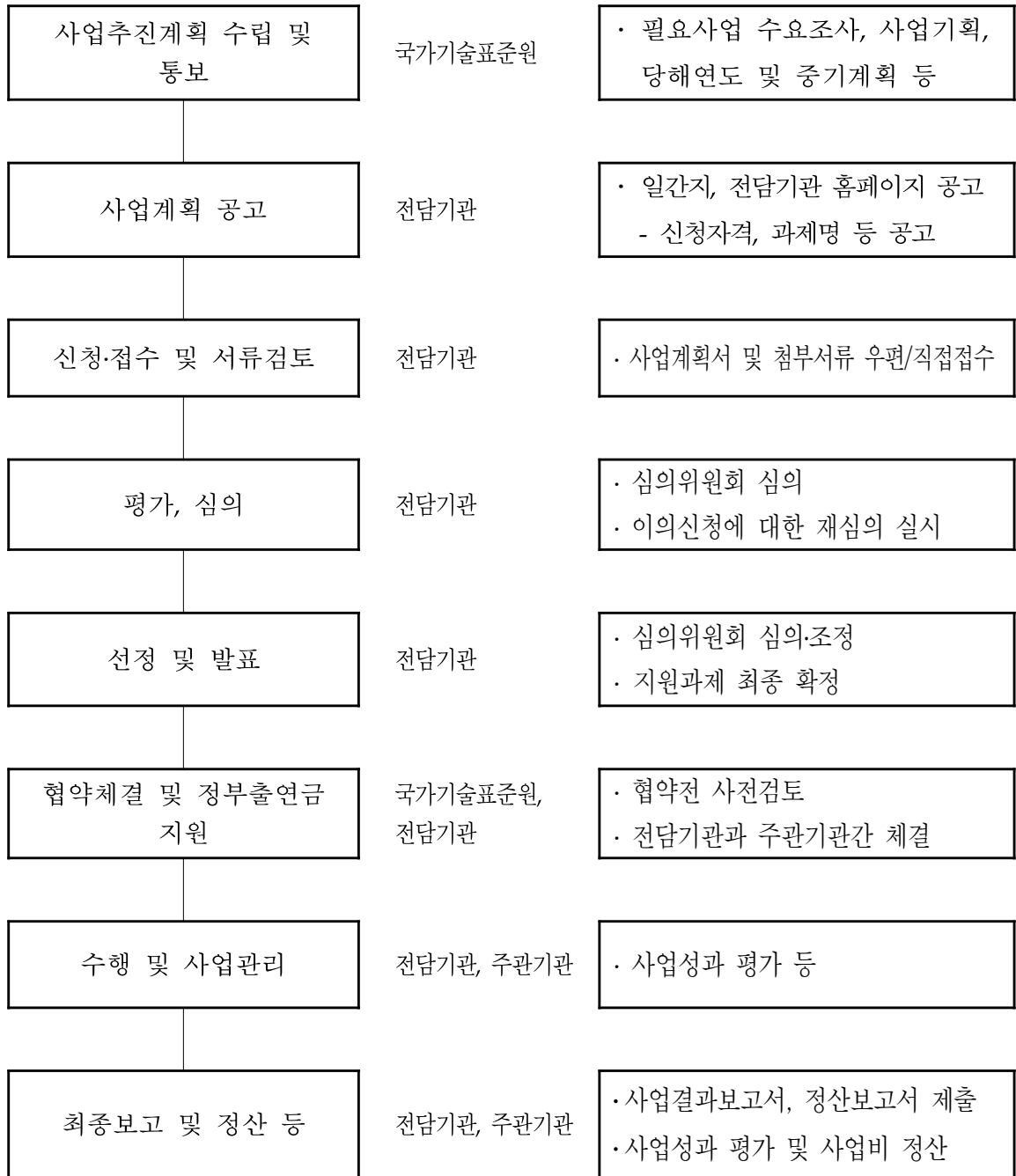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붙임 참조

□ 적합성평가 개요

- 정의 :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등이 법, 규정, 표준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 → 국제적으로 통용

* 적합성평가의 대상 : 시험, 교정, 검사, 인증 등

○ 국내 적합성평가체제

- KOLAS 인정 : 국제기준(ISO)에 따라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운영

*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사무국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KOLAS는 국제기구(ILAC, APLAC)에 가입하여 공인성적서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4년주기 인정기구 평가로 자격유지

□ 국제 상호인정 협정

-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적 통용과 수용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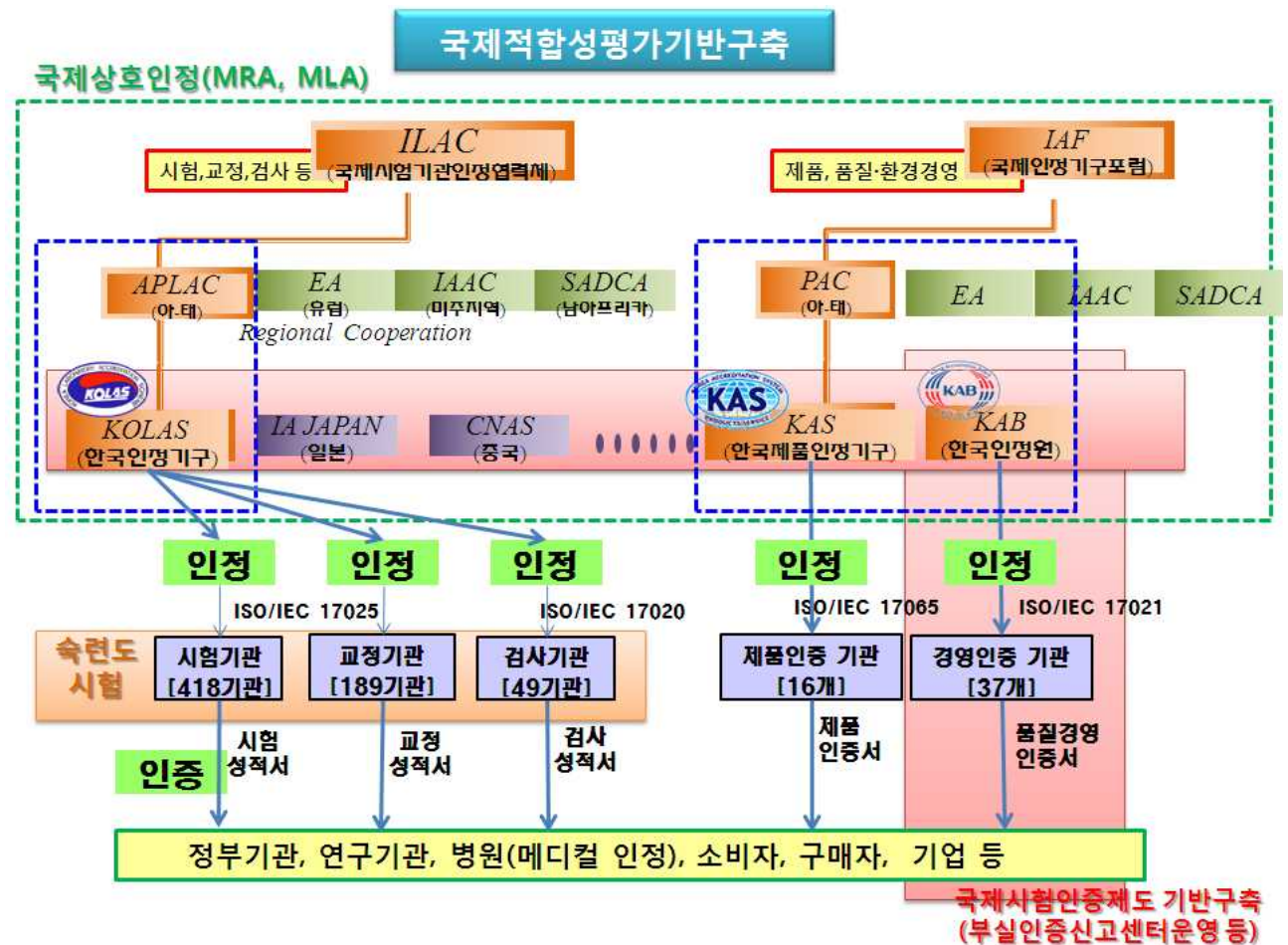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협정)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은 무역상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기 위해 ILAC-MRA 제도를 운영

* ILAC-MRA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기구(EA, APLAC 등)를 통해 ISO/IEC17011 만족에 여부에 대한 동등성평가 수검(재평가 주기 4년)

* ILAC-MRA :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LAC 국제상호협정

* ILAC-MRA 체결현황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61개국 74개 인정기구



- * ILAC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 APLAC :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적합성평가제도의 효과

-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별도 시험없이 국제무역상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효과(시간, 비용절감)
- 법정 규제당국(안전, 보건 등)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
-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적합성평가제도 성공사례

- * 사례 1) D 조선회사 : 해양구조물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NIST에서 교정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교정기관을 통해 계측기를 교정 (연간 120억원의 비용 절감)
- * 사례 2) L 제조회사: 휴대폰 유럽수출을 위해 KOLAS 시험성적서로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제품인증을 받아 수출 가능(138억원/년 비용절감)
- * 사례 3) H 제철 : “H 빔”, “PFC 채널” 등의 호주 수출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요구
H제철은 KOLAS 시험기관 인정받아 호주 수출 가능(약 50,000톤/년, 약 3천7백만불)

참고 2 숙련도 프로그램 개요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개요

- 정의 : 미지(未知)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KOLAS 공인기관 또는 신청 준비기관의 능력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임
 - * KOLAS는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에 의거하여 ISO/IEC 17011 (인정기구요건)의 의무사항에 따라 PT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 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 *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 운영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
 - * KOLAS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당 3년에 1회 이상 PT에 참여해야 함 (의무)
 - ** 우리나라는 총 169개 기술분야 (시험 128개 분야, 교정 41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음

○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시급성 검토
- 직전연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시료개발포함)에 대한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 연간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결과는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후 실적으로 인정함)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인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정부)이 한국인정기구(KOLAS)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ISO/IEC 17011)의 요구조건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99	443	1,282	839	18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7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이동욱), 인증산업진흥과(김영찬, 043-870-5500), 주무관(최홍석, 043-870-550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381 운영)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사업목적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효율화를 통해 인증난립에 따른 소비자 혼란방지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인증기준과 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화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신규)

※ 국정과제 137-⑤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해당사업

137-⑤ 기술규제 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 부처별 인증제도 중복, 강제기준의 국제표준 부조화에 따른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시험·검사·인증 등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x 1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x 1회 = 3백만원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94백만원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9개매체×21.6백만원=194백만원
 - * 지하철·KTX를 활용한 KC마크 홍보 및 인증제도 홍보자료 제작·배포
- ③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여비) : 45회×2명×10만원=9백만원
- ④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개최(범 부처 실무자협의회 등) : 21백만원
 - 27회×8명×10만원=21백만원
- 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0백만원
 - 인증제도 만족도 조사 및 KC마크, 1381 콜센터 인지도 조사 : 50백만원
- ⑥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0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1명=440백만원
 - 콜센터 운영 H/W 구입 :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 콜센터 운영 S/W 임차 :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 콜센터 운영 기반구축 : 70백만원×1회=7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6개매체×25백만원=1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인증제도는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중으로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범 부처 협의체(포럼) 운영 필요
- 7개부처 17개의 법정의무인증이 도입하여 사용 중인 KC마크를 국가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별 현황조사 및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필요
-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99	443	1,282	839	189
▪ 국가인증제도 선진화 포럼 운영	-	50	8	△42	△84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90	213	194	△19	△8.9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8	9	9	-	-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22	21	21	-	-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79	150	50	△100	△66.7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	1,000	1,000	순증
□ 비목	399	443	1,282	839	189
▪ 일반수용비(210-01)	190	233	347	114	48.9
▪ 임차비(210-07)	-	30	5	△25	△83.3
▪ 국내여비(220-01)	4	5	5	-	-
▪ 국외여비(220-02)	4	4	4	-	-
▪ 업무추진비(240-01)	22	21	21	-	-
▪ 연구용역비(260-00)	179	150	50	△100	△66.7
▪ 민간경상보조(320-01)	-	-	850	85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 인증제도간의 상호인정 및 통합 등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법정의무인증분야에서 하나로 통합된 KC마크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인증 브랜드로의 육성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 국가인증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업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및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법 부처간 협의체) 운영 :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30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20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33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150백만원

‘15	1,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9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14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0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1명=440백만원 - 콜센터 운영 H/W 구입 :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 콜센터 운영 S/W 임차 :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 콜센터 운영 기반구축 : 70백만원×1회=7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50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50백만원
‘16	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10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0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8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1명=440백만원 - 콜센터 운영 H/W 구입 : 50백만원×1회=50백만원 - 콜센터 운영 S/W 임차 :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 콜센터 운영 기반구축 : 50백만원×1회=5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20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20백만원

‘17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9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5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15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0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9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5백만원×11명=495백만원 - 콜센터 운영 H/W 구입 : 70백만원×1회=70백만원 - 콜센터 운영 S/W 임차 :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 콜센터 운영 기반구축 : 60백만원×1회=6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20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20백만원
‘18	1,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포럼(범 부처간 협의체) 운영 :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6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30백만원 - 해외홍보 : 20백만원 - 홍보물제작·배포 등 : 12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0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78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5백만원×11명=495백만원 - 콜센터 운영 S/W 임차 :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00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제품인증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 ② 국가통합인증마크(National Mark)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공포
 - *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종합조정시스템 구축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2.6.29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개정
 - * 복수의무인증제품 추가(33개→46개) 및 상호인정 시험항목 확대(9개→11개)
- '12.8.30 : 산업부내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추진완료
 - * 전기용품·공산품·에너지소비효율·가스용품검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KS간 134개 품목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 추진
- '14.2.18 : 미래부로부터 “1381” 네자리 특수번호 획득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식

- 참 석 : 산업부 김재홍차관 중기청, 협단체, 업체 등 약 300 여명
- 장 소 : 국가기술표준원 중강당(과천) 3.26(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5	5	4.43	4.43	12.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전용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집중 홍보가 필요하여 여비에서 운영비로 2백만원 자체전용

○ 2012년

- 전용 : KC마크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 사업내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1백만원 자체전용

○ 2013년

- 불용 : 기재부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라 44백만원 예산절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5		±0.02	5	5		
	()	()	()	()	()	()	()
'12년	5		±0.01	5	5		
	()	()	()	()	()	()	()
'13년	4.43			4.43	3.99		0.44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유럽통합과 함께 안전·위생·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 관련 의무규제 대상을 CE마크로 통합 운영 ('93.7)

* 소비자의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전기 및 공산품 중심의 22개 품목군 22천여 제품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8년)

- (중국) 국내제품(CCEE)과 수입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의무 인증 제도를 CCC마크로 통합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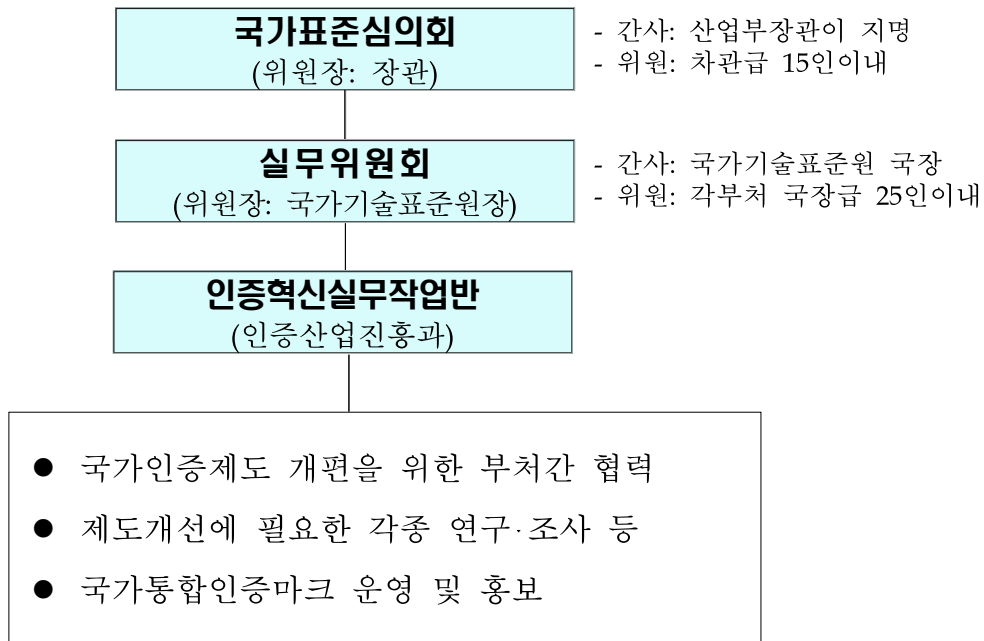
* 전기제품, 통신기기, 완구류, 압력용품 등 19개 유형, 325개 제품을 CCC마크로 통합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3년)

- (일본) 의무인증제도를 PS(Product Safety) 마크로 통합·표시
 - * PSE(전기제품), PSC(공산품), PSTG(가스용품), PSLPG(가스)

(5) 사업추진절차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부처의 협력 절차

< 인증 추진 체계 >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국정과제(137-5)번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해당사업)

※ (과제개요)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 억제 등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품질을 향상

○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시스템적으로 억제

○ 핵심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국내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문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합리적으로 개선필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전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 범 부처 협의체(포럼 및 실무자협의회)를 구성)

□ 인증과 관련한 ‘손톱 밑 가시’ 과제 해결 요구(인수위·총리실 등)

관련 인증	건의 내용
인증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유사·중복성 있는 인증제도를 통폐합하고, 인증 소요기간 및 비용 단축 국가인증기관 통합(인증기관과 구매기관 이원화)
중복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인증에 의한 중복시험을 면제 요청
전기용품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접기 및 관련부품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강제기준 개정
시험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시험기관 시험수수료를 중소기업에게는 대폭인하하고, 수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공산품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인증 자격요건 완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열재 제품관련 KS분류코드 일원화 대기업이 독점 생산하는 친환경 신제품 관련 KS제정 중단 아스콘 제품 KS의 단체표준 전환

신기술제품인증(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신기술제품인증	1,934	1,943	2,248	305	15.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4 - 301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이동욱), 인증산업진흥과장(김영찬, 043-870-5500), 연구관(이원식, 043-870-550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인증평가, 판로확대)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NEP),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G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NET)

2.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을 발굴 · 평가 · 인증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지원 등을 통한 자원 ·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친환경 및 녹색기술 등 미래산업 선도 신기술 실용화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NEP(New Excellent Product),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산촉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NET(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기술의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상용화 촉진기반을 조성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산촉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4



GR(Good Recycled),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한 제품중 에너지, 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재활용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GR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직접인증제도

* (법적 근거) 산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신기술인증지원 : 1,802백만원

- NEP, NET, GR인증 400건×0.66(참석율)×5.85(단가) = 1,540백만원

* 인증 신규평가 및 연장평가 포함

<인증별 회당 평가 수당>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심사(명)			합계 (A, a+b+c)	비용		
	1차(a)	2차(b)	3차(c)		단가(d)	1차 금액 (d×a)	총 금액 (d×A)
▪ 신제품인증(NEP)	15	4	20	39	150	2,250	5,850
▪ 재활용인증(GR)	15	4	20	39	150	2,250	5,850

- 인증업무효율화를 위한 기존 인증문서(3,200여권) 디지털화 : 150백만원
- 인증제도 홍보지원 및 신기술실용화 지원 및 법률자문료 : 30백만원
- 신기술, 신제품인증제도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 70백만원
- 신기술,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 협의 : 12백만원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320백만원

-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포상심사 및 촉진대회 : 150백만원

* 심사수당 20백만원, 신문공고·인쇄 20백만원, 대회장소 임차 70백만원, 행사 동영상, 기획대행비 40백만원

- 전국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구매 담당자 대상 NEP제품 의무구매 제도 순회 설명회(2회) : 20백만원
- 정부 및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판로확보 및 지원을 위한 워크숍(3회) : 60백만원
- 구매력이 큰 16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NEP기업 간 공공구매 상담회(2회) : 50백만원
- 공공구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공공구매 상담회 운영 방안 의견 수렴 간담회(4회) : 20백만원
- 신기술보유 유망기업 발굴 현장실무 상담(50개기업) : 20백만원

③ 인증제품 신뢰성 제고 : 126백만원

- NEP, GR : 90품목×127만원 ≒ 116백만원

<품목당 시판품조사 단가 산출 내역>

구분	산출내역	금액
심사위원수당	3명 × 15만원	45만원
여비	3명 × 9만원	27만원
시험검사 수수료	제품당 평균 55만원	55만원
합 계		127만원

- 시판품조사 평가 수행비(여비 등)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 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기술과 동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상품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 신기술 보유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고용창출 활동을 유인하는 등, 국가정책 목표(중소기업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 등)와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
- * NEP, NET, GR 인증제품이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됨
-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 인증제품(GR)은 미래 산업 선도 신기술로서 저탄소 성장에 일조
- 아울러 국내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영세화, 내수시장 의존, 생산성 저위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 의무구매(의무구매율 20%)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수수료 신설 등을 통해 보조금(1,094백만원/’14년, 보조비율 26%~71%)을 감소시켜야 하나 관련 협·단체 및 업체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한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도 계획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지속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신기술제품인증	1,934	1,943	2,248	305	15.7
▪ 신기술인증지원	1,505	1,406	1,802	396	28.1
▪ 융합신제품인증활성화	70	70	-	△70	-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151	331	320	△11	△3.3
▪ 인증제품 신뢰성제고	208	136	126	△10	△7.4
□ 비목	1,934	1,943	2,248	305	15.7
▪ 일반수용비(210-01)	349	415	180	△235	△56.6
▪ 임차료(210-07)	110	50	-	△50	순감
▪ 시험연구비(210-13)	233	222	126	△96	△43.2
▪ 사업추진비(240-01)	13	12	12	-	-
▪ 연구개발비(260-00)	135	150	70	△80	△53.3
▪ 민간경상보조(320-01)	1,094	1,094	1,860	766	7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 재활용·재제조 등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신기술기반 기업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환을 지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하고 인증 신제품을 구매할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 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국내·외 신기술 트렌드 분석 및 신기술 인증제도의 정책 다변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인증 연계 방안 마련
- 수수료 신설 등 제도개선을 고려중에 있으나, 관련 협·단체 및 업체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후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한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인증지원:14.06 ▪ 인증제품 판로지원:3.31 ▪ 인증제품 사후관리:1.36 ▪ 융합신제품 인증 활성화:0.7
'15	2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인증지원:18.06 ▪ 인증제품 판로지원:3.2 ▪ 인증신뢰성제고:1.26
'16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인증지원:15.92 ▪ 인증제품 판로지원:2.8 ▪ 인증신뢰성제고:1.06
'17	2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인증지원:17.2 ▪ 인증제품 판로지원:3.0 ▪ 인증신뢰성제고:1.16
'18	1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인증지원:14.3 ▪ 인증제품 판로지원:2.8 ▪ 인증신뢰성제고:1.0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 (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신기술제품인증	18	15.5	20.43	19.43	22.4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8			18	18		
	()	()	()	()	()	()	()
'12년	15.5			15.5	15.47		0.03
	(8.5)	()	()	(8.5)	(8.5)	()	()
'13년	20.43			20.43	19.33		1.1
	(10.9)	()	()	(10.9)	(10.9)	()	()

* '12년 잔액 0.03억원은 학술연구용역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임

* '13년 잔액 1.1억원은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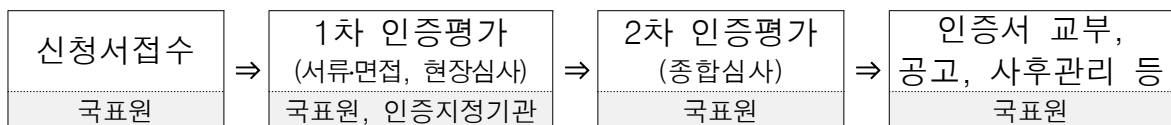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예산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보통등급(62.0점)으로 평가(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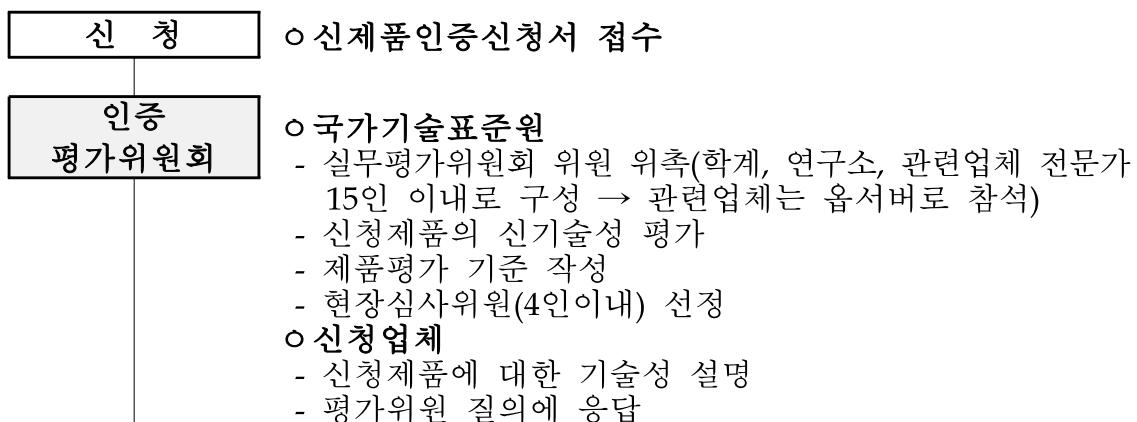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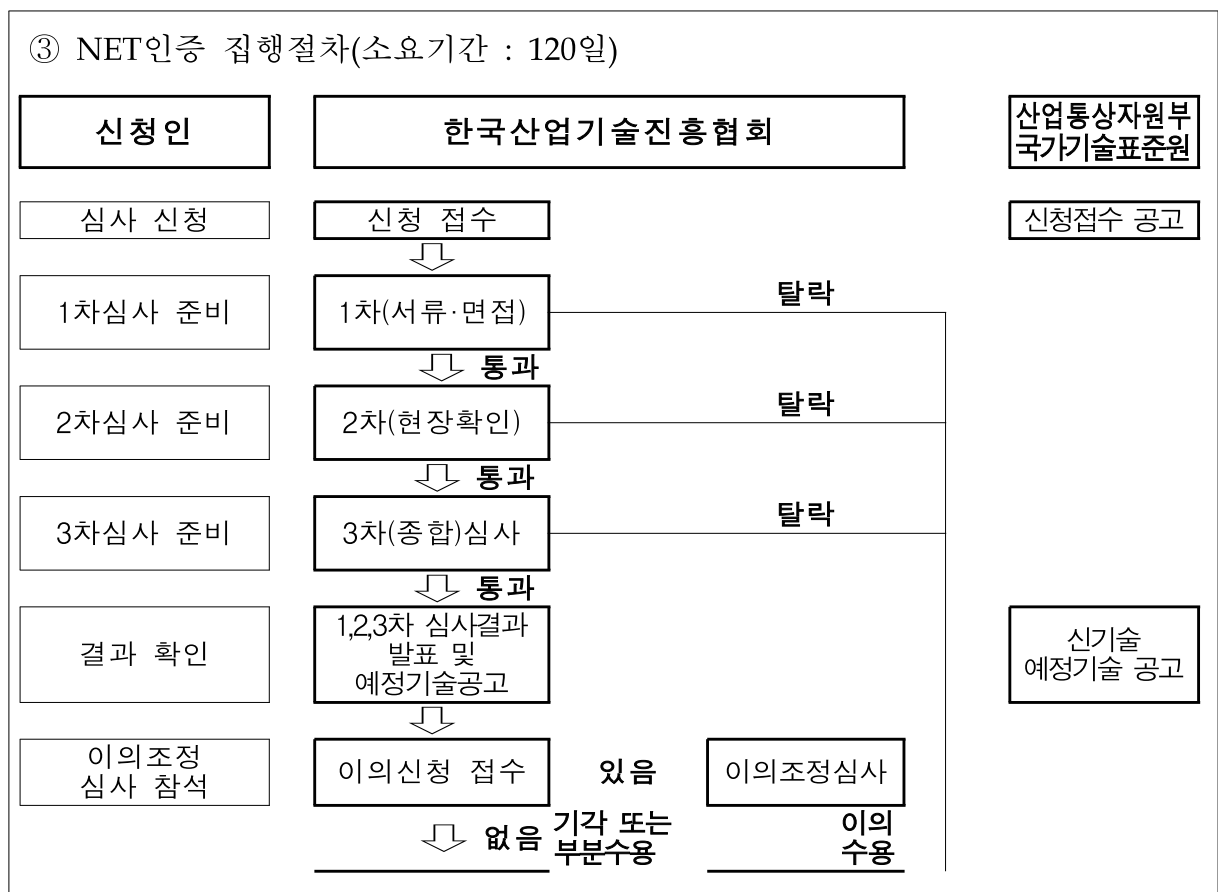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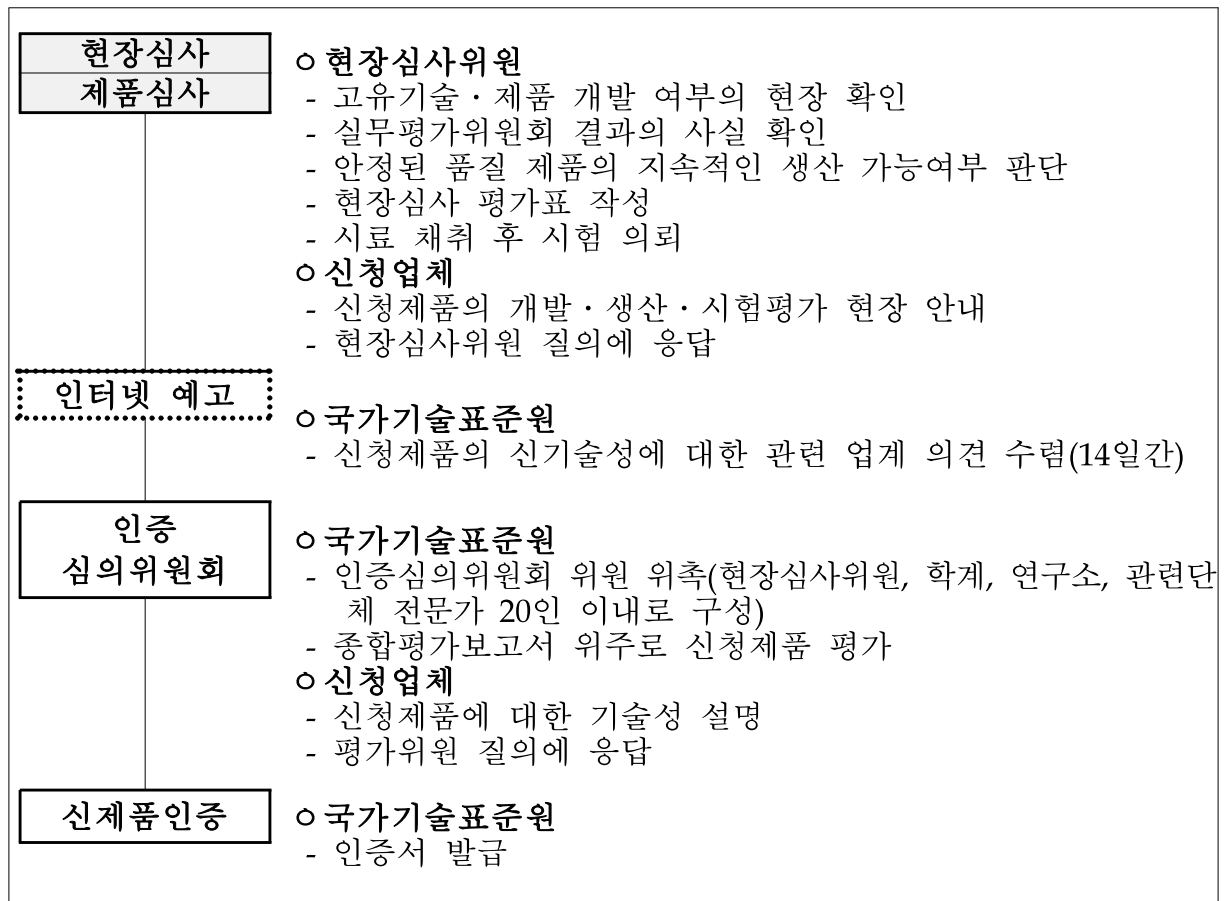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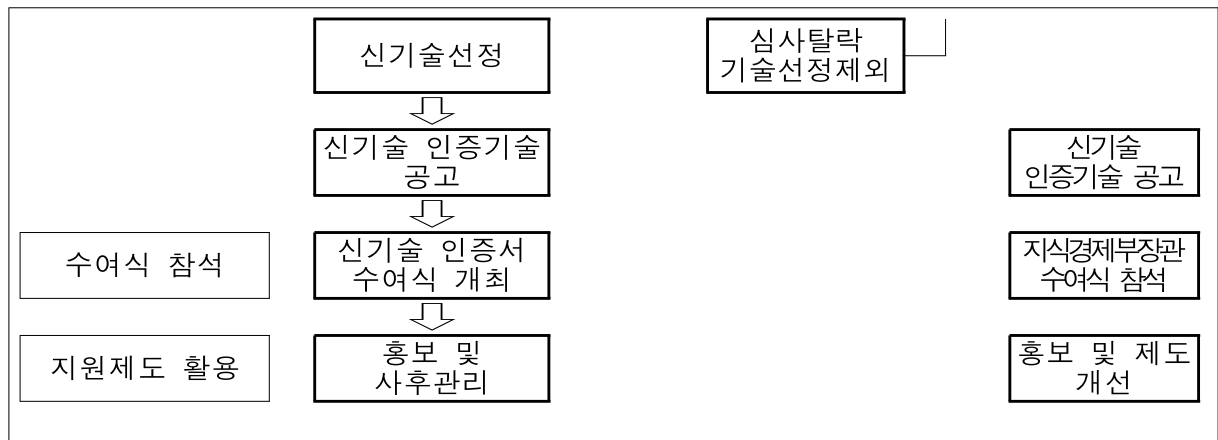
①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②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시행 ('08. 2. 28부터 시행)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사업	437	1,000	1,250	250	25.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8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이동욱), 계량측정제도과장(최미애043-870-5510), 연구관(양승배, 043-870-55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선진화된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공정상거래 질서 확립
- 지능화되는 불법계량기 위조 등의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법적규제대상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18백만원

- '평(坪)', '돈(匁)'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²',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 103백만원

* 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업소 등 홍보 (리플렛3종, 홍보물3종 등 48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대중홍보(지하철 5개지역×1개월×9백만원=45백만원)

- 일간지, 공중파 15개 분야에 대한 'm²', 'g' 등의 법정단위 모니터링 : 75백만원
 - * 일간지, 공중파 등 11분야 (전년도 용역단가(3.5백만원) : 35백만원
(일간지 3社, 경제지 3社, 공중파 3社 · YTN · MBN 등 11개 분야)
 - * 부동산, 현수막 등 3분야 모니터링 : 40백만원
- 계량 유물 관리 및 운영 예산 : 40백만원
 - * 계량 유물(문화재: 154종 331점, 비문화재: 83종 219점) 유지 · 관리비용
(4.6백만원*1명*12월*0.65+4.1백만원) : 40백만원

② 법정계량 기준 · 지침 개발 및 국제기구 대응 : 180백만원

- 스마트 미터 등의 신수요 기술기준 개발과 검사 · 단속을 위한 지침서 및 해설서 개발 : 150백만원
 - * 형식승인 · 검정기준(3종)×계량분야 '14년 평균용역 단가(33백만원, 회의비 절감)×75% (25백만원) : 75백만원
 - * 지침서 · 해설서(3종)×계량분야 '14년 평균용역 단가(33백만원)×75%(25백만원, 전문가 검토 비용 및 회의비 절감) : 75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APLMF 등)의 대응 및 상호인정추진 : 30백만원
 -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및 OIML 실량표시기술위원회, 한일계량기술협력위원회, BIPM 국제도량형기구 총회 등 참가 : 30백만원
 - * OIML에는 총 18개의 기술위원회(TC)와 46개의 분과위원회(SC)에서 연간 30~40건 정도의 투표를 진행 함

③ 계량 · 측정 공공데이터 활용 · 지원 : 202백만원

- 계량기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예산 : 60백만원
 - * 계량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 · 관리비용(5백만원×12개월) : 60백만원
- 계량 · 측정 데이터의 DB화 비용 : 37백만원
 - * 2.3백만원*2명*8월=36,800천원+기타 200천원 : 37백만원
- 시스템 애로 ·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40백만원
 - * 1건*40백만원

- (신규)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 65백만원
 - * 운영비 38 (인건비 4.6백만원×1명×11월×75%=37,950천원+기타 50천원)
 - * 우편발송비 27 (90천건×300원)

④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60백만원

- 리콜제도 운영을 위한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 90백만원
 - * 시료구입비(계량기 구입 30종×시료3개×233천원=20,970천원 + 기타 30천원) : 21백만원
 - * 시험수수료 (시험 수수료 30종×시료1개× 2,300천원=69백만원) : 69백만원
-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 50백만원
 - * 수당(150천원×4명×10일×5종=30백만원), 출장비(100천원×4명×10일×5회=20백만원)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 20백만원
 - * 정량표시상품 : 시료 구입비 20천원×연250개=5,000천원, 정량 검사비 60천원×연250개=15,000천원
 - * 정량상품 업체는 2.3만개로 업체별 20개만 가정해도 상품수는 50만개('13년 기준)

⑤ 계량 교육·제도·홍보 : 210백만원

- 계량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 60백만원
 - * 계량공무원 정기검사 및 재검정을 위한 실무교육 (20백만원×3회=60백만원)
- 계량기사업자 대상 교육 : 50백만원
 - * 교육대상 2,270명중 900명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 임차료 등 (5.5백만원×9회+기타50만원=50백만원)
- 계량 사후관리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홍보 : 100백만원
 - * 사후관리 계획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20백만원×2회) 및 제도용 인쇄·홍보물 3종(20백만원×3종)

⑥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 : 157백만원

- (신규)소비자감시원 운영 : 82백만원
 - * 수당 42백만원(=150천원× 10개 지역×4명×7일)
 - * 교육 및 워크숍 40백만원(1회×40백만원)

- (신규)불법·불량계량기 신고시스템운영 : 75백만원

* 운영비 60 (인건비 4.6백만원×1명×10월, 통신비 10월×0.4백만원 + 기타 10백만원)

* 포상금 및 계도비 : 15백만원

⑦ 법정계량전담기관 지정·지원 : 123백만원

- 교육, 계도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인건비 지원

* 인건비 88(2명×4.6백만×12월×80%), 운영비 35(인건비×40%)

□ 지원 필요성

○ 계량 관련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의 견인적 역할을 위해 스마트 미터 등 IT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계량기에 대해 신뢰성 있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표준 지원이 필요

○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공공 상거래 질서 훼손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의 엄정한 관리(사후관리)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437	1,000	1,250	250	25.0
▪ 법정단위 정착 홍보·모니터링	201	215	218	3	1.4
▪ 기준·지침 개발 및 국제기구 대응	109	185	180	△5	△2.7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27	175	202	27	15.4
▪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44	160	16	11.1
▪ 계량 교육·계도·홍보	-	201	210	9	4.5
▪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	-	-	157	157	순증
▪ 법정계량전담기관 지정·지원	-	80	123	43	53.8
□ 비목(합계)	437	1,000	1,250	250	25.0
▪ 일반수용비(210-01)	68	98	133	35	35.7
▪ 시험연구비(210-13)	28	126	110	△16	△12.7
▪ 위탁사업비(210-15)	-	442	137	△305	△69.0
▪ 국내업무여비(220-01)	-	-	20	20	
▪ 국외업무여비(220-02)	-	-	30	30	
▪ 사업추진비(240-01)	5	4	7	3	75.0
▪ 연구개발비(260-00)	336	250	225	△25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	80	588	508	63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및 법정계량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추진방향)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년~'15년) 및 법정계량선진화 추진계획('12.2)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계량측정 체계 기반 마련 및 계량법 전부개정('14.5)에 따른 신규 법정계량·측정 업무 수행
- (제도개선사항) 계량관리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관련 계량측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5.1월 시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5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5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0 ▪ 생활계량기 및 불법·불량계량기 조사·관리 : 1.44 ▪ 계량 교육·제도 시스템 운영 : 2.01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0.8
'15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18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02 ▪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6 ▪ 계량 교육·제도 시스템 운영 : 2.1 ▪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 : 1.57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1.23
'16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5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5 ▪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5 ▪ 계량 교육·제도 시스템 운영 : 2 ▪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 : 1.5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1
'17	1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2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88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 ▪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 교육·제도 시스템 운영 : 2 ▪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 : 1.5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1
'18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단위 홍보·모니터링 : 1.5 ▪ 기준·지침 및 국제대응 : 1.4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5 ▪ 계량기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3 ▪ 계량 교육·제도 시스템 운영 : 2 ▪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 : 1.4 ▪ 법정계량 전담기관 지정·지원 : 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 사용금지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49조(보고), 제50조(조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사업의 육성 지원)
 -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추진방안”(국무회의, '06.10.17)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국가표준심의회, '10.11월)의 “법정계량단위 정립으로 생활 속 상거래 질서 확립”과제 추진
- 사업명 변경 : 법정단위정착지원('09년)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12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14.5월 공포/'15.1월 시행)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소비자 감시원 제도, 리콜제도) 제도 신설('15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92	3.49	4.93	10.0	1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92			1.92	1.92		
	()	()	()	()	()	()	()
'12년	3.49			3.49	3.49		
	()	()	()	()	()	()	()
'13년	4.93			4.93	4.37		0.56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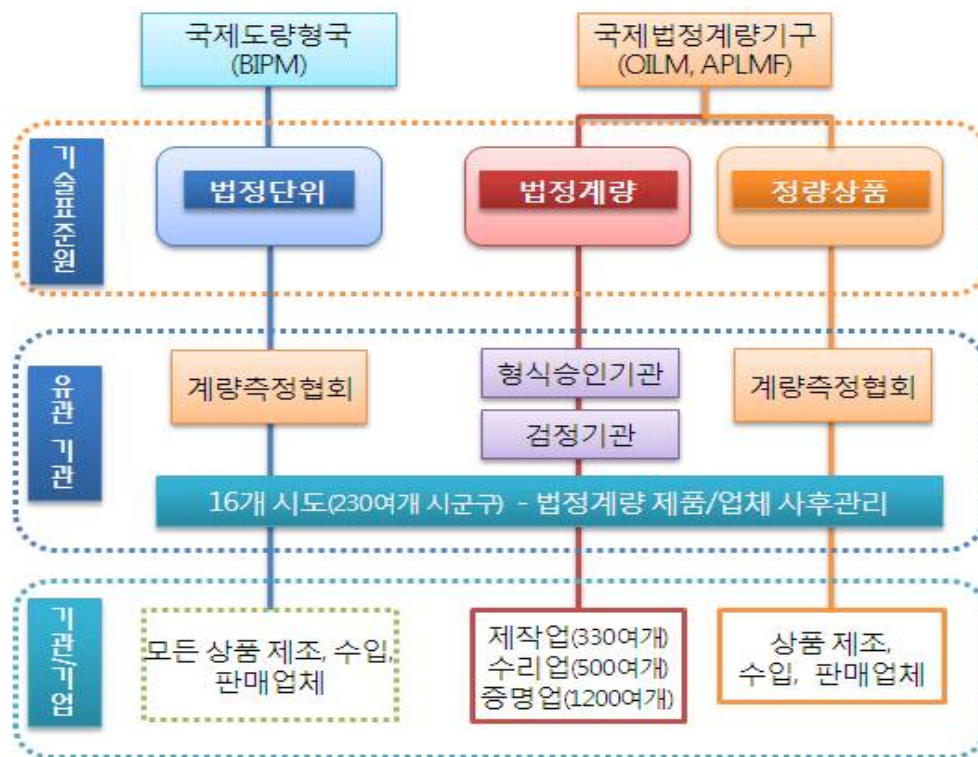
- '13년도 재정자율평가(단위사업명 : 신산업표준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80.0)
 - 기획재정부 : 보통(77.5)
- '09년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 계량단위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언론홍보비를 '08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언론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08년도 법정계량단위 정착 관련 예산 : 기술료사업, 10억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법정단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95%)에서 국제단위계를 공식 채택
 -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
 - 중국의 경우 1985년 미터법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 일본은 계량법('51 제정) 개정하여 국제단위계 사용이 성공적 정착
 - 미국은 1866년 미터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아드·파운드법 병기 사용 등 전환이 매우 느리나 최근 미터법으로 단일화 추진

- (기술기준개발) 미, 러, 독 등 3국은 OIML(국제법정기구) 기술분과위원회 (총 64개)의 64%를 간사국으로 수입하여 Rule Maker 역할 수행
 - * 간사국 : 미국(15), 러시아(15), 독일(11), 영국(5), 프랑스(4), 중국(3), 호주(3)
 - * 18개 기술위(TC)와 46개 분과위(SC)에서 총 118개의 기술기준 개발 중
 - * ISO/IEC의 경우 국내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10년 만에 순위 14위로 급성장
- (종합관리시스템) 승강기 등의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위반자, 위반 대상 승강기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력·예산 한계 극복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①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②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③ 계량기 조작사례

참고 1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非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kg 등이 기본 단위

- '07년부터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계도 중심으로 추진

< 추진경과 >



□ 법정단위(m²) 정착 현황

- 주요 언론매체(기사, 광고)의 m² 정착율은 '10년 대비 15.0% 증가
- TV뉴스와 경제신문 기사의 m² 정착율이 높으나, 일간신문의 기사 및 신문광고는 낮은 경향

(단위 : %)

연도	TV 방송	신문(기사)		신문 광고	평균
		일간지	경제지		
'14. 상반기	92.0	72.3	86.7	89.9	85.3
'13	92.9	69.9	85.7	82.4	82.9
'12	92.1	69.4	84.4	82.9	80.9
'11	93.4	67.6	84.0	72.7	77.4
'10	95.5	66.6	81.6	54.4	70.3
'09	94.5	70.4	79.8	50.0	69.0
'08	91.1	67.5	73.8	57.4	68.8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종

- 전국 29개 시·군·구의 675개 부동산중개업소 조사결과 “m²” 표기 24%, “평”표기 30%이며, “m²”와 “평” 병행표기는 46% ('13.12월)

* 1차, 2차 계도 후, '13.12월 1,328개 부동산업소 실태조사결과 “m²” 표기는 75%로 상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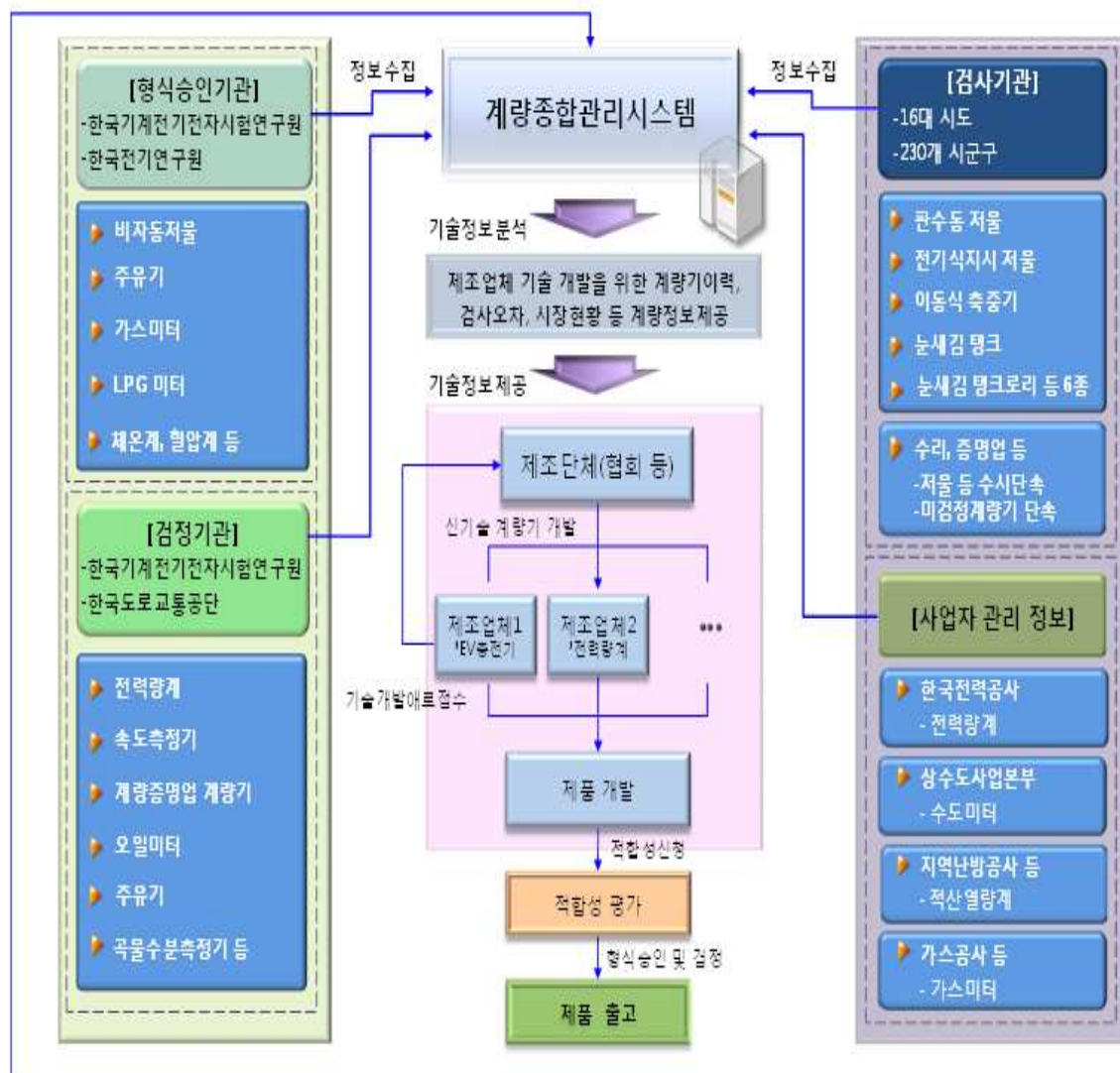
참고 2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2013.12기준)

□ 시도 지자체·인증기관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계량기의 검사·사용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DB 추진

- 기관별 비전산 형태의 계량 데이터 및 신규생성 데이터 중 주유기 등 생활 활용이 높은 계량기 위주로 DB화

* (DB화 대상 데이터) 형식승인·검정 데이터 : 1,000만건/년, 정기검사 데이터 : 25만건/년



참고 3

계량기 조작사례

연도	계량기별 조작사례		출처
2014년	전력량계	주유량 속여 82억원 ‘꿀꺽’ …… 신종 프로그램 설치	SBS
	적산열량계	‘난방비 0원 아파트’ 2만5917가구 더 있다	한국경제
		301호는 ‘80만원’ 302호는 ‘0원’ ‘수상한’ 난방비	머니투데이
		전용 59㎡ 거주 맞벌이 부부 1월 관리비가 41만원? “줄줄샌다”	중앙일보
	가스미터	도시가스 검침기 낱아, 연 5000억 더 징수	중앙일보
	주유기	주유기 조작... 정량 줄인 주유소 20여 곳 적발	YTN 외 2건
2013년	수도미터	사용자의 계량기 밸브 조작으로 인한 요금 과다 청구	조선일보 외 4건
		수도계량기 설치 기준 위반(역설치) 하여 사용량 기준 조작 및 요금 조작	연합뉴스
	주유기	주유기의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하여 양 조절	연합뉴스 외 1건
2012년	가스미터	가스미터 봉인 파손 후 계량기 조작	노컷뉴스 외 2건
	주유기	주유기의 전자기관 조작을 통한 양 조절	YTN 외 2건
		주유기의 메인보드 조작을 통한 양 조절	YTN 외 5건
		주유기 조작 프로그램을 통한 양 조절	SBS
	전력량계	전력량계 측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바늘을 넣어 원판 회전을 막음	KSB
	적산열량계	공동주택 난방 계량기 조작방지를 위한 관련 설치기준 개정	MBC 외 4건
2011년	수도미터	목용탕 등 상수도 계량기 조작	YTN
	주유기	리모컨 조작을 통한 주유 양 조절	SBS
	적산열량계	계량기 건전지 불법 제거하여 계량 조작(신도시 아파트 100세대 발견)	국회 국정감사
2010년	수도미터	수도미터 검침 바늘 조작을 양 조절	서울경제 외 1건
		수도미터 기어 파손을 통한 요금 감면 효과	YTN 외 3건
	전력량계	전자식전력량계 외함에 구멍을 뚫고 전류측정소자 훼손	부산일보

적합성정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적합성정책	304	312	560	248	79.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5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이동욱), 시험인증정책과장(김동호, 043-870-5480), 연구관(김종윤, 043-870-54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시험·검사·인증·품질업무 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분야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운영비(513백만원) 시험·검사·인증·계량 등 적합성정책 수립 및 운영지원

- 적합성정책 수행 지원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 131백만원 (1.82백만×12개월×6명)

- 적합성(시험·검사·인증·계량) 분야 운영*

= 120 백만원 (30백만원×4개분야)

* 숙련도 시험 시료(표준물질) 구입, KOLAS인정위원회 등 적합성 분야 회의수당 등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포상지원 = 262백만원

* 우수기업 선정 : 2일×3명×130기업×0.25백만원 = 195백만원

* 포상물 제작지원 : 6개 분야×559개×0.02백만원 = 67백만원

- ② 연구개발비(47백만원)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강화와 적합성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 47백만원 (47백만원 * 1개 과제)

□ 지원 필요성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술표준원 적합성분야 정책 수립·운영 예산 필요
-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적합성평가체계구축으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 시험인증서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 한국형 시험인증체계 수출지원 등을 통한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계량기, 실량상품 사후관리 등을 통해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 등을 통한 기업의 불량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품질경쟁력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적합성정책	304	312	560	248	79.5
▪ 운영비	255	265	513	248	93.5
▪ 연구개발비	49	47	47	-	-
☐ 비목	304	312	560	248	79.5
▪ 기타직보수(110-02)	-	112	118	6	5.3
▪ 일반수용비(210-01)	-	-	262	262	100
▪ 복리후생비(210-12)	-	2	2	2	100
▪ 시험연구비(210-13)	255	140	120	△20	△14.3
▪ 연구개발비(260-00)	49	47	47	-	-
▪ 연금지급금(320-03)	-	11	11	11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변화하는 국내·외 산업환경 및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합성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개발, 시험·평가 및 운영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2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장책 수행지원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125 백만원 (1.74백만×12개월×6명) - 적합성(시험·검사·인증·계량) 분야 운영= 140 백만원 (35백만원×4개분야) ▪ 연구개발비 = 47백만원 (47백만원 * 1개 과제)
'15	5.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51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장책 수행지원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131 백만원 (1.82백만×12개월×6명) - 적합성(시험·검사·인증·계량) 분야 운영= 120 백만원 (35백만원×4개분야)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포상지원 = 262백만원 ▪ 연구개발비 = 47백만원 (47백만원 * 1개 과제)
'16	4.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44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장책 수행지원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131 백만원 (1.82백만×12개월×6명) - 적합성(시험·검사·인증·계량) 분야 운영= 53백만원 (13백만원×4개분야)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포상지원 = 262백만원 ▪ 연구개발비 = 47백만원 (47백만원 * 1개 과제)
'17	5.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48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장책 수행지원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131 백만원 (1.82백만×12개월×6명) - 적합성(시험·검사·인증·계량) 분야 운영= 92백만원 (23백만원×4개분야)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포상지원 = 262백만원 ▪ 연구개발비 = 47백만원 (47백만원 * 1개 과제)
'18	4.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40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장책 수행지원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등= 131 백만원 (1.82백만×12개월×6명) - 적합성(시험·검사·인증·계량) 분야 운영= 13백만원 (3백만원×4개분야)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포상지원 = 262백만원 ▪ 연구개발비 = 47백만원 (47백만원 * 1개 과제)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원)

○ 추진경위

- '10. 11월 :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신설
- '11. 9월 :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설립
- '12. 7월 :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대통령보고
- '13. 5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
- '13. 10월 : 시험인증산업 국제심포지움(명동 포스트타워)
- '13. 12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장관보고
- '14. 1월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446	364	346	312	56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인한 지식기반표준화(7134-304)에서
15백만원 전용
- (2013년) 통상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 (2034-401) 연구개발비(260)로 9백만원 전용
-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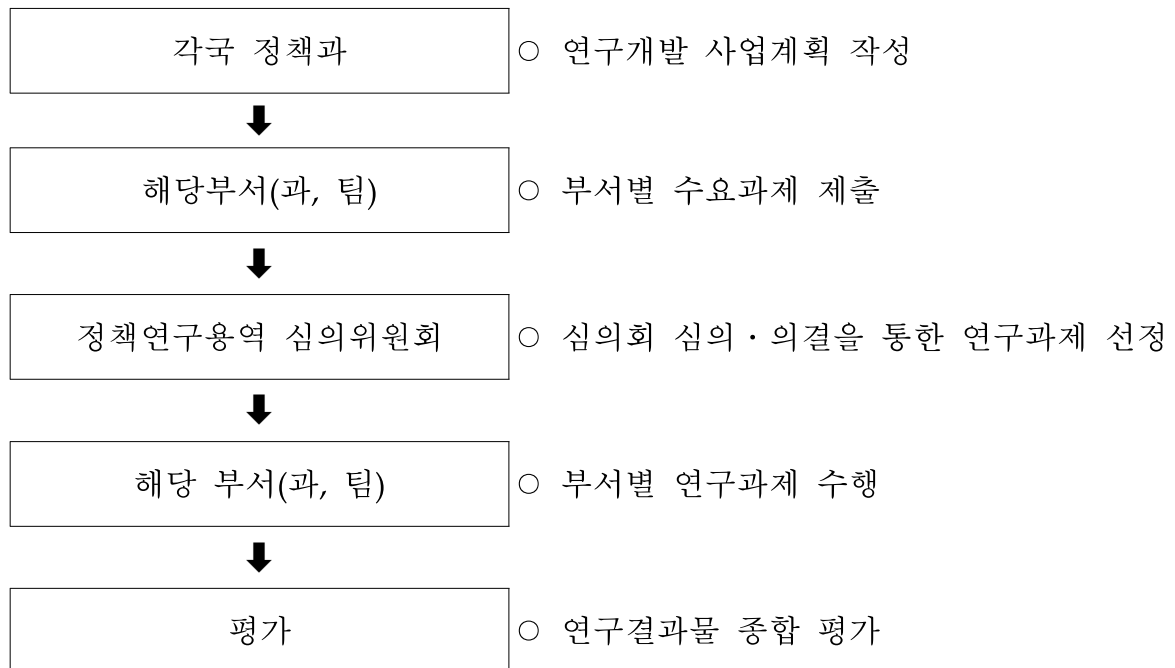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4.46		15	4.61	4.60		0.01
	()	()	()	()	()	()	()
'12년	3.64			3.64	3.64		
	()	()	()	()	()	()	()
'13년	3.46		△0.09*	3.37	3.04		0.33*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1,354	2,000	2,000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6 - 301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안종일), 기술규제정책과장(유동주, 043-870-5520),
연구관(임완빈, 043-870-5522), 연구사(김용득, 043-870-552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 당없음
사업규모	해 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무역기술장벽의 다변화 및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 WTO/TBT, FTA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등 TBT 업무의 국내 총괄조정 기능 및 TBT 중앙사무국 운영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711백만원
 - 해외 기술규제 조사·분석·대응 및 FTA TBT 협상, 이행 전략마련 지원
 - FTA TBT 협정 및 이행전략 연구 : 5국가 × 35백만원 = 171백만원
 - TBT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분석 : 1,140백만원
- * WTO TBT 통보문 요약문 번역 및 현황조사 : 2000건 × 70,000원/건 = 140백만원

- * 주요 기술규제 조사 및 규제원문 심층분석 : 200건 × 5백만원/건 = 1,000백만원
- TBT 미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심층분석 : 400백만원(80건 × 5백만원/건)

② TBT대응 국제협력 및 「TBT 중앙사무국 운영」 : 289백만원

- WTO, FTA TBT 위원회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 = 147백만원
- TBT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및 대응 회의 개최 : 55백만원
 - * TBT 대응 확산을 위한 행사 : 35백만원
 - * 전문가그룹 회의수당 : 20회 × 10인 × 10만원 = 20백만원
- FTA TBT 협정 관련 법률 자문 = 4건 × 10백만원 = 40백만원
- FTA/TBT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 2건 × 10백만원 = 20백만원
- TBT 중앙사무국 운영 = 2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세계 각국은 안전·건강·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 기술장벽(TBT)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 WTO TBT 통보문 : ('06) 875건 → ('08) 1,251건 → ('10) 1,419건 → ('13) 1,626건
- 최근에는 기술규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국가로까지 다변화 및 강화되는 추세임
 - * 現, WTO TBT 통보문의 심층분석을 통한 기술규제 대응은 180건/년 정도로 이는 100억원 이상 수출하는 기업 대상의 규제 사항이며, 20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420건/년 정도의 심층분석이 필요
- 선진국의 기술규제는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투명성이 부족
 - * 개도국의 기술규제 적용범위도 제품에서 제조공정, 운송, 회수 및 폐기 등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되는 추세
- WTO에 통보되지 않는 기술규제는 총 규제의 40% 정도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미통보 기술규제의 발굴·분석을 통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
- 양자·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상대국의 새로운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에 전달하여 사전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1,354	2,000	2,000	-	-
▪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1,104	1,211	1,711	500	41.3
▪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250	289	289	-	-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구축	-	500	-	△500	순감
☐ 비목	1,354	2,000	2,000	-	-
▪ 일반수용비(210-01)	88	120	114	△6	△5.0
▪ 임차료(210-07)	23	27	27	-	-
▪ 국외업무여비(220-02)	133	136	136	-	-
▪ 사업추진비(240-01)	6	6	12	6	100
▪ 연구개발비(260-00)	1,104	1,711	1,711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인 무역 기술규제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대응 지원 서비스 운영
-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을 규제 입안 초기단계에 입수·분석하여, 협상, 공식 이의제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
 - WTO, FTA TBT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등 TBT 업무의 국내 총괄 조정기능 및 TBT 중앙사무국 운영
 - 무역기술규제(TBT)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화(single window)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TBT대응 서비스종합허브' 운영
-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견을 반영한 양자 및 다자 협의 신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2.1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 2.9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구축 : 5
'15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7.1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 2.9
'16	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4.7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 2.9
'17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6.1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 2.9
'18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3.6 ▪국제협력 및 중앙사무국 운영 등 : 2.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한·미 FTA 협정('07)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WTO TBT 협정문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이하 생략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한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 한·미 FTA 협정('07)

한·미 FTA TBT 협정문

제9.6조 (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 한·EU FTA 협정('10)

한·EU FTA TBT 협정문

제 4.10 조(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부속서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 추진경위

- '06.6 FTA 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 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 '10.2 '기술보호무역주의 선제대응체제' 구성
- '10.11 기술규제서비스과로 과명 변경
- '10.12 TBT KOREA 2010 컨퍼런스 개최(외교부, 기재부, 복지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주한EU, 상공회의소 등 참여)
- '12.7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4.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신설(정부조직개편)
- * 국정과제 1-5-1(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8.13	8.13	15	20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불용액 1.46억원은 예산 절감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15			8.15	8.13		0.02
	()	()	()	()	()	()	()
'12년	8.13			8.13	8.12		0.02
	()	()	()	()	()	()	()
'13년	15			15	13.54		1.46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예정처 검토 의견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확대·강화중인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 필요함
-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음
 - 원칙적으로 증액이 필요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WTO 회원국의 질의처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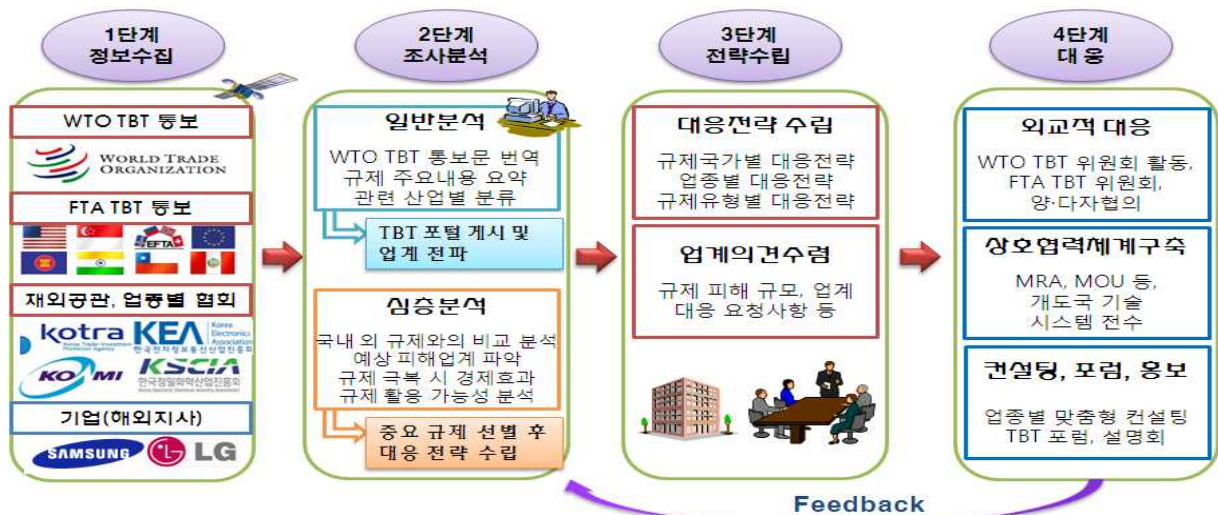
◇ 사무국을 설치한 136개 국가중 113개 국가(83%)가 단일 사무국을 운영

사무국(개수)	1개	2개	3개	4개
국 가	113개 국가	13개 국가	6개 국가	4개 국가

◇ WTO/TBT 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관련 정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타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보급해야 함

- EU
 - EU 공동위 산업국에 TBT 지원팀을 운영하여 EU 회원국 27개국에 대한 의견조정 총괄기구 및 대외창구 역할 수행
 - FTA 체결국간의 정보제공 및 질의회신 등의 역할
- 미국
 -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국립표준인증정보센타(NCSCI;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를 설치하여 연방 및 51개주를 대표하는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 상무부 Technical Compliance Center에서 해외기술규제, 업계의 수출 애로 모니터링, 미국무역대표부(USTR)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도모
- 중국
 -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AQSIQ;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 International Inspection and Quarantine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Research Center를 설치하여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5) 사업추진절차



* 통보시점은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TBT 위원회에서는 6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권장함(협정문 제2.9조)

- **TBT 대응 컨소시엄 운영** : 전기전자 등 3개 분야, 18개 단체가 관련 업계와 품목별 전문가그룹인 18개 품목협의회, 3개분석기관이 TBT 대응활동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WTO TBT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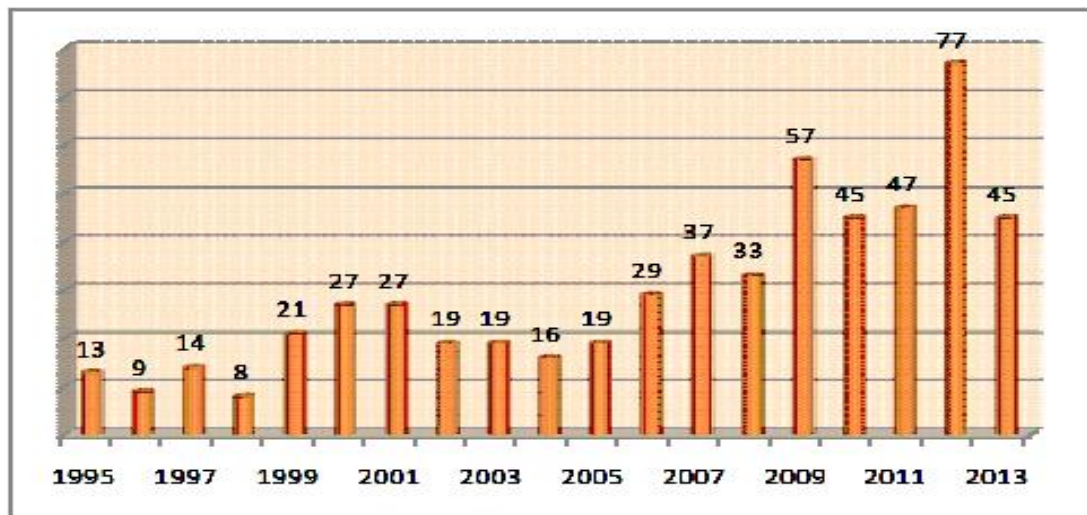
1. TBT 통보문

2013년 WTO 회원국들의 신규·개정 통보문은 총 1,626건이었으며(1995년 WTO 설립 이래 최고치), 추가통보문은 467건, 수정통보문은 42건이었다. 1995년 WTO TBT 협정이 발효된 이후 2013년 말까지 TBT 통보문 누계는 신규·개정 통보문 17,418건, 추가통보문 3,150건, 수정통보문 523건이었다.

<연간 TBT 통보 및 특정무역현안 건수>

(단위: 건)

연도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통보문수	364	461	799	650	674	608	547	587	797	640	764	876	1,085	1,263	1,492	1,432	1,230	1,571	1,626
STC 수	4	6	11	16	11	17	22	32	27	27	24	36	46	58	74	61	75	94	73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TBT 통보문 건수>

※ '13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건수는 총 34건으로 WTO TBT 위원회(년 3회)에서의 STC 제기 및 TBT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양자회의 개최 등을 통한 대응임
2013년의 TBT 통보문을 기술규제의 목적별로 보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환경 보호, 품질 규정, 기만적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하나의 통보문에 여러 개의 규제가 포함될 수 있어 목적별 통보건수()는 통보문 건수보다 많음

<목적별 TBT 통보문 현황>



2. 특정무역현안 (STC, Specific Trade Concerns)

2013년 3회에 걸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 기존 특정무역현안 31건과 신규 특정무역현안 42건 등 총 73건이 제기되었다. 2012년 특정무역현안 94건이 제기되어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다소 하락하였지만 1995년 이후로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차별 신규 및 계속 특정무역현안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신규 현안	4	6	11	13	5	13	15	20	15	14	12	24	27	32	46	29	43	35	42
계속 현안	-	-	-	3	6	4	7	12	12	13	12	12	19	26	28	32	32	59	31
합계	4	6	11	16	11	17	22	32	27	27	24	36	46	58	74	61	75	94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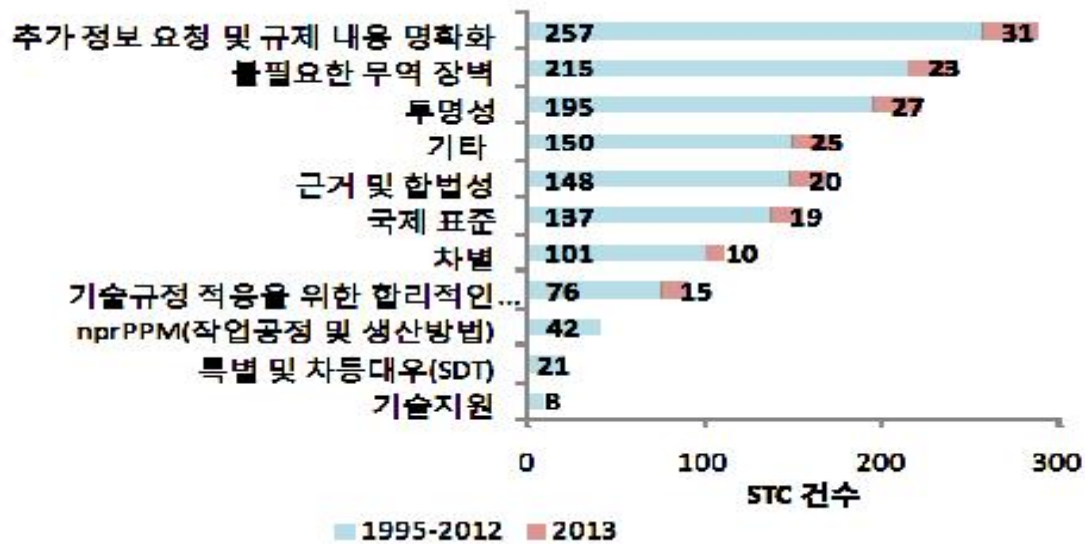
<2006년 이후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

연도 내용	'06	'07	'08	'09	'10	'11	'12	'13
위원회 전체현안(건)	36	46	58	74	61	75	94	73
아국제기 현안(횟수)	4	4	9	10	13	19	16	10
아국대상 현안(횟수)	6	4	4	5	5	16	14	8

<2013년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10회, 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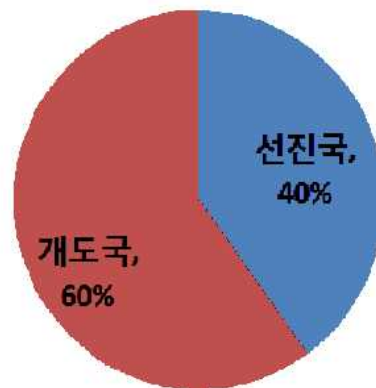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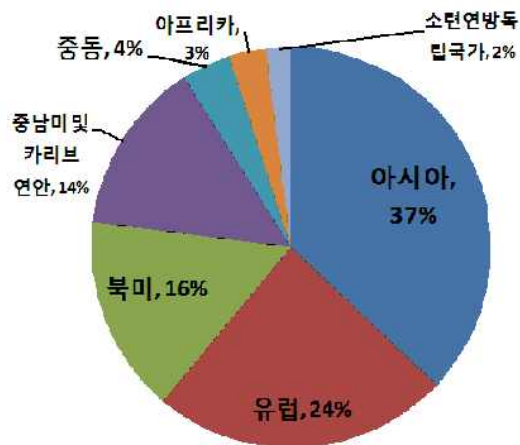
회의명	번호	대상국가	특정무역현안
2013년 1차 회의	1	인도	전자 및 정보기술제품 규제
	2	EU	LED 에코 디자인
	3	호주	물 효율 라벨제도(WELS)
	4	인도	타이어 인증제도
2013년 2차 회의	5	EU	불소화온실가스 규제안
	6	인도	전자 및 정보기술제품 규제
	7	인도	타이어 인증제도
2013년 3차 회의	8	인도	타이어 인증제도
	9	EU	불소화온실가스 규제안
	10	중국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등록신청 허용 방안

<특정무역현안 제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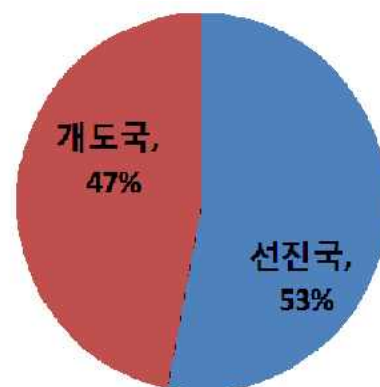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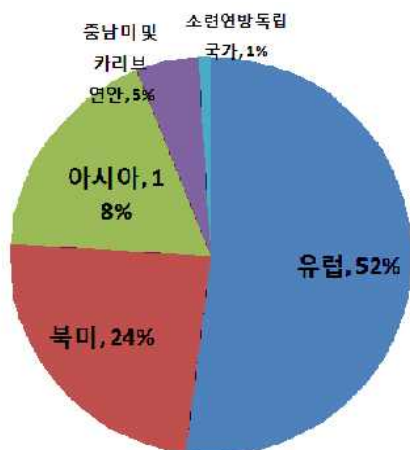


특정무역현안 대부분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의 기술 규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아프리카, 구소련연방 독립국 및 중동 지역의 현안은 극소수가 제기되었고 저개발국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특정무역현안 제기 받은 지역별 회원국>



<특정무역현안 제기한 지역별 회원국>



참고2 TBT 미통보 기술규제 조사 · 분석체계

1. 배경

- 비관세장벽 중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의 비중이 가장 크고 (34%, '10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

* WTO에서 발행한 WTO Trade Report 2012

* 기술규제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강제 시험·인증제도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 중 기술규제가 선진국은 74%, 개도국은 49%를 차지(공산품)

-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 중 WTO에 통보되지 않는 기술규제가 전체 규제의 40% 정도로 추정

* 국제표준과 다르고 무역에 영향이 있는 기술규제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특정무역현안(건)	61	75	94	73
미통보 기술규제(건)	21(34.4%)	27(35.5%)	31(32.9%)	29(39.7%)

< WTO 특정무역현안 중 TBT 미통보 기술규제 >

- WTO에 미통보된 기술규제의 기술장벽 요소와 주요 기술규제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통보가 없는 기술규제 입수체계가 필요

2. 추진 내용

- (조사) 수출규모, 경제성장률, 규제 도입 증가율 등이 높은 주요 수출국, 신흥국 등에 대해 통보가 없는 기술규제를 조사

- (품목) 주요 수출품목, 중소기업 수출품목, 주요 규제품목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조사 품목을 선정

* 국가별로 50대 수출품목 선정 후, 수출 증가량 및 해당 국가의 수요 증가량, 중소기업 수출품목, 규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 품목을 선정

- 조사한 기술규제 번역, 분석, 기업 애로사항 발굴하고 양자·다자협의를 추진하여 규제 시행 이전에 애로사항을 해소

* (분석 내용) 무역장벽적 요소 포함 여부 검토, 규제 시행 시 우려되는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발굴

참고3 TBT 미통보 기술규제 사례

【 TBT 미통보 대응사례 】

베트남 에너지 효율규제

- (개요) 베트남은 램프, 에어컨, 냉장고 등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12년 4월에 기술규제 도입을 발표하고 '13년부터 시행
* 에어컨 對베트남 수출 : 1.4천만불('11년)
- (애로 사항) WTO에 TBT 통보가 없어, 수출기업이 규제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규제 시행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려움
* 짧은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시험, 제품등록을 추진하여 규제 시행이전에 시험조차도 완료하기 어려웠음
- (대응 활동) 공식 의견서('12.9), 베트남 에너지부 방문('12.10) 등을 통해 규제 시행유예 또는 국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수용 요청
- (대응 결과) 베트남은 우리나라 시험소를 시험기관을 지정('12.11) 하여 국내에서 수출제품에 대해 시험 실시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규제

- (개요) 싱가포르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을 개정하고, '14년 9월부터 시행
* 대상제품 對에콰도르 수출 : 4천만불('13년)
- (애로) 강화된 기준에 맞는 제품개발로 인해 시행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시험방법 등 상세한 규정 파악이 어려움
* 기존 인증제도의 4등급 → 개정된 인증제도의 2등급에 해당
- (대응) 공식 의견서('14.2) 등을 통해 시행유예 또는 국내 시험성적서 수용을 요청하고 상세한 규정 제공을 요청
- (결과) 싱가포르는 시행유예는 불가하나 국내 시험성적서를 수용하고 인증철차를 간소화할 것임을 답변함('14. 6)

에콰도르 타이어 안전 인증

- (개요) 에콰도르는 타이어 인증기관 요건을 변경하고 '13년 5월부터 시행하나, WTO에 TBT 통보가 없었음
* 대상제품 對에콰도르 수출 : 1.8천만불('12년)
- (애로) 에콰도르가 요구하는 인증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인증기관 목록을 파악하지 못해 수출이 중단됨
* 특정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수용
- (대응) 공식 의견서('13.4), WTO TBT 위원회('13.6) 등을 통해 인증기관 요건 및 인증기관 목록 제공을 요청
- (결과) 에콰도르는 변경된 인증기관 요건을 제공('13.7)

참고4 TBT 대응 성공사례

【 TBT 대응 성공사례】



EU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 (개요) EU는 불소화 온실가스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쿼터제, 사용량 보고, 냉매의 사전충전금지 등 규제 도입을 발표함('13. 2)
 - * 대상제품(냉장고, 에어컨, 히트펌프 등) 對EU 수출 : 4.3억불('12년)
 - * 불소화온실가스 : HFCs, PFC, SF₆ 등 F(불소)를 포함한 가스
- (애로 사항)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따라, 기업은 제조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 냉매가스를 충전하여 제품을 출하하나, 동 규제가 시행되면 가스회수 공정을 추가해야 하며 회수과정에서 제품 성능저하도 발생
- (대응 활동) 공식 의견서('13.4), WTO TBT 위원회('13.6, '13.11), 한·EU FTA('13.9) 등을 통해 사전충전금지 철회를 요청
- (대응 결과) EU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충전금지 조항을 철회함



인도

전자제품 안전인증

- (개요) 인도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를 '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12. 10)
 - * 대상제품 對인도 수출 : 8.8천만불('11년)
- (애로 사항) 인증 수요에 비해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7개)이 부족하여, 시행일까지 기업의 인증획득이 어려움
 - * 시행일('13.4)까지 수출제품의 40% 정도만 시험 가능
- (대응 활동) 공식 의견서('13.1), 규제기관 방문('13.2), WTO TBT 위원회('13.3) 등을 통해 인도에 규제시행 6개월 연기를 요구
- (대응 결과) 인도에서 규제시행을 2차 연기하고 하여 '14년 1월부터 시행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	1,119	1,119	순증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6 - 302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조영신), 기술규제조정과장(한상미, 043-870-5550), 사무관(한필구, 043-870-55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부처별 시행되고 있는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관련 규제개혁과제 발굴·조사·연구를 통한 규제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840백만원

- 각 부처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600건 × 1.4백만원¹⁾ = 840백만원

1) 1건당: 0.20×7day=1.40

② 국내 기술기준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111.4백만원

- 기존 기술기준 중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과의 불일치 사례 및 이로 인한 기업불편 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700건 × 0.15백만원¹⁾ = 105백만원

1) 1건당: 0.30×0.5day=0.15백만원

* 자료구입비: 6.4백만원

③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82.6백만원

-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향후 무역마찰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신설 및 기존 기술규제 영향평가 시 전문가의 정밀검토를 위한 사업비

* 포럼: 10백만원 × 2회 = 20백만원

* 자문위원회: 전문가(0.30) × (6 × 8 × 4)¹⁾ = 57.6백만원

1) 6개 분야(분야별 8명), 자문위원회 운영(4회)

* 업무추진비: 5백만원

④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85백만원

- 기업현장의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중심의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사업비

* 애로 발굴 및 기업실태조사: 전문가(0.30 × 250기업) = 75백만원

* 국내여비: 5백만원

* 업무추진비: 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범부처 기술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구축과 규제총량제 실시 등 국정 과제(136-4)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규 예산 편성 필요
 -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및 '규제총량제' 도입
 - '덩어리 규제'의 해제, 일몰제 개혁 추진 계획, 네거티브 규제 개혁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규제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등록규제건수: ('10) 13,406건 → ('13) 15,066건으로 증가
 - 부처 운영 기술기준(2만여종) 및 국가표준(KS, 2만여종)과의 불일치 관리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	1,119	1,119	순증
▪ 기술규제영향평가	-	-	840	840	순증
▪ 국내 기술기준 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	-	111.4	111.4	순증
▪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	82.6	82.6	순증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	-	85	85	순증
□ 비목	-	-	1,119	1,119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	-	65	65	순증
▪ 임차료(210-07)	-	-	30	30	순증
▪ 국내여비(220-01)	-	-	5	5	순증
▪ 사업추진비(240-01)	-	-	10	10	순증
▪ 연구개발비(260-00)	-	-	1,009	1,009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각 부처의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 부적절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범 부처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시험·검사·인증중복, 국제표준 불일치 등의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의 이중부담 감소
- 과도한 절차, 타 법령과의 내용 중복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행정 비용 감소 및 부처 간 칸막이 해소로 기업의 애로 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	
'15	11.19	▪ 기술규제영향평가 8.4 ▪ 국내 기술기준 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1.114 ▪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0.826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0.85	
'16	9.85	▪ 기술규제영향평가 7.5 ▪ 국내 기술기준 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0.8 ▪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0.8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0.75	
'17	10.64	▪ 기술규제영향평가 8.0 ▪ 국내 기술기준 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0.614 ▪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0.8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0.65	
'18	9.04	▪ 기술규제영향평가 7.5 ▪ 국내 기술기준 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0.34 ▪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0.7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0.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97호, '12.12.13)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 '13.4.15)

○ 추진경위

- '12.12.12. 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3.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신설
- '14. 4.12. 국정과제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136-4.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국정과제 번호 변경)
- '14. 8.2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제7조제1항제5의2호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 작용 요소의 유무 및 그 정도'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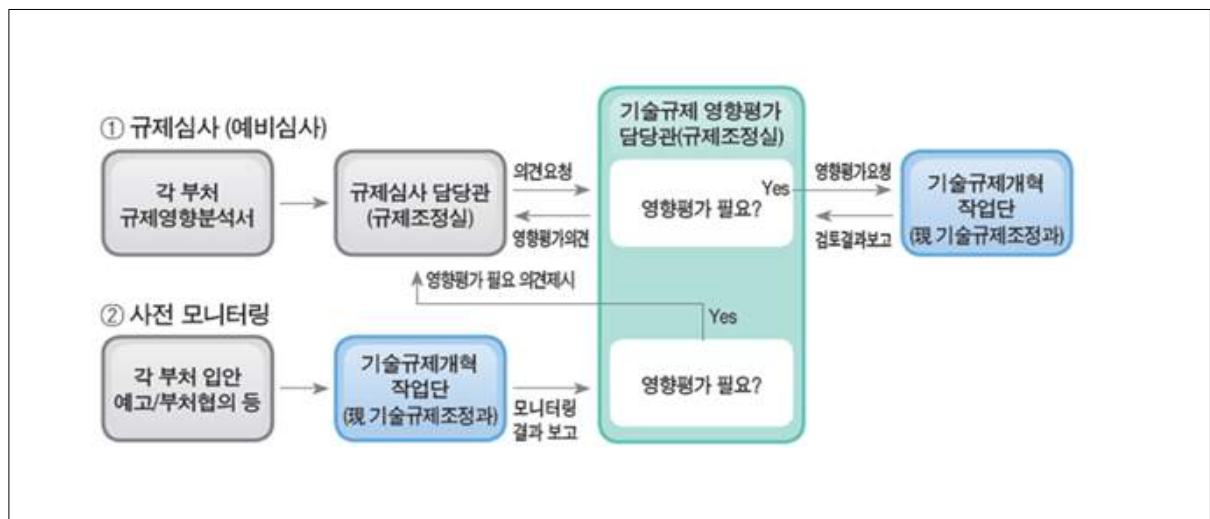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	-	-	11.1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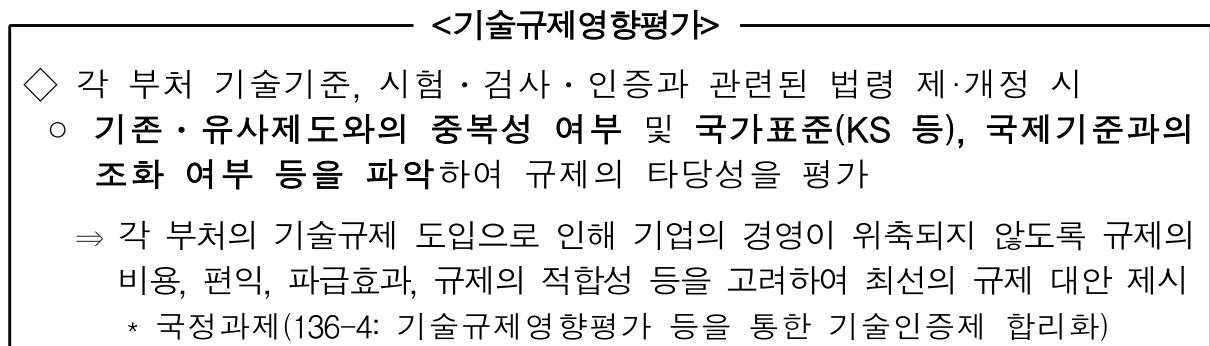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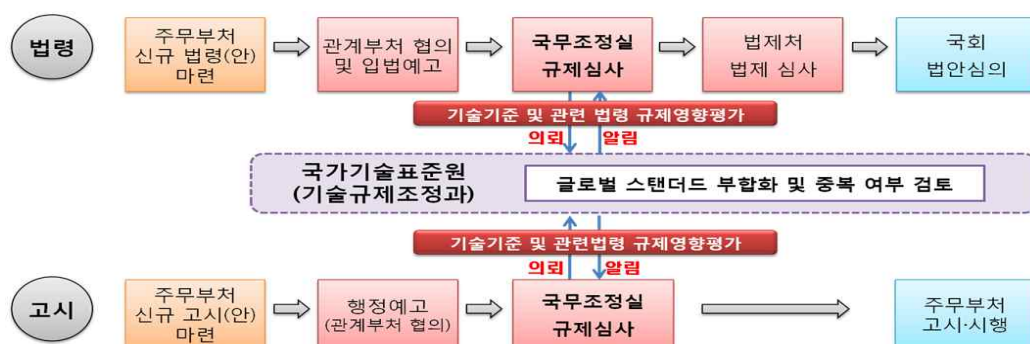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기술 및 산업융합시대에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혁은 시장 활성화 기반
 - 기술기준과 국가표준, 국제표준의 불일치는 수출용과 국내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시험·인증 중복문제를 발생시켜 기업의 부담 가중
 - * 등록 규제 건수: ('10) 13,406건 → ('13) 15,066건
 - * 기술기준(2만여종), 국가표준(2만여종)
 - 복잡한 절차로 인한 과도한 기술규제로 기업의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하여 시의 적절한 출시를 막고 있음
- 국내 기술규제선진화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 개도국의 저급 제품 및 신제품 개발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기술규제가 증가하나, 투명성 및 국제기준 미확보로 이의 제기 증가
 - * WTO/TBT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은 계속 증가, 한국에 제기된 누적건수 28건(세계 4위)
- 기술규제영향평가 개요



○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 국무조정실에서 영향평가 의뢰가 들어오면 검토 후 10일 이내 송부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900	900	890	△10	△1.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3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조영신), 기술규제협력과장(최철호, 043-870-5560), 연구사(강영식, 043-870-556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전액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개도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컨설팅·포럼·양자프로젝트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협력국의 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시험인증산업 진출 기반 마련
- 한국형 표준·인증체계의 개도국 전수를 통해 기술무역장벽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형 표준·인증체계의 확산을 통한 기술한류의 기반을 구축에 일조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 : 260백만원

- 아프리카표준화기구(ARSO), 남미표준화기구(COPANT), 중동표준화기구(GSO), 아세안표준화기구(ACCSQ),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공동으로 전략국가 대상 표준, 시험인증, 계량관련 초청과정 운영

* 52명(초청인원수) × 5백만원(1인 평균 교육운영비) = 260백만원

②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 300백만원

- 협력국 기술표준인프라 향상 및 우리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국가 표준역량진단 컨설팅, 공동연구, 워크숍, 전문가 활동지원 등

* 6개국 × 약50백만원(1개국 평균 프로젝트 비용) = 300백만원

대상국	주요 내용
베트남	국가표준역량진단 공동연구, 한국형 계량법 및 하위규정 연구 및 건설분야 한국표준(KS)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등
몽골	건설분야 제도 개발, 장비·시험인프라 구축 및 한-몽골 건설 표준 비교 공동연구 등
에콰도르	시험인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볼리비아	계량법체계 및 계량시험소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
브라질	한-브 기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강제기술규제 대응
페루	전기안전 시험인증원 건립지원을 위한 페루정부와 공동연구, 전문가포럼 운영, 기술기준 제정 등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등과도 사전협의 추진

③ 시험인증기관 건립 지원 : 170백만원

- 베트남, 에콰도르 등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개도국 현지시장 진출 및 시험인증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 시험인증기관 설립지원 컨설팅을 통해, 유망한 시험인증분야를 발굴하고 KOICA 또는 EDCF 사업과 연계하여, 수원국에 시험인증기관 건립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관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추진

④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 강화 : 160백만원

- 한국형 콘텐츠, 국가표준역량진단툴 등 콘텐츠 개발·개선 : 120백만원
- 프로그램 기획(동향조사), 전문가포럼 구성·운영 : 40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 개도국표준 체계 보급지원	900백 만 원	890백 만 원
▪기술표준초청 과정운영	(260백 만 원) 초청인원은 전년과 동일수로 진행 하되, 전략국위주로 대상국집중 및 국제·지역기구와 공동과정 개최 강화	(260백 만 원) 전략국 위주로 대상국을 집중하여 양자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강화하고 국제·지역기구와 공동과정 개최 강화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300백 만 원) 표준체계보급 공동연구, 국가역 량진단컨설팅 등 6개 국가별 프 로젝트 심층협력 강화	(300백 만 원) 표준체계보급 공동연구, 국가역 량진단컨설팅 등 6개 국가별 프 로젝트 심층협력 강화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190백 만 원)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을 위한 페루정부와 공동 연구, 기술기준 제정, 법제도 구축 컨설팅 추진	(170백 만 원) 베트남, 에콰도르 등 시험인증기 관 설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기 술기준 제정 지원
▪한국형 표준 체계확산 기반 강화	(150백 만 원) 표준화 성공사례 연구 등 한국형 컨 텐츠 심화개발, 국가표준역량진단 톨 보강, 전문가포럼 활성화, 정보체 계 보강	(160백 만 원) 표준화 성공사례 연구 등 한국형 컨 텐츠 심화개발, 국가표준역량진단 톨 보강, 전문가포럼 활성화, 표준컨 설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 지원 필요성

-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 * 인도네시아 및 인도가 철강인증, 에콰도르가 전기용품인증을 최근 도입
- 이에, 동 지역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촉진 필요
- 단순히 개도국에 우리 경험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기술 표준 및 법제도를 이식하여 기술규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국가적 협력 사업 (21번 국정과제)

- 현재 추진 중인 「페루, 한국형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 구축」 사업의 경우, (한국정부) 기술규제와 FTA 사전·사후 대응 및 수출 활성화, 시험인증기관·기기업체 진출, (페루정부) 안전관리제도 구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한국기업) 페루에 저품질제품 유입차단을 통해 자사 제품 판매 증가 및 新시장 개척 등의 기대효과 예상
- 국가필수 인프라인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은 신흥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실제로 개도국의 많은 교육 및 협력사업 요청이 쇄도
 - 또한, 동 사업은 개도국과 기술무역장벽(TBT)관련 대응시, 표준 협력사업을 협상의 촉진제로도 활용
 - * 인도네시아와 타이어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도입관련, 협상을 통해 시행시기를 연기시킴
- 동 사업은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한 국가적 기술외교 업무에 해당
 -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1국 1투표권 제도'로 인해,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선 최대 우호국 확보가 관건
 - 이러한 개도국과의 표준체계 구축지원은 일회성 수익사업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임
- ODA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26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40여개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전개하여,
 -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화제도, 관련기술 및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 FTA 협상 및 체결 시 양국 간 TBT협정문에 명시되는 기술규제 협력 실무이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900	900	890	△10	△1.1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260	260	260	-	-
▪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300	300	300	-	-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190	190	170	△20	△10.5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150	150	160	10	6.7
한국형 기술표준 콘텐츠 개발	-	110	60	△50	△45.5
국가표준역량진단 툴 개선	-	-	60	60	순증
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포럼 운영	-	40	40	-	-
☐ 비목	900	900	890	△10	△1.1
▪ 민간이전(320-01)	900	900	890	△10	△1.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 수출전략지역 주요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법, 제도, 기술기준, 장비, 인력 등) 전수를 통해,
 - 동 국가의 표준체계 부재·상이함으로 인해 시장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FTA(TBT) 대응 강화
 - 우리 시험인증기관 및 기기업체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親한국 네트워킹 구축)** 국제표준화 분야에 친한국형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우방국을 확보하고 한국의 영향력 극대화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및 기술위원회 등 임원진출 확대 및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채택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300백만원 (6개국×50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9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 150백만원
'15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300백만원 (6개국×50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7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 160백만원
'16	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383백만원 (6개국×약64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7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 150백만원
'17	1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479백만원 (7개국×약68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7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 150백만원
'18	1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24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85백만원 (7개국×약84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7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 1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02년)」의 일환으로, 개도국과 비정기적인 협력사업 시작

* 2000.11월 ASEAN+3 정상회담 시, VIP께서 ASEAN 국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분야 교육훈련계획 발표

-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인,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 제품 유통 등 안전문제가 발생 및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 우리 기업들도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도국의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동 사업은 '10.12.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 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 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ODA사업으로 독자 추진
-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2013년 국정과제 129번(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포함됨
- * 2014년 현재, 동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21번(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에 포함되어 있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8.9	9.0	9.0	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UN은 UNIDO를 중심으로 시험, 인증, 계량측정, 표준화, 인가 등 5개 분야에서 필요한 TCB(Trad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ISO, ILAC, IAF, OIML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

- EU는 EuroeAid(유럽원조협력청)을 '01년에 발족,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인 독일, 스웨덴, 영국 등과 공동으로 표준, 적합성, 품질관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장기 전문가파견, 집체교육, 현지워크샵 등

-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표준화 우군확보 및 일본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해 표준 및 적합성 평가분야 교육을 추진해왔고, 특히 '01년부터 '아세안 표준인증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전폭적 예산투입으로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 추진

* METI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기구(JICA),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일본무역기구(JETRO)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

- 미국은 USAid(국제개발처)를 통해 표준·적합성평가 분야 협력을 추진중이며, WTO가입에 요구되는 국제제도를 갖추도록 수원국의 제도 구축·개선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

* NIST, FDA, DOC 등의 부처에서 민관합동으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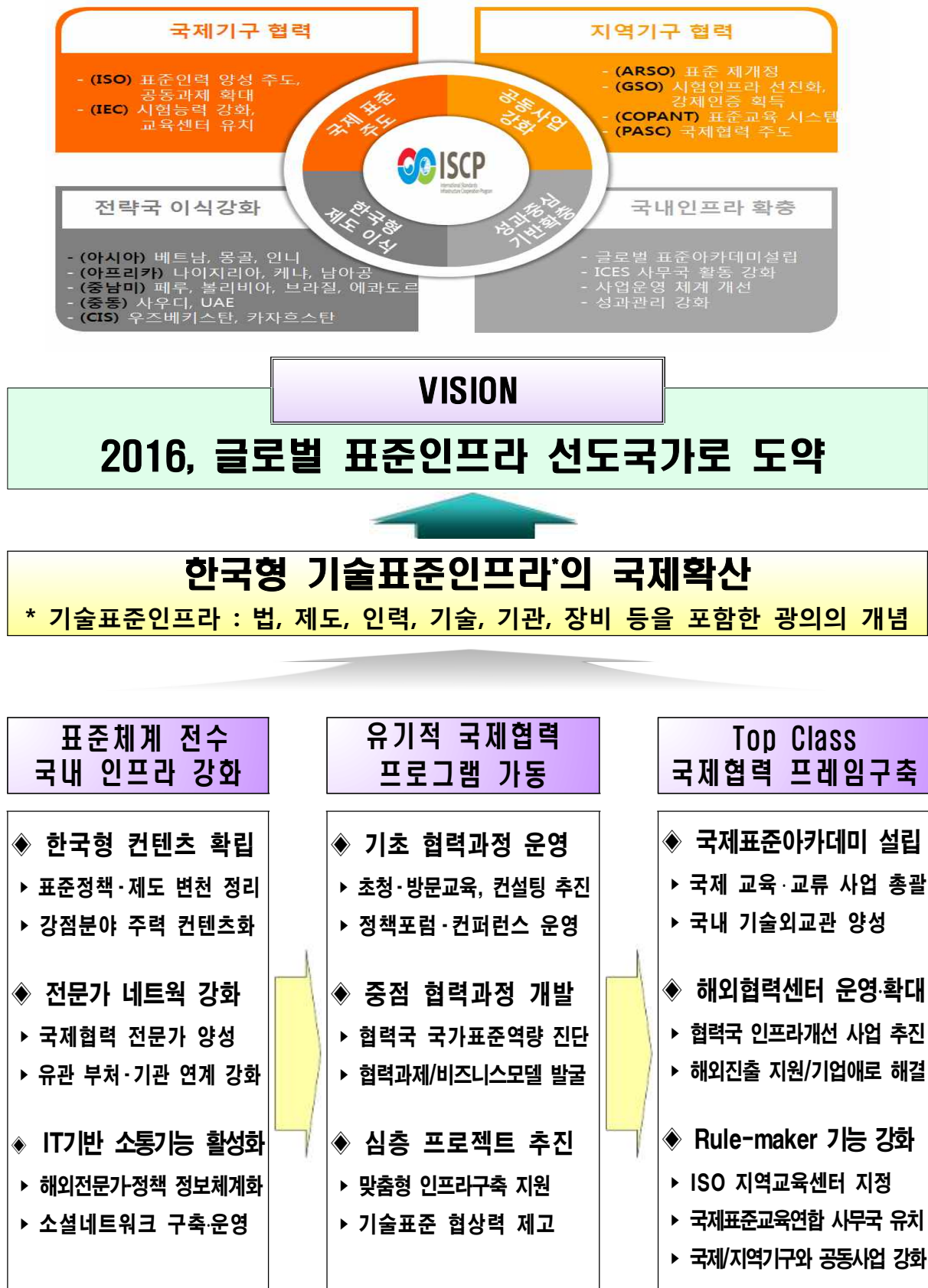
(5) 사업추진절차

-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한국형 표준체계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



○ 해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610	595	676	81	13.6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0 - 301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조영신), 기술규제협력과장(최철호, 043-870-5560), 주무관(박성환, 043-870-55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정책업무 수행 지원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①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구축) : 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등 기능개선 용역사업 : 120백만원
 -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302.5	0.8398	1.00	1.10	-	22,053,355
설계	124,609					-	27,857,093
구현	166,145					0.80	37,142,716
시험	129,801						29,017,796
개발금액(이윤 및 VAT포함, 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120,000,000

②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운영/유지보수) : 84백만원

-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 60백만원

· 전송 · 보안장비 등 설치(60백만원)

⇒ 유형1(운영/유지보수),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전송장비(네트워크허브)	3식(12대)	20,000,000	60,000,000
합 계(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60,000,000

- 업무용 S/W 구매 : 24백만원

·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10백만원), PC용 바이러스 백신(14백만원)

⇒ 유형1(운영/유지보수), 유형2(운영/유지보수), 비목(일반수용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30개	340,000	10,200,000
PC용 바이러스 백신	500개	28,000	14,000,000
합 계(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24,000,000

③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유지보수) : 300백만원

-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 300백만원

⇒ 유형1(운영/유지보수), 유형2(운영/유지보수), 비목(시설장비유지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6(1명x6개월)	24(2명x12개월)	24(2명x12개월)
노임단가		266,590	219,469	182,194
인건비		1,599,540	5,267,256	4,372,656
월평균일수		21.0		
직접인건비합계		236,028,492		
제경비	직접인건비x10%	23,602,849		
기술료	(인건비+제경비)x5%	12,981,567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x10%	27,261,291		
합 계(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300,000,000		

④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구축) : 84백만원

- 보안시스템 등 구매 : 84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자료전송시스템(업무망, 인터넷)	1식	84,000,000	84,000,000
합 계(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84,000,000

⑤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구축(구축) : 88백만원

- 통합시스템 기획(ISP) : 88백만원

⇒ 유형1(기획), 유형2(기획), 비목(연구개발비)

구분	노임단가	투입공수(MM)	한달 일수	금액
수석컨설턴트	400,000	1	21	8,400,000
책임컨설턴트	350,000	2		14,700,000
전임컨설턴트	300,000	1		6,300,000
컨설턴트	250,000	2		10,500,000
직접인건비 합계				39,900,00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90%)				35,910,000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10%)				7,581,000
직접경비				5,000,000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88,000,000

□ 지원 필요성

- 기술표준행정의 연속성 보장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유지보수 예산 지원 필요
- 제품안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동 제품안전정보의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
 -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등 4개 과제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14.8.21)” 상정
 - 국표원(리콜, 인증정보), 공정위(소비자위해정보), 소방청(제품화재 정보), 관세청(통관정보)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610	595	676	81	13.6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120	120	-	-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	249	135	84	△51	△37.8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7	250	300	50	20.0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134	90	84	△6	△6.7
▪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구축	-	-	88	88	순증
☐ 비목	610	595	676	81	13.6
▪ 일반수용비(210-01)	24	25	24	△1	△4.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27	250	300	50	20.0
▪ 연구개발비(260)	-	120	208	88	73.3
▪ 시설비(420-03)	40	-	-	-	-
▪ 자산취득비(430-01)	319	200	144	△56	△28.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정책업무 수행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보 통합본리 및 서비스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1x135백만원) ▪ 통합유지보수체계 운영 관리(1x25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교육장 설치(1x90백만원)
'15	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1x84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1x3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84백만원) ▪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1x88백만원)
'16	6.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1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1x84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1x33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84백만원)
'17	6.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1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1x84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1x34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84백만원)
'18	6.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1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 SW 구매(1x84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1x33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84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표준 기본법
 -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3차 국가표준 기본계획(2011~2015)
- 산업표준화법
 -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 무역상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제2조 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8.11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정보화추진위원회)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4.5월 : '14년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미래부)에 반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 체계구축	8	6.8	6.46	5.95	6.7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1년
 - 전용 : 신규 및 기 운영 중인 서버 보안을 위한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신규 구입,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백신 프로그램 구입 사유로 여비 5백만원을 동 사업의 운영비로 전용
 -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0백만원
- '12년
 -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백만원

○ '13년

-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백만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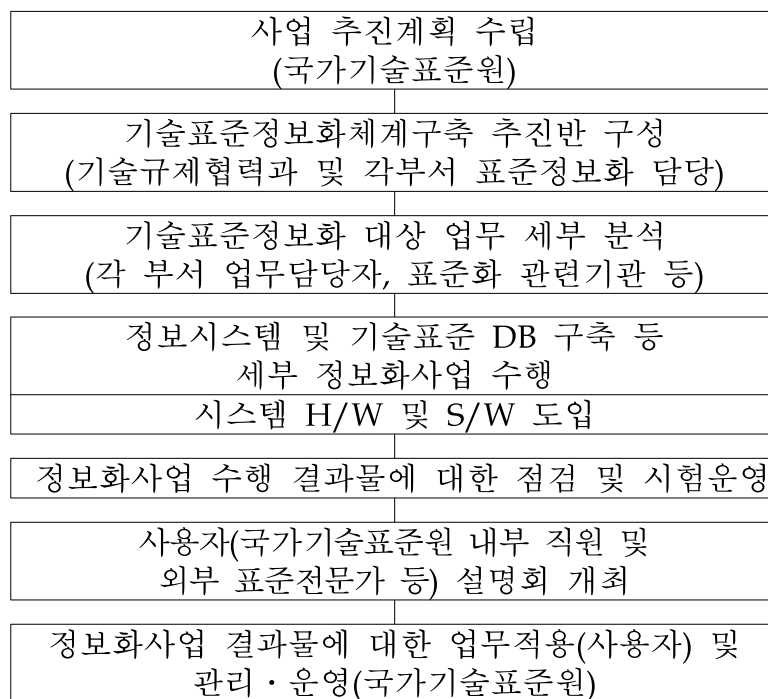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8	0	±0.05	8	7.8	0	0.2
	()	()	()	()	()	()	()
'12년	6.8	0	0	6.8	6.71	0	0.09
	()	()	()	()	()	()	()
'13년	6.46	0	0	6.46	6.1	0	0.36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보통(종합점수 69.2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 현황

☐ 홈페이지 현황

번호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비고
1	메인 홈페이지 (www.kats.go.kr)	우리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자료 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e-홍보관 등	
2	한국제품인정제도 (www.kats.go.kr/kas)	KAS 소개, KAS 인정기관 및 인정분야 정보 등	
3	신제품인증 (www.kats.go.kr/nep)	신제품인증 소개 및 인증·제품·업체 정보제공	
4	자원순환산업제품인증 (www.kats.go.kr/gr)	인증신청 진행현황, 인증절차, 관련법규 및 인증 업체·제품 소개	
5	법정계량단위 (www.kats.go.kr/unit)	법정계량단위 연혁 및 필요성, 활용사례, 비법정계량단위 피해사례 안내 등	
6	행사지원시스템 (www.kats.go.kr/event)	우리원 주관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 홈페이지 자동 제작, 온라인 사전등록, 행사 결과자료 제공	
7	R&D·특허·표준정보포털 (www.kats.go.kr/korpas)	R&D·표준·특허 관련 정보 및 온톨로지 기반 검색서비스 제공 등	
8	국가통합인증마크 (www.kats.go.kr/kc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배경, 기대효과, 도입절차 소개 및 대국민 홍보	
9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www.standard.go.kr)	KS, ISO/IEC, 정부기술기준, 인증제도 등 기술·표준·인증 정보서비스 및 전문가·유관기관, 표준화활동 등 표준정보 통합검색	
10	국가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 (www.standard.go.kr/metadata)	산업기술정보 메타데이터 소개,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메타데이터 포럼 운영 등	
11	KOLAS 사이버교육 (www.kolas.go.kr/edu)	KOLAS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측정자, 내부감사자 등 KOLAS 운영인력 온라인 교육	
12	사이즈코리아 (sizekorea.kats.go.kr)	인체치수자료 및 표준인체 측정법 소개	
13	TBT 종합정보허브 (www.knowtbt.kr)	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14	한중표준정보포털 (korea.standards-portal.kr)	KATS 소개, 기술표준 뉴스, KS 및 안전기준 검색 등을 영어·중국어 서비스	

□ 업무포털 현황

번호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비고
1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내부)	KS의 제정·개정·확인·폐지를 위한 신청서 작성에서 고시까지 KS업무 순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및 ISO/IEC 국제문서 관리	
2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외부)	ISO/IEC 국제문서 검토 및 투표, 외부 표준전문가와 내부 직원 간 지식공유 등	
3	COSD 활동지원 및 관리시스템	기술표준원과 COSD, COSD 간의 정보 공유 및 COSD 표준화활동 관리 등	
4	기술기준통합관리시스템	각 정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23천여종의 기술기준 등록, 수정, 삭제	
5	업무포털시스템(KMS)	주요 업무 관련 지식공유, 업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링크 및 내부 게시판 등	
6	e-KOLAS	인정, 평가, 사후관리 등 KOLAS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7	KS 인증심사원 관리시스템	KS(제품·서비스) 인증심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증심사원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8	표준화활동통계정보시스템	KS 제·개정 현황, 국제회의 개최·참가 현황 등 실시간 통계정보 및 유관기관·전문가 통합관리	
9	정책홍보도우미	정책고객들에게 국내외 표준동향, KS 고시정보 등 정책정보를 e-mail을 통해 일괄 발송	
10	표준전문가 정보공유시스템	해외 인적 네트워크 공유 및 출장보고서 관리, 국제표준화활동 콘텐츠 다운로드 등	
11	웹통합 관리도구	공지사항, 보도자료, 전자민원, 자료실 등 홈페이지 공통 게시판 관리	
12	전자도서관시스템	전자도서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조회 및 링크 사이트 정보 등	
13	콜센터관리시스템	콜센터 관리, 콜 상담 및 일반민원 처리실적 관리	
14	표준화과제관리시스템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경상연구,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 기술력향상사업 통합관리	

참고 2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현황

□ 홈페이지, 업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및 패키지 S/W

시스템명	전산장비		패키지 S/W	
	모델명	수량	모델명	수량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HP ProLiant BL460c Gen8	1	제조사 : 아이네크	1
COSD 활동지원 및 관리시스템 (http://www.kats.go.kr/cosd)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외부) (http://evote.kats.go.kr)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stadnard.go.kr)	HP ProLiant BL460c Gen8	1	제품명 : Biglook 제조사 : 이븐스타	1
KS e-Book열람 스트리밍서버			제품명 : KS e-Book열람 스트리밍 제조사 : 이파피루스	1
기술기준통합관리시스템 (http://ts.metadata.go.kr)				
통합연계 검색 시스템 (http://standard.go.kr/ontology.asp)				
국가통합인증마크 (http://www.kats.go.kr/kcmark)				
기술표준원 통합검색 홈페이지 (http://search.kats.go.kr)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 (http://sizekorea.kats.go.kr)				
R&D·특허·표준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www.kats.go.kr/korpas)	HP ProLiant BL460c Gen8	1		
TBT 종합정보허브 홈페이지 (http://tbt.kr)				
KOLAS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http://www.kolas.go.kr/edu)				
정책홍보도우미 (http://pcrm.kats.go.kr)			제품명 : ThunderMail 4.5 제조사 : (주)앤드와이즈	
한중표준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tandards-portal.kr)				
통합 DB서버	HP ProLiant BL460c Gen8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팬타시큐리티	1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서버	HP ProLiant BL460c Gen8 HP ProLiant BL460c Gen8	1	제품명 : DestinyEDM4 제조사 : 사이버다임	1
업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검색엔진			제품명 : BS21 제조사 : 3S	
기술표준원 통합검색 검색엔진 서버			제품명 : search97 제조사 :	
통합연계 검색 검색엔진 업무포털시스템(KMS)서버			제품명 : Mariner2	

시스템명	전산장비		패키지 S/W	
	모델명	수량	모델명	수량
			제품명 : DestinyKMS4 제조사 : 사이버다임	
리눅스 DB서버	HP ProLiant BL460c Gen8	1	제품명 : Oracle 9i	
국가·국제표준 통합관리시스템(내부)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출장정보공유시스템				
표준화활동통계정보시스템				
연구용역과제관리시스템				
e-KOLAS	IBM 8202-E4C	1		
e-KOLAS DB서버	IBM 8202-E4C	1		
제품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www.safetykorea.kr)	IBM X3650 MB	6		
PDF변환서버	패키지 S/W 제조사 납품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피루스	
장애관리시스템		1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삼성 ZSS132-Q-001W	1		
콜센터관리시스템	HP ML570 G4	1		
테스트서버	IBM X3650MB	1		
합 계		19		

☐ PC, 모니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구분	용도	장비종류	수량
전산장비 (PC등)	업무용	컴퓨터	522
		모니터	207
		프린터, 복합기 (복사기)	96
합 계			825

□ 전송·보안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tack -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tack -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24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0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소계		75
보안장비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25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4.0 K10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와플2.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업무망 망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망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업무망 PC보안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PC보안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업무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소계		10
스토리지	보조기억매체스토리지	제품명 : DS3512 제조사 : IBM	1
백업장비	백업장비	제품명 : DL180 G6 제조사 : HP	1
합 계			87

참고 3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사용연수 현황

장비유형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대)	사용연수 (‘15년)	비고
컴퓨터서버 (내용연수 5년)	한국인정기구 AP서버	2012-12-25	1	3	내용연수 미경과
	한국인정기구 DB서버	2012-10-15	1	3	
	기술표준원통합(가상화)서버	2013-12-24	1식 (6대)	1	
냉방기 (내용연수 9년)	(주)센추리, PA-A180GG2, 냉방21,000W	2004-08-17	1	11	교체
	센추리, PA-A62GK2, 18평형, 스탠드형	2004-10-14	1	11	
무정전 전원장치 (내용연수 10년)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5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5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5	
	3KVA,220V,정전보상30분	2000-08-10	1	15	
	5KVA 밧데리내장	2000-08-10	1	15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4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4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4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4	
	2KVA, Auto Shutdown, Switch UPS2000(2200VA),Up Time 40min	2001-12-24	1	14	
	무정전전원장치, 1Ø 30kVA 30분	2008-12-02	1	7	내용연수 미경과
네트워크 라우터 (내용연수 8년)	부품, 5C-5000-1104, Alcatel OmniCore 5022 장착용	2001-09-17	1	14	교체
	부품, 5C-5000-1104, Alcatel OmniCore 5022 장착용	2003-06-24	1	12	
	스콕정보통신, IPScan Probe 100, Ethernet 1port	2004-11-15	1	11	
	네트워크 회선 이중화 및 관리시스템	2006-08-17	1	9	
네트워크서비스 집중장치(노드)서버 (내용연수 7년)	5022BASE UNIT CHASSIS(7SLOT)	2000-08-17	1	15	교체
	9SLOT CHASSIS/OMNIS/R-5	2000-08-17	1	15	
	9SLOT CHASSIS/OMNIS/R-5	2000-08-17	1	15	

	9slot chassis/OMNIS/R-9	2000-08-17	1	15	
	9slot chassis/OMNIS/R-9	2000-08-17	1	15	
	Enterasys Networks, VH-2402S, 24Port(아이엔아이테크놀로지, OMNISTACK 6124 BASE SWITCHING UNIT)	2003-12-30	1	12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6300-24, 24port	2006-08-17	1	9	
	스위칭허브, 한국알카텔, OS-LS-6248, 52port	2008-12-22	1	7	
네트워크스위치 (내용연수 6년)	전산망보강위한 네트워크장비	2006-09-28	1식 (30대)	9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카드 (내용연수 5년)	제아정보통신, JEA-IC/N1, 휴대전화망인터페이스	2001-12-06	1	14	교체
다중통신장비 (내용연수 9년)	스위칭 허브,네트웍용,24Port	2001-12-19	1	14	
	스위칭 허브,네트웍용,24Port	2001-12-19	1	14	
방화벽장치 (내용연수 6년)	방화벽장치, 펜타시큐리티시스템, Wapples-100	2006-09-28	1	9	
	방화벽장치,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1000 V4.0	2008-12-07	1	7	교체
	방화벽장치, 나우콤, SNIPER IPS V5.0(E2000), 침입방지 시스템	2008-12-17	1	7	
통신서비스소프트웨어 (내용연수 6년)	인프라닉스, SysMaster Network Manager Site License, 전산망 통합관리 솔루션	2002-12-27	1	13	
하드디스크아레이 (내용연수 6년)	아이엔아이테크놀로지, QuRAID FX2i, 73x6GB	2004-09-13	1	11	교체
SAN스위치 (내용연수 6년)	Qlogic, US/SANbox 5200, SAN Switch, 2Gbps 16port	2004-11-22	1	11	

기술규제 대응(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기술규제대응	302	288	276	△12	△4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7100 - 7134 - 304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조영신), 기술규제정책과장(유동주, 043-870-5520),
연구관(임원빈, 043-870-5522), 연구사(김용득, 043-870-552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 속
총사업비	해 당없 음
사업규모	해 당없 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기술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제도와 관련 산업 실태조사,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 추세에 따른 신속한 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운영비(152백만원)

- 기타직 보수(기간제·무기계약직 보수, 복리후생비, 연금지급금)
- 국내외 기술규제관련 제도, 산업환경 조사·분석, 의견수렴 등

② 연구개발비(124백만원)

- 기술규제대응 관련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 산출내역 : 3개 과제 × 41.3백만원 = 12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해외 무역기술장벽으로부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력 경쟁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정책 연구 개발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운영비 필요
- WTO와 FTA로 인해 시험인증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와 개방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내·외 실태조사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기술규제대응	302	288	276	△12	△4.2
▪ 운영비	232	248	152	△99	△39.9
▪ 연구개발비	70	40	124	84	210.0
☐ 비목	302	288	276	△12	△4.2
▪ 기타직보수(110-02)	-	130	137	4	3.1
▪ 복리후생비(210-12)	-	2	2	-	-
▪ 시험연구비(210-13)	232	103	-	△103	순감
▪ 연구개발비(260-00)	70	40	124	84	210.0
▪ 연금지급금(320-03)	-	13	13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외 기술규제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수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2.88	▪ 운영비(2.48억원) ▪ 연구개발비(0.44억원)
'15	2.76	▪ 운영비(1.52억원) ▪ 연구개발비(1.24억원)
'16	2.43	▪ 운영비(1.52억원) ▪ 연구개발비(0.91억원)
'17	2.62	▪ 운영비(1.52억원) ▪ 연구개발비(1.1억원)
'18	2.23	▪ 운영비(1.52억원) ▪ 연구개발비(0.71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해당사항 없음
- 추진경위
 - '12.7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4.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신설(정부조직개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기술규제대응	3.69	3.30	3.14	2.88	2.7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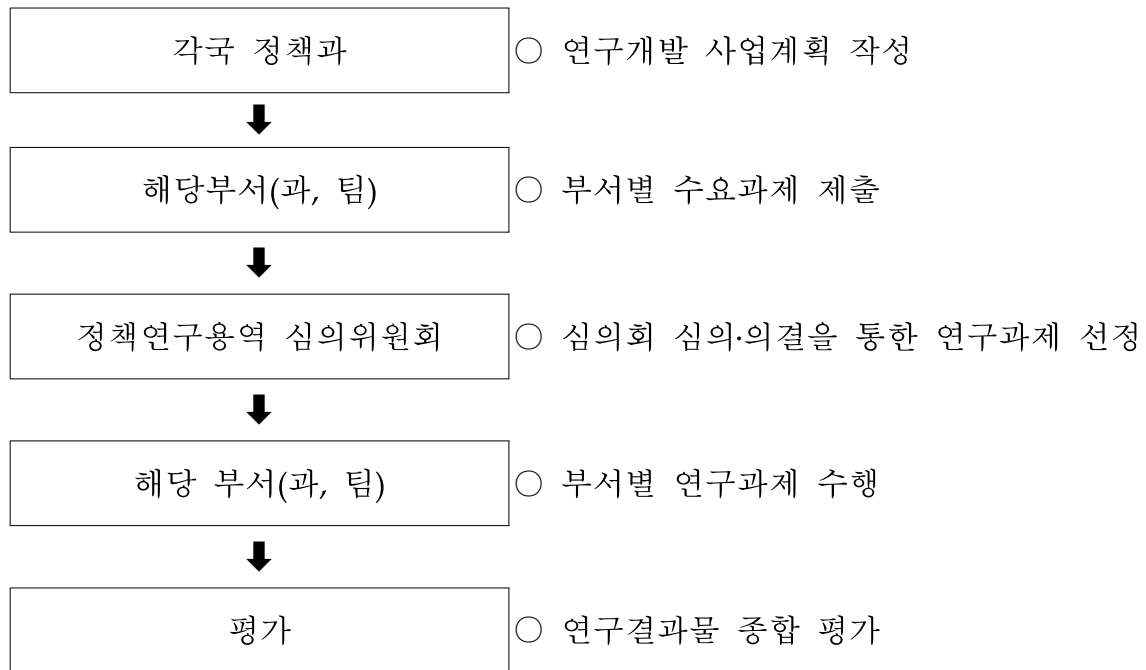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3.84		△0.15	3.69	3.67		0.02
	()	()	()	()	()	()	()
'12년	3.3			3.3	3.25		0.05
	()	()	()	()	()	()	()
'13년	3.14			3.14	3.02		0.12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70	1,122	1,468	346	30.8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1

* 담당자 : 지원총괄과장(최광국, 043-870-5320), 사무관(박두강, 043-870-5328), 주무관(염동석, 043-870-533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 청사 및 기관 운영 경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시설장비유지비(1,003백만원)

- 산출근거 : 청사유지비(2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시설유지비(2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999백만원)

② 차량유지비(20백만원)

- 산출내역 : 평균연간유류비(2백만원)×6대, 평균연간수리비(1.3백만원)×6대

③ 연금지급금(43백만원)

- 일용·기타직퇴직금(33백만원), 산업재해 및 보험료(10백만원)

④ 지식관리 포상금 지원(2백만원)

- 산출내역 : 포상금 등(2백만원)

⑤ 버스임차료(400백만원)

- 산출내역 : 4대 × 250일 × 400천원

□ 지원 필요성

-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시설 유지, 소관 부서의 정책 수행 운영의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필요
-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포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 업무 역량 극대화 위한 포상제도 등 운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70	1,122	1,468	346	30.8
▪ 기관운영비	1,132	1,060	1,423	363	34.2
▪ 보전금	2	2	2	-	-
▪ 민간이전	36	60	43	△17	28.3
▪ 건설비	1	-	-	-	순감
□ 비목	1,170	1,122	1,468	346	30.8
▪ 임차료(210-07)	-	-	400	400	순증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12	1,045	1,003	△42	△4.0
▪ 차량선박비(210-10)	20	15	20	5	33.3
▪ 포상금 등(310-03)	2	2	2	-	-
▪ 연금지급금 등(320-03)	36	60	43	△17	△28.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사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4	11.22	▪ 청사시설장비유지비(1,050백만원), 차량선박유지비(20백만원), 연금지급금(60백만원)
'15	14.68	▪ 청사시설장비유지비(1,003백만원), 차량선박유지비(20백만원), 연금지급금(43백만원), 임차료 등(402백만원)
'16	14.15	▪ 청사시설장비유지비(1,050백만원), 차량선박유지비(20백만원), 연금지급금 등 (40백만원), 임차료 등(305백만원)
'17	9.64	▪ 청사시설장비유지비(564백만원), 차량선박유지비(20백만원), 연금지급금(20백만원)
'18	9.16	▪ 청사시설장비유지비(516백만원), 차량선박유지비(20백만원), 연금지급금(2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등
- 추진경위 : '14.06.02 국가기술표준원 충북혁신도시에서 업무시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5	11.5	11.6	11.2	1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1년 : 계약직 직원 퇴직금 부족으로 인한 전용
- 2012년 : 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기존청사의 건설비/시설비 및 예상 퇴직직원의 미 퇴사로 인한 미집행
- 2013년 : 계약직 직원 퇴직금 부족 및 업무용 차량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1년	11.51	-	0.22	11.73	11.68	-	0.05
	()	()	()	()	()	()	()
'12년	11.46	-	-	11.46	11.30	-	0.16
	()	()	()	()	()	()	()
'13년	11.61	-	0.1	11.71	11.70	-	0.01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